

2006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실태조사

-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이 숙 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연구원	신 혜 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 은 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김 효 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한 승 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 김 신 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보고서 요약]

I. 서론

아동권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문제이다. 아동학대가 매우 치명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 인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보고된 아동백서(2006)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현황을 보면, 2001년 아동학대 발생률(아동 1만 명당 아동학대율)은 1.81이었고 이는 2005년 4.18로 증가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36.9%, 다음으로 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유형 및 현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가장 빈번한 유형은 방임으로 나타난다. 방임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이해할 경우, 이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주목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물리적 학대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온 측면이 있다. 아동 학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임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지위와 아동권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 방임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규정마저 미미한 상태이며, 동시에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역시 심각한 고위험군의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동방임의 상황에 집중하여,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유

형들 가운데 ‘방임’에 주목하고자 하며, 따라서 빈곤아동에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별 특성을 밝히고, 아동방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개입방식과 국내외 법, 제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아동권의 확보를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안과 더불어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방임의 개념

우리나라 아동 관련 법률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호칭과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했다.

아동방임은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 사회적으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아동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아동양육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복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을 아동기에 중요한 발달적 욕구에 근거하여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인지적 방임, 지도·감독 방임, 환경적 방임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아동방임의 원인은 경제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으로 설명되어지며, 아동방임은 성장실패(Failure to Thrive) 결과를 가져오며 발달 시기별로 신체적, 정서적문제와 사회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한다.

2. 아동의 권리와 방임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를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로 구분하며, 아동방임은 보호권,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모든 영역이 침해되는 사례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CRC) 제19조의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이다.

3. 아동방임현황 및 관련법률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방임은 36.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방임의 하위유형별로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 등이 나타났다. 방임 가해자는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의 특성을 지니며, 아동방임 사건으로 인한 가해자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보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은 아동복지법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용어의 정의, 학대아동보호사업, 긴급전화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업무, 아동학대의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 금지행위, 처벌 등을 규정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률적 논의로는 아동복지법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저조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강화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수강 및 치료화의 강제화를 위한 처벌 규정 보완 등이 주요 이슈이다.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복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내 인구아동정책과내 아동안전권리팀이다. 2000년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현재 중앙을 제외한 41

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16개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 아동학대 사례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의 업무 수행하고 있다.

아동보호 서비스는 신고 및 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 판정, 조치결정, 서비스제공, 종결의 과정을 거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학대의심사례와 일반사례인지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학대받은 아동은 원가정 보호와 격리보호 조치를 결정한다.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면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4. 아동방임 선행연구

아동방임 연구는 아동학대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2000년 이후 아동방임 단독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국내 아동방임 연구는 아동방임의 개념, 실태, 인식 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국외 아동방임 연구는 아동방임의 개념, 방임 척도개발, 방임의 특성 등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빈곤이 방임의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찬, 반 또는 영향의 정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연구들이 빈곤과 방임의 정적관계라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Ⅲ.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1. 미국

미국에서 아동학대는 연방정부는 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정부는 주정부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유형을 신체학대, 약물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구분한다.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며 신고는 대부분 의무화 되어 있고 신고된 사례는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공동조사하

여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할 것인지 결정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는 법정 혹은 소년 법정으로 인계할 것인지 결정하여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원가정복귀, 대안적보호서비스(가정위탁, 그룹홈, 입양, 시설보호)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과 가해 양육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미국은 학대가 발생하기 전 예방적인 조치로서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는 접근과 아동학대발생시 원가정을 보호하는 가족보존 접근을 실시하려고 노력하는 특징을 지닌다.

2. 영국

영국의 아동학대 업무 협력기관 지침인 ‘Working Together’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을 잘못 다루거나 해를 가하는 것이나 위협의 방지에 실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국의 아동복지,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이며 개정된 아동법 2004는 아동학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보호시스템의 가동을 명시했다. 아동커미셔너를 임명하고 지역아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아동법은 아동보호체계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국의 아동커미셔너 모델은 2006년 임명된 우리나라의 옴부즈퍼슨제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 제2조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체적 외상과 폭행, 외설적 행위, 심신의 정상적 발달 저해하는 부적절한 의식주 제공, 보호자의 감독보호 태만, 심리적 외상 등으로 정의하고, 2004년에 아동폭력의 묵인과 가정폭력의 노출 등의 간접적 상해까지 아동학대의 범주를 확대했다. 개정 아동학대방지법은 간접적 폭력의 노출이나 폭력을 방치하는 것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여 보호자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해만을 아동학대로 보았던 기존의 개념에서 확대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일본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아동의 보호망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관과의 협력이 활발

히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보호체계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IV. 아동방임 실태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방법 및 내용

아동방임 설문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전국의 24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다차원방임행동척도(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이며,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에게 설문 실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가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시간을 이용하여 아동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아동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교사가 각각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아동에게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지도감독, 환경적 방임의 경험을 묻는 문항과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친구의 문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아동의 인간관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아동센터 생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켜 전체 연구대상은 433명이었다. 분석과정은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집단간 차이를 ANOVA를 실시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방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

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방임의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방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방임 유형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에서 표집된 아동들 수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이 47.4%, 고학년이 52.7%를 차지하였다.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46.4%, 여아가 53.3%로 나타났으며, 아동 형제 수는 1명인 경우가 43.6%, 가족관계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다. 교사들의 평가에서 아동의 학업성적은 보통과 보통 이상이 전체 70%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응수준도 보통과 보통이상이 84.3%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경제수준은 보통가정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가정이 24%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방임의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의료적 방임을 포함한 물리적 방임은 12.2%, 인지적 방임 58.9%, 정서적 방임 44.1%, 지도감독방임 30%, 가정환경방임 12.9%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

해 t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성별, 학년, 가족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 적응수준이었다. 분석결과 성별과 가족관계 및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과 적응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아동방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였으며, 가족관계의 차이에서는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아동들이 양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의 차이를 보면,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들이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들보다 보다 빈번하게 아동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아동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한 결과 가정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의 하위유형 중에서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및 가정환경 방임은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물리적 방임과 지도감독 방임은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및 가정환경 방임 유형에서 저소득 집단에 속한 아동들은 보통 가정의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방임 경험 유무에 따른 예측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가족변인과 학교환경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교환경 변인 들 중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방임 경험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방임을 경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층면접

1) 심층면접 조사방법 및 내용

심층면접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서울 2개소, 경기 3개소, 충청도 2개소, 경상도 2개소, 전라도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에 동의한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서울 강서구, 관악구와 일산의 임대아파트 지역의 놀이터에서 면접자가 직접 아동과 부모에게 연구에 동의를 얻은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아동, 보호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교사와 보호자의 면접 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였으며 아동들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면접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 27명으로 연령 분포가 33세부터 72세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형태는 기혼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보호자의 직업형태를 보면 무직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제수준은 거의 대부분 하위수준으로 나타났고, 많은 보호자들이 심층면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모두 14명인데,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부터 센터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령이 24세부터 48세로 분포되었다. 이들의 담당 업무는 아동 관리 및 교육, 자원봉사 연계, 상담, 총괄, 복지 업무 등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대부분 심층면접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본 심층면접 대상으로 초등학교 28명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의 연령 분포는 8세에서 13세로 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양육자는 어머니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기간

을 보면 대부분 1년에서 3년 사이였으며, 아동들이 면접에 참여한 태도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또는 방어적인 태도 등 다양한 면접태도를 보였다.

2) 심층면접 결과

아동방임에 대한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을 단순히 방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동방임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 의식주 결핍상태부터 심리적·정서적 방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 실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보호자가 있는 반면 50%이상 높게 발생한다고 보고하는 보호자가 있었다. 한편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아동방임 비율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의 불합리한 운영방법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방임된 아동들을 더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였고,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아동방임 예방 대책은 방임된 아동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확대와 기관에 대한 재원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아동방임 예방대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과 다른 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 미비로 아동방임 사례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전문적 개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종사자들은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연계활동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보호자와 종사자들은 아동방임이나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대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야간보호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였다.

한편 보호자들은 아동과의 대화시간이 하루 약 한 시간 정도이며 대화 내용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성적 등 아동의 일상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응답하여, 아동의 고민이나 학업문제 심리적 상태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동안 아동들은 TV나 게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는 토요일과 같은 휴일에도 보호자들은 아동을 집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호자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은 아동보호시설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일관성 없는 국가행정과 불합리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동보호시설운영의 합리화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시급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방임 예방 대책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전문적 기관을 통한 서비스제공과 아동방임 가정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아동방임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함을 요구하였으며 아동방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방임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일관된 규정이 없어서 종사자들의 태도에 따라 폐쇄적 또는 개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 아동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종사자 스스로 아동방임과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이 낮아 아동방임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아동방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동방임 예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었다. 한편 종사자들은 보호자의 아동방임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동방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부모상담이나 가정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들은 아침은 보호자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으나 저녁은 굶거나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아동들은 학교 준비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혼자 물건을 사는 등 스스로 챙기고 있었으며 보호자와 거의 대화를 안 하거나 10분정도 아주 짧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들은 보호자와 노는 토요일 등 휴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혼자 약을 바르는 등 혼자 대처하였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이 끝난 후 혼자 집에 오는 길에서 폭력 상황에 직면 하는 등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V. 아동방임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아동방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섯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아동방임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아동권 확보를 위한 방임개념을 정의하고 아동방임에 대한 유형의 범주를 확대, 세분화하며 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보호책임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확대 정의한다.

둘째, 관련법을 개정한다. 즉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의규정에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치료 및 교육조항을 신설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조항에 교육적 방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다. 또한 격리필요시 친권개입의 기준, 범위,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적 예방차원과 사후개입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전적 예방차원으로는 빈곤아동 보호체계를 재정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평가체계 구축 및 내실화

를 기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원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방임의 문제를 가족, 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며, 각 기관들은 위기가족이나 위험가족에 대한 가족중심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사후개입적 차원으로는 위탁가정, 그룹홈의 보호체계를 통해 방임아동의 일시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그룹홈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임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아동방임 실태조사 및 방임 판정기준 마련을 통해 실태파악에 근거한 방임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적 효과와 신고의무 강화를 위해 아동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활성화를 제안했다.

목 차

<보고서 요약>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방법	4
II. 이론적 배경	6
1. 아동방임의 개념	6
1) 아동의 개념	6
2) 아동방임의 개념	10
3) 아동방임의 유형 및 기준	14
4) 아동방임의 원인 및 결과	16
2. 아동의 권리와 방임	24
3. 아동방임 현황 및 관련 체계	31
1) 아동방임 현황	31
2)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38
3) 아동학대 및 방임 행정체계	48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52
4. 아동방임 선행연구 검토	62
III.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69
1.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69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69
2) 관련 법률	74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75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80

5)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82
2. 영국의 방임아동 보호체계	84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84
2) 아동법 (Children Act)	86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91
4)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서비스 절차	96
5)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시사점	99
3.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100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100
2) 아동학대 및 방임관련 법률	102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106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114
5)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119
IV. 아동방임 실태조사	121
1. 설문조사	121
1) 설문조사 대상	121
2) 설문조사 진행 방법	121
3) 설문조사 내용	122
4) 설문조사 결과분석	125
5) 소결	152
2. 심층면접	155
1) 심층면접 대상	155
2) 심층면접 진행 방법	156
3) 심층면접 대상 인적사항	157
4) 심층면접 분석방법	162
5) 심층면접 결과	163
6) 소결	213

V. 아동방임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217
1. 주요 정책	217
1)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방임	217
2) 아동방임 개입 및 사정	221
3) 관련기관과의 연계	229
2. 개선방안	239
1) 아동방임 개념의 확대	239
2) 아동복지법의 개정	235
3)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242
4) 기타	251
VI. 결론	255
<참고문헌>	259
<부록>	269

□ 표 차례 □

<표Ⅱ-1> 국내 법률상 아동관련 개념 구분	7
<표Ⅱ-2> 연도별 아동인구수	8
<표Ⅱ-3> 방임의 위험요인	19
<표Ⅱ-4> 비기질적 성장실패의 지표	21
<표Ⅱ-5> 아동권리의 4가지 범주	25
<표Ⅱ-6>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	26
<표Ⅱ-7> 아동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내용	29
<표Ⅱ-8> 아동방임 발생을 추정	31
<표Ⅱ-9>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32
<표Ⅱ-10> 방임의 하위유형별 발생현황	33
<표Ⅱ-11>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33
<표Ⅱ-12> 학대행위자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35
<표Ⅱ-13>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처벌근거 법률의 결과	36
<표Ⅱ-14>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 법적조치결과	37
<표Ⅱ-15>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38
<표Ⅱ-16>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관련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	43
<표Ⅱ-17> 아동방임 관련 법률 내용	46
<표Ⅱ-18> 스크리닝 척도 결과 조치 및 기준점수	53
<표Ⅱ-19> 위험사정 척도 결과 조치 및 기준점수	55
<표Ⅱ-20> 조치결정기준	59
<표Ⅲ-1> 연도별 학대유형	85
<표Ⅲ-2> 2004년 개정 아동법 개요	88
<표Ⅲ-3> 학대에 관한 상담처리 건수의 추이	101
<표Ⅲ-4> 아동학대 유형	101
<표Ⅲ-5>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내용	105
<표Ⅲ-6> 요코스카시 아동학대 네트워크	111
<표Ⅲ-7> 시설입소조치 승인건수 및 친권박탈선고 승인건수	116
<표Ⅳ-1> 조사내용	122
<표Ⅳ-2> 아동방임 척도 구성	124

<표Ⅳ-3> 인구사회학적 특성	126
<표Ⅳ-4> 아동 학교생활	130
<표Ⅳ-5>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	131
<표Ⅳ-6> 아동과 친구 관계	133
<표Ⅳ-7> 물리적 방임	135
<표Ⅳ-8> 인지적 방임	136
<표Ⅳ-9> 정서적 방임	138
<표Ⅳ-10> 지도감독 방임	140
<표Ⅳ-11> 지도감독 방임	142
<표Ⅳ-12> 아동방임 실태	144
<표Ⅳ-13> 성별과 가족관계에 따른 방임경험	145
<표Ⅳ-14> 경제수준에 따른 유형별 아동방임	148
<표Ⅳ-15> 아동방임 예측 요인	150
<표Ⅳ-16> 심층면접 지역 및 대상	155
<표Ⅳ-17> 보호자 인적사항	158
<표Ⅳ-18> 종사자 인적사항	169
<표Ⅳ-19> 아동 인적사항	161
<표Ⅳ-20> 심층면접 결과	163
<표Ⅴ-1> 아동방임에 대한 개입절차 및 내용	222
<표Ⅴ-2> 아동방임 매뉴얼에서의 방임구분	231
<표Ⅴ-3> 방임개념 및 유형	234
<표Ⅴ-4> 아동복지법에서의 금지행위	237
<표Ⅴ-5> 친권개입에 대한 개선방안	240
<표Ⅴ-6>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244

□ 그림 차례 □

<그림Ⅲ-1> 아동학대 현황	71
<그림Ⅲ-2> Investig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1990-2004	72
<그림Ⅲ-3> Victimization Rates by Maltreatment Type, 2000-2004	72
<그림Ⅲ-4> Maltreatment Type of Fatalities, 2004	74
<그림Ⅲ-5> 영국의 아동관련 부서 및 단체	95
<그림Ⅲ-6> 영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달체계	98
<그림Ⅲ-7>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118
<그림Ⅴ-1>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달과정	218
<그림Ⅴ-2>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네트워크	226
<그림Ⅴ-3> ‘즐거운 토요체험학교’의 운영체계	247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인권의 보편주의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인권침해에 취약한 존재적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집단이 아동이다. 아동은 그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일을 처리할 완전한 능력을 아직 갖지 않은 존재로 간주되어지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당사자로서 권리주장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국제사회가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정하면서 부터이며, 1989년에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통과시켰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며 이 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은 이러한 권리 실현을 위해 입법, 행정, 경제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5년마다 보고서 제출을 통해 자국의 아동권 증진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에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아동권의 가장 기본적인 테마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문제이다. 아동학대가 매우 치명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존재로 가장 취약하고 권력이 없는 집단으로 간주되는 아동에게 있어서 학대는 사회문제화 되지 않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이 세워진 것은 2000년부터의 일이다. 이렇듯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개입은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 인력인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5년 아동정책의 목표가 아동의 권리신장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문제는 아동권의 신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지표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하나의 국

가적 위기로 간주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직면해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지 못한 사회에서 별도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최근 보고된 아동백서(2006)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현황을 보면, 2001년 아동학대 발생률(아동 1만 명당 아동학대율)은 1.81이었고 이는 2005년 4.18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실제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개념적 정의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2조)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36.9%, 다음으로 방임이 35.3%, 정서학대가 11.1%, 신체학대 9.1%, 성학대 4.4%, 유기 3.2%로 나타났다. 상당부분의 아동학대가 방임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것이며 이는 최근 한국의 아동 빈곤율이 9.9%(보건복지부 2005)라는 지적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양극화는 빈곤가구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아동빈곤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양극화-빈곤-아동학대는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보면, 부자가정이 전체 사례의 33.7%를 차지하며, 모자가정이 14.2%, 재혼가정이 6.8%로 나타나는데 이혼이나 한부모 가구의 증가 등이 아동학대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그로 인한 한부모 가구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이 사회적 지지와 사회 서비스가 결여된 한부모 가구의 아동학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례유형 및 현황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가장 빈번한 유형은 방임으로 나타난다. 방임이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로 이해할 경우, 이는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 주목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상해를 입은 물리적 학대만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온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면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동 학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임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지위와 아동권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동방임은 무엇이 방임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규정마저 미미한 상태이며, 동시에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역시 심각한 고위험군의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동방임의 상황에 집중하여, 우선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들 가운데 ‘방임’에 주목하고자 하며, 따라서 빈곤아동에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별 특성을 밝히고, 아동방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개입방식과 국내외 법, 제도,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아동권의 확보를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안과 더불어 아동방임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아동학대는 그 주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실태 및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연구영역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는 아동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들이 문제시되며, 동시에 학대가 발생하는 장소가 가족 등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성적인 폭력과 학대는 그 실태를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학대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인 개입의 어려움이 아동학대의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 발생율을 추정하고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서베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비용과 윤리적 문제 그리고 표집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의 예산과 집행력을 담보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계적 대표성과 수량화된 데이터에 대한 맹신을 피한다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보다 현상과 문제의 본질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빈번한 유형인 ‘방임’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적 이슈를 둘러싼 정의 및 사정에 대한 기존 논의들과 외국의 주요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조사방법으로는 피해아동의 신고를 중심으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했던 기존논의들과 달리, 저소득계층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표집을 통해 해당 시설의 실무자 및 18세 미

만 아동,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아동방임에 대한 다차원방임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24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실무자, 아동 그리고 부모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는 지역아동센터 및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사, 아동, 그리고 보호자에 대해 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 전달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안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연구자, 정부관계자, 시설관계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포커스그룹 조사를 진행했다. 포커스그룹 조사는 설문지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방임의 개념

1) 아동의 개념

아동을 명확하게 정의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흔히, 아동은 성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린이¹⁾, 유아, 소년, 청소년, 미성년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동은 사회, 종교,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 내려질 수 있고, 특히 연령에 대해서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힘들다. 법은 아동의 명칭과 연령을 규정하는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Children :이하 CRC)에서는 ‘제1조 아동의 정의’에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국내에서도 아동복지의 근간인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호칭과 연령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Ⅱ-1> 참조). 민법 제4조는 성년을 만20세로,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을 20세미만자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조는 14세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서는 청소년을 만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에서는 연소자라 하여 15세 미만의 자를 유해·위험한 사업과 야업, 갱내작업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보호 규정을 두었다. 2005년 8월에 선거연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하향 조정하였다.

1)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령기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각 법률의 적용대상이 달라지게 되므로 아동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II-1> 국내 법률상 아동관련 개념 구분

법률	호칭	관련내용
아동복지법	아동	18세미만의 자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 (방과후 보육은 만12세까지 가능)
유아교육진흥법	유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미만의자
소년법	소년	20세미만의자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후6세미만의자
모자복지법	아동	18세미만(취학시에는20세미만)의 자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아동	18세미만의자
근로기준법	연소자	15세미만의자
민법	미성년자	20세미만의자
형법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아니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	18세미만의자
도로교통법	어린이,유아	어린이: 13세미만의 자 유아: 6세 미만의 자

출처: 한성심 · 송주미(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CRC가 규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남녀의 혼인가능 최소연령의 불일치는 이러한 문제의 예가 될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모든 사람은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는 경우 성년자로 인정된다. 혼인이 아동과 성인 구분의 기준이 되었을 때, 이전에는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에 달한 때에

는 혼인할 수 있어서 16세나 17세의 여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수 있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혼인가능 최소연령의 남녀 차이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로 인하여 2007년부터 혼인가능연령은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혼인연령 통일은 CRC의 3가지 기본원칙인 아동의 정의, 아동최선의 이익, 무차별의 원칙에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을 기반으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아동 인구의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 전체 인구의 약50%를 차지하던 아동 인구가 1980년 약 40%, 1990년 약 30%, 2000년 약 25%로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2005년 1.08명이라는 합계 출산율은 이러한 아동인구 감소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표 II-2> 연도별 아동인구수

연도	전체인구수	아동인구수	아동인구비율
1970	32,240,827	19,810,531	49.04
1975	35,280,725	16,352,158	46.35
1980	38,123,775	15,621,480	40.98
1985	40,805,744	15,013,484	36.79
1990	42,869,283	16,568,548	31.65
1995	45,092,991	12,886,203	28.58
2000	47,008,111	12,077,392	25.69
2003	47,849,227	11,420,464	23.87
2004	48,082,163	11,242,113	23.38
2005	48,294,143	11,079,827	22.94

출처: 통계청 홈페이지

이러한 저출산과 아동인구수의 감소는 출산장려와 더불어 아동복지와 권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특히, 낳은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와 방임문제를 더욱 크게 부각시켰다. 나아가 아동의 어린 시절, 즉 아동기가 단순히 성인이 되기 이전의 기간이 아닌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받게 되었다. 권리에 바탕을 둔 아동기에 대한 개념은 CRC에 잘 나타나 있으며, CRC는 아동의 어린 시절과 그 기간 동안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2년 5월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는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계획문서인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World fit for Children)”을 선언하고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요한 밀레니엄 목표의 달성을 촉구하였다.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기를 위협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CRC에 따르면 아동은 가정에서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를 받으며 생존하고, 성장 발달하며, 참여하는 어린 시절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방임된 아동에게는 이러한 어린 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 학대와 방임은 아동기를 위협하고 아동의 어린 시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극단적이고 심각한 아동의 권리의 침해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대받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아동의 어린 시절을 보호하는 아동권리 실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방임의 개념

아동방임은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다른 아동학대의 유형보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연계 되어 아동보호사업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온 반면, 아동방임은 그 발생률에 비하여 심각하게 고려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아동양육의 최소한의 기준에서 조차 합의되지 못하였다. 과거에 방임을 아동학대의 범주에 방임은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아동방임의 원인과 영향이 신체적 학대나 성적학대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아동방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방임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5년 경기도 지역에서 개에 물려 숨진 아동사건²⁾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대책, 스크리닝, 보호체계 등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국내에서 아동방임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는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금지행위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보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정의는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실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는 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는 아동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

2) 2005년 11월 이혼한 부모 때문에 외가에 맡겨졌으나, 외조부모마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는 바람에 혼자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초등학생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숨져있는 것을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임의 하위유형에 의료적 방임을 별도로 포함하는 것은 부모의 수술거부로 고통 받았던 신애양 사건³⁾이 TV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내의 연구에서 아동방임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성혜(1992)는 방임의 개념에 아동에게 의식주, 의료적 보호 등 적절한 보호가 주어지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와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관리 소홀, 비행 방조, 애정 소홀 등을 포함시켰다. 송성자(1993)는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신체적, 성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신체적 보호나 감독을 제공하지 못하여 가정 내 혹은 가정외의 상황에서 학대받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거나 허용한 것 등을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채혜정은 방임은 아동의 부모나 아동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적절한 부양과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의료적, 치료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 또는 버림받은 경우라고 하였다. 허남순(1993)에 의하면 방임이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방치하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곽덕영과 양승희(1999)는 방임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으로 부적절한 영양, 의복, 의료적 처치, 적절한 보호 없이 아동을 방치하거나 학교에 장기간 계속되는 무단결석을 허용, 약물이나 술을 허용하는 행동이며, 정서학대와 구분 짓기 쉽지 않으나 두 가지 모두 신체적 학대로 발전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며, 아동발달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인영(2000)은 방임이 학대에 비해 보다 더 빈번한 태만의 문제이며, 신체적 학대가 사건적이며 시간 제한적인데 비하여 방임은 만성적이며 지속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대가 아동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영미(2002)는 방임이란 주 양육자가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 개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해주지 못해 아동의 건강과 안

3) 1999년 8월 21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되었다. 신애 양은 월름 종양으로 진단받았지만 부모의 종교적 신념으로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었다.

전을 위협받고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류혜정(2003)에 의하면, 방임이란 주양육자의 양육태만이나 무관심 또는 부모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자와 양육을 받지 못하여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안정과 성장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윤선화, 2005 재인용).

국내 아동방임 연구를 분석한 이봉주(2005)는 아동방임에 대한 정의에서 합의되기 어려웠던 부분을 다섯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아동이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의 수준이 무엇인가 둘째, 부모나 양육자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나 소극적인 비행위가 방임적인 행동에 해당하는가 셋째, 부모나 양육자의 그러한 행위나 비행위가 방임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꼭 의도적이어야 하는가 넷째, 아동에게 미친 위협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하는가 즉 그러한 행위나 비행위의 아동의 건강, 안전, 혹은 발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다섯째, 방임이 발생한 가정의 상황이 빈곤의 결과인가 혹은 부모의 방임적 행동의 결과인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국외의 연구에서 아동방임의 정의를 살펴보면, Depanfil와 Salus(1992)에 의하면 방임은 바람직한 행동의 결여라고 정의하고, 방임의 유형을 신체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Straus와 동료들(1995)은 아동방임을 아동의 발달시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발달적 욕구를 물리적 욕구(Physical needs), 정서적 욕구(Emotional needs), 감독 욕구(Supervision needs), 인지적 욕구(Cognitive needs)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Wallace(1999)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방치적 처우를 방임이라 한다.

Dubowitz, Black, Starr, Zuravin(1991, 1993)에 의하면 최선의 보호로부터 매우 부적절한 보호까지를 범위로 하고 연속체내에서 부모의 과실보다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 등이 공유하는 책임에 더 강조를 두고 이해되어야 하는 형상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김순애, 1999 재인용). Meier(1964)는

신체적 돌봄, 부적절하거나 부재한 의료적 돌봄, 잔인하거나 학대적인 다루기, 부적절한 관리, 아동 능력의 착취, 아동을 불법적으로 학교밖에 두기, 아동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도덕적 영향력이나 범죄적인 것에 아동을 노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Polansky, Hally와 Polansky(1975)는 법적,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방임을 정의하면서 아동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람이 고의적이거나 보통이 아닌 수준으로 현재 아동에게 유용한 경험을 태만하거나, 일반적인 인간의 신체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기를 포기한 상태라고 하였다(박미경, 2006 재인용).

외국에서도 방임을 정의할 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를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첫째, 부적절한 보호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혹은 어느 선에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부적절한 보호로 인한 결과를 어디까지로 보는가이다. 감독받지 못한 유아가 육조에서 익사한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만, 부모의 부적절한 보호로 인한 아동의 문제 행동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DUbowiz, Pitts, Litrownik, Cox, Runyan & Black, 2005). 셋째, 부모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빈곤과 같이 다른 요인과 관계없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여부로 방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Dubowitz, Black, Starr, & Zuravin, 1993), 혹은 빈곤자체도 부모가 아동 보호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가 불명료하다(김세원, 2006).

3) 아동방임의 유형 및 기준

아동방임의 정의는 아동발달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자들이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방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아동방임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동방임의 유형도 학자별로 나라별로 분류기준이 다르다(2006, 박미경).

보건복지부(2006)는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외국의 경우는 많은 연구에서 NIS(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의 기준에 따르는데, NIS에서 아동방임은 신체적, 교육적, 정서적 방임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방임은 의식주 제공과 의료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 교육적 방임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과 지도 감독의 결여, 정서적 방임은 애정이 소홀하고 아동에게 무관심한 것을 말한다. 또한 Dubowitz, Pitts & Black(2004)는 아동방임을 신체적 방임, 심리적 방임, 환경적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아동복지협회는 방임의 유형을 1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4가지 유형에는 부적절한 음식, 부적절한 옷차림, 부적절한 의료적 보호, 부적절한 정신건강보호, 부적당한 쉼터, 부적절한 공중위생수단, 부

적절한 개인의 위생, 건강을 해치는 환경, 노동력착취, 부적절한 충고, 노출, 감금, 부적절한 정서적 보호, 부적절한 교육이 있다.

Straus와 동료들(1995)은 아동방임을 물리적(Physical) 방임, 정서적(emotional) 방임, 인지적(cognitive) 방임, 지도·감독의(supervisory) 방임으로 구분하고 방임척도(Neglect Scale: NS)를 개발하였다. 최근 발전된 NS는 네 가지 방임 유형에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노출, 양육자의 부재, 알콜노출 등이 추가되어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raus와 동료들이 구분한 물리적 방임은 의식주와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정서적 방임은, 애정, 지지, 동료애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감독의 방임은 제한을 설정하기, 잘못된 행위를 감독하기, 아동의 소재와 친구를 알기 등, 인지적 방임은 아동과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인지적 방임, 지도·감독 방임, 환경적 방임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방임의 정의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아동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적 욕구에 근거한 Straus와 동료들(1995)의 정의와 가정폭력과 알콜 등 유해환경에 방치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4) 아동방임의 원인 및 결과

(1) 원인

아동방임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은,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에서 아주 중요하다. 현재 아동방임의 원인에 관한 많은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방임을 유발하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는 연구는 없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함께 다루어 아동학대의 원인에서 아동방임을 설명하려고 시도되었다.

여기서는 아동방임의 원인을 경제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 발달론적 관점의 네 가지로 살펴보겠다.

가.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은 빈곤이 방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방임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며 빈곤은 지속적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주장한다. Giovannoni 와 Billingsley(1970)과 Pelton(1989)는 빈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Young(1964)는 방임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부모의 미성숙한 특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 대부분의 가정은 빈곤하였다는 것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Weissbound(1996)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 아동들보다 거의 3배 이상 빈곤한 아동을 보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1996년 아동보호기금(Children's Defense Fund)에 의하면 백인아동의 58.8%,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27.4%, 라틴아메리카계 미국인의 10.1%가 방임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여 빈곤이 아동방임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 대립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아동방임과 빈곤의 관계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Crittenden(1999)는 빈곤이 가지는 실업, 낮은 교육, 사회적 고립, 많은 자녀 수, 10대 미혼모의 출산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방임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나.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은 방임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선호되어 왔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을 환경의 한 부분으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체로 보았다. 방임에서 생태학적 관점은 몇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다. 방임가족은 이웃, 사회 문화의 상황 내에서 보아야 한다. 문화와 민족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다. 가족은 복잡한 체계로써 보아야 하며 그들이 나타내는 강점은 그들이 가지는 문제만큼 중요하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이슈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보인다. 방임가족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은 사회적 지지를 강조하는 개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Kadushin and Martin, 1988).

다. 사회심리학적 관점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이 가정환경, 경제수준, 사회문화적 특성에 있다고 보았다. 가정 환경적 특성으로는 부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지식부족, 부모의 자녀양육 거부 및 포기(부부갈등, 별거, 이혼, 원치 않는 임신 등의 경우),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 자녀양육 능력의 부족(부모자신의 장기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을 들 수 있다. 가정 경제적 특성으로 빈곤가정을 들 수 있는데, 아동학대, 방임, 유기 등은 빈곤의 정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이 높은 계층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러한 스트레스와 좌절은 자기 통제에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기제를 약화시켜 아동학대, 방임, 유기행동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거나 문화갈등, 가치갈등으로 인한 혼돈과 좌절 및 무력감이 결과적으로 가족체계에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자녀양육의 태도, 가치, 역할, 방법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가정의 실직상태, 사회적 소외, 체벌의 용납, 아동에 대한 소유물 인식 등이 아동에 대한 학대 및 방임을 사회적으로 묵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인한 아동양육에 대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 저하, 불평등한 사회구조, 폭력적인 하위문화가 방임을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은주, 2004 재인용).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아동방임의 원인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관점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작한 아동방임개입매뉴얼에서는 아동방임의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부모요인(부모의 발달사와 성격요인, 우울, 사회기술부족, 약물남용), 아동요인, 가족체계요인(가족 구성, 가족 규모, 가족의 상호작용 유형), 환경적 스트레스와 지원, 비공식적 지지체계, 스트레스, 빈곤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라. 발달적 관점

아동 개인의 특성 때문에 방임이 발생한다는 것이 발달론적 관점이다. 문화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발달론적 관점에서 방임의 대상이 되어 온 아동은 주로 정신지체아 신체장애아, 장기질환 아동, 미혼모 아동이었다. 장애아의 경우 이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부정적인 면이 지배적이며, 사회의 생활 환경적 조건이 이들의 편의를 고려한 경우가 극히 드물거나, 국가의 제도적 보호 조치의 미흡, 낮은 사회참여의 여건 등이 방임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미혼모,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에 사회의 냉대 등으로 자녀양육이 어려워 자녀를 입양 또는 시설보호조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은주, 2004).

이러한 네 가지 관점 외에도 아동방임의 위험요인을 개인적 특성(아동, 부모), 양육요인, 사회문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표Ⅱ-3 참조>.

<표Ⅱ-3> 방임의 위험요인

구분	위험요인	
개인적 특성	아동	- 신체적 미숙아 - 성장실패 - 섭식곤란 - 발달지연 - 선천기형/질병 - 까다로운 기질/잦은 울음 - 근육긴장도 이상/ 안기지 않음/ 자극에 민감
	부모	- 정신질환/우울증 - 심각한 신체질병 - 혼란스러운 부모 - 발달지연 - 전과기록 - 시설양육경험 - 아이를 잃은 경험 - 큰아이의 문제행동 - 술/약물남용 - 과거학대 경험
양육요인	- 영아에 대한 둔감 - 아이에 대한 소곤거림 부족 - 눈맞춤의 부족 - 임신 중의 정서불안 - 양육지식의 부족 - 정기적인 병원진찰 결여 - 아이를 깨끗하게 씻기지 않음 - 아이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함 - 아이의 발달을 촉진시키지 않음 - 아이에 대한 부정적 감정 - 아이에 대한 부정적 생각	

사회문화요인	- 만성실업 - 불량한 주거 - 10대 모성 - 가족 역기능 - 최근 스트레스(죽음, 실직, 이민 등) - 잦은 이사 - 낮은 수입 - 낮은 교육 - 가족 내 폭력 - 지지 결여/고립
--------	---

출처: Landy S, 2000, p345; 박미경, 2006 재인용.

(2) 아동방임의 결과

아동방임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그 후유증의 심각성이 축소 또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방임되는 아동은 성장실패(Failure to Thrive)를 가져와 체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되며 인지 기능의 결함과 발달지연, 중추신경계 장애로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인다. 또한 감정조절기능의 저하로 인해 위축되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고,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보이고, 자기개념의 손상으로 인한 무력감을 가지고, 애착형성의 붕괴,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와 또래 관계의 이상, 학교부적응 정신병리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 또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안동현, 2000).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방임 개입매뉴얼(2006)에서 제시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방임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가. 영유아

방임으로 인하여 영유아가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영유아에게 발달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즉, 적절한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성장부진이 나타난다. 방임된 영유아의 경우 어머니와의 심리적 애착의 결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1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방임되지 않은 영유아와 비교했을 때 방임된 영유아는 대처능력 결핍, 욕구불만, 분노가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더 많이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방임된 영유아는 비기질적 성장실패(nonorganic failure to thrive)를 겪기도 한다.

여기서 ‘성장실패’는 2세 이하의 유아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비기질적’인 발달의 실패는 생물학적, 또는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유아에게 성장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데서 기인함을 의미한다. 즉 비기질적 성장실패는 2세 이하의 유아가 적절한 성장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비기질적 성장실패는 발달지체, 성격장애, 사망 등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러한 비기질적 성장실패에 대한 전통적 접근은 의학과 사회적 서비스 중재의 결합을 취한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1) 위급한 경우, 입원시켜 유아의 체중을 증가시키기, 2) 비기질적 성장실패가 발생되며 위험해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 장기 간 양육 간호시설에 배치하기, 3)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 4) 비기질적 성장실패가 나타난 아동이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 II-4> 비기질적 성장실패의 지표

구분	지표
신체적	- 3% 이하의 체중과 신장 - 같은 연령의 정상적 아동의 체중의 약 80~85%이하의 체중 - 이전의 체중을 유지하는데 실패 - 특정 시간동안 성장을 유지하는데 실패(5세 이하의 유아들은 2개월 성장유지, 5세 이상의 유아들은 3개월 성장 유지) - 기타: 작은 머리둘레, 볼록 튀어나온 배, 결핍된 근육긴장도, 설사, 긴장, 감기, 창백한 얼굴, 얼룩이 생긴 피부 등
정신적	- 지체된 정신운동 발달
행동적	- 불면증 - 높은 수준의 경계심 - 웃음 결여 - 포옹에 대한 저항 - 누웠을 때 신생아와 같은 개구리 자세를 취함 - 고통에 무감각 - 자해경향 - 쓰레기 같은 부적절한 것을 섭취

나. 유치원 및 저학년 아동

방임된 아동은 학습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하며, 부주의하며, 비참여적이며, 창의성이 부족하고, 매일매일의 학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가진다. 또한 방임아동들은 교사에게 의존적이고, 무력하고, 수동적이며 동시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 Egeland(1987)의 학대받은 아동집단의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방임된 아동들이 가장 심각한 발달상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음이 밝혀졌다.

다. 고학년 아동

방임의 경험이 있는 학령기 아동은 심각한 학습결핍이 나타난다. 방임된 가정환경에서 지적인 자극을 적게 받은 아동들은 어휘력 결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행평가 등에서 평균이하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방임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교에서 행동 상 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즉 학교를 더 많이 결석하며, 유급하는 비율이 더 높다.

라. 청소년기

청소년 비행은 종종 아동방임과 관련 있다고 설명되지만 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관련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중에 학대 및 방임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비행에 대한 회고연구(retrospective study)는 조사 대상 청소년의 9~60%정도가 학대 및 방임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받은 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전체의 51% 이상이었다.

2. 아동의 권리와 방임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CRC는 아동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을 보호를 넘어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CRC는 현재 미국을 제외한 192개국의 비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비준을 받은 국제법이다. 우리나라는 CRC에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였다. 또한 CRC를 비준한 국가는 CRC 이행상황을 비준 후 2년 이내, 그 후 매5년마다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994년 11월 1차 보고서를 2000년 5월 1일 2차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03년 1월 31일 2차보고서에 대하여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CRC는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개 조항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CRC의 4가지 기본개념 즉, 아동권리의 4가지 범주는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이다. 첫째,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둘째,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셋째,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은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유니세프 세계교육부, 1995).

아동방임은 보호권이 침해된 것이며, 생존권과 발달권 역시 박탈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른 권리 역시 실현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참여권 역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동방임은 아동권리의 모든 영역의 침해되는 극단적인 아동침해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II -5> 아동권리의 4가지 범주

범주	정의	예시	조항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6조, 24조, 7조, 8조, 9조, 19조, 20조, 21조, 23조, 26조, 27조, 30조, 32조, 33조, 34조, 35조, 38조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	2조, 7조, 23조, 30조, 10조, 11조, 16조, 19조, 20조, 21조, 25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39조, 40조, 10조, 22조, 28조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17조, 28조, 29조, 31조, 14조, 5조, 6조, 13조, 15조, 7조, 24조, 12조, 13조, 9조, 10조, 11조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12조, 13조, 15조, 17조, 18조

유니세프(2005)는 CRC에 의거하여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를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Ⅱ-6>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방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며 방임 아동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방임된 아동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 방임사례에 따라 ‘생존과 발달의 권리’, ‘신분을 가질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및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가족을 갖고 부모의 지도 받을 권리’, ‘결손가정 아동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장애아가 특별히 보호 받을 권리’ 등이 관련되어 있다.

모든 아동의 권리와 CRC 조항은 상호의존적이며 단독으로 고려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아동방임은 아동이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침해하고 위협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표 II-6> 어린 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

내용	CRC 관련 조항
평등의 권리	2,30
최상의 이익을 고려받을 권리	3,18
생존과 발달의 권리	6
신분을 가질 권리	7,8
가족을 갖고 부모의 지도를 받을 권리	5,7,8,9,10,18,21,25
불법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입양되지 않을 권리	11,21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12,13,14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	15
사생활과 가정, 가족, 통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16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17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20,22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2, 38, 39
장애아가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	23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및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4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권리	26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7
교육받을 권리	28, 29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 문화와 예술을 즐길 권리	31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성착취나 경제적 착취,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36, 39
고문당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37-39
범법자 어린이들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40

출처: 유니세프(2005). 2005세계아동현황보고서

CRC에서 아동방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19조 “아동학대와 방임”이다. CRC 제19조는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상기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여타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CRC 19조는 방임 아동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방임아동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동방임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및 연구하고, 감독해야 하며 관련 법률의 제정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CRC는 국가가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방임된 아동의 보호와 치료, 예방 및 감독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차,2차 정부보고서 제출을 통해 CRC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해왔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상황을 모니터링 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CRC 모니터링의 결과로서 이러한 권고의견은 아동권리증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하여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권고한 내용은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자 훈련, 아동

학대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정보수집체계 구축,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를 신고접수, 모니터, 조사하는 국가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기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독립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아동기 특수성 이전에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인권정책에서 ‘아동’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6)에서는 아동과 관련해서 네 가지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은 아동방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아동 양육과 보호의 국가책임 강화’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방임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지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동방임의 특성상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와 보육혜택 계획에 근거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7> 아동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내용

주제	목표	국가정책방향
• 아동양육과 보호의 국가책임강화	- 국내거주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양육책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한국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보장하여 국외입양을 줄여야하고, 가정위탁이나 소규모시설에서의 보호를 활성화,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의 시정, 아동학대 예방과 불의의 사고 예방 등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강화	-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영양과 건강권을 확보하여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확립함.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장애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정책에 반영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발달수준에 적합한 생식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보육·교육혜택 확대	- 영유아의 교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함.	-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및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아동의 참여권 보장	- 학교운영과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참여를 활성화함	- 가정·학교·사회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함.

3. 아동방임 현황 및 관련 법률

1) 아동방임 현황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2001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한 해 동안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1391을 통해 신고·접수된 사례를 분석하여 작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아동방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아동방임이 얼마나 발생하는 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제시한 아동학대발생률을 근거로 아동 방임률을 추정하면 아동방임은 아동인구 1,000명당 0.15명 발생한다는 아주 낮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가 발달된 미국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 수는 아동 1,000명당 12.3명이며, 아동학대 유형에서 아동방임이 60.5% 차지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방임율은 높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체계가 도입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며, 신고에 의존한 체계로 인하여 아동방임의 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2001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수가 현재 2배로 증가되었다는 점과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도 대중의 인식이 적은 아동방임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방임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표 II-8> 아동방임 발생률 추정

18세미만 아동수	아동학대 사례수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방임사례	아동학대 사례유형 중 방임을	아동학대 발생률 (인구천명당)	아동방임 발생률 (인구천명당)
11,079,827명	4,633건	1,635건	35.3%	0.42	0.15

* 본자료는 '200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근거로 본연구자가 추정한 것임

** 본 추정치는 중복아동학대와 재학대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신고사례와 아동수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지난 5년 동안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방임은 매해 30%이상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건수에서 중복학대는 1,710건(3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중복학대 다음으로는 방임이 1,635건(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유형에 모두 표기해서 살펴볼 경우, 방임이 2,416건(36.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표 II-9>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 건, %)

연도 유형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신체학대	476(22.6)	254(10.3)	347(11.9)	364(9.4)	423(9.1)
정서학대	114(5.4)	184(7.4)	207(7.1)	350(9.0)	512(11.1)
성학대	86(4.1)	65(2.6)	134(4.6)	177(4.5)	206(4.4)
방임	672(31.9)	814(32.8)	965(33.0)	1,367(35.1)	1,635(35.3)
유기	134(6.4)	212(8.6)	113(3.9)	125(3.2)	147(3.2)
중복학대	623(29.6)	949(38.3)	1,155(39.5)	1,508(38.8)	1,710(36.9)
계	2,105(100.0)	2,478(100.0)	2,921(100.0)	3,891(100.0)	4,633(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방임의 하위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의 순이다. 주목할 점은 본 자료에는 정서적 방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방임에 대한 인식이 물리적 방임에 치우쳐 있으며, 정서적 방임은 거의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0> 방임의 하위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건)

연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않음	호적에 올리지않음	사망	기타	계
2001	703**	351	94	140	17	-	16	1,324
2002	986	428	148	163	57	-	75	1,857
2003	1,168	486	146	152	35	0	83	2,070
2004	1,400	619	322	177	66	3	345	2,932
2005	1,649	717	315	189	58	2	455	3,385
계	3,836	2,601	1,028	821	233	5	974	11,568

* 중복 표기

** 2001년은 '의식주 제공 없음'이 '물리적 방임'과 별도로 표기 되었으나, 2002년부터 '의식주 제공 없음' 항목이 '물리적 방임' 항목에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2001년 '물리적 방임' 324건과 '의식주 제공 없음' 379건을 합계 내어 703건으로 표기하였다.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피해아동연령별로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영아기부터 취학 전인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은 방임이 모두 40%이상을 차지하여 이 시기의 아동들이 방임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7세 이후 연령이 높아질수록 방임의 비율이 줄어든다.

<표 II-11> 피해아동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

(단위: 건, %)

유형 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계
1세미만	22(14.6)	9(6.0)	0(0.0)	65(43.0)	55(36.4)	151(100.0)
1~3세	77(16.5)	102(21.8)	7(1.5)	243(52.5)	36(7.7)	467(100.0)
4~6세	178(19.9)	232(26.0)	53(5.9)	389(43.6)	41(4.6)	893(100.0)
7~9세	404(26.9)	443(29.5)	69(4.6)	562(37.3)	26(1.7)	1,504(100.0)
10~12세	398(27.9)	573(32.1)	77(4.3)	631(35.3)	7(0.4)	1,785(100.0)
13~15세	382(28.8)	472(35.6)	66(5.0)	398(30.0)	8(0.6)	1,326(100.0)
16~18세	167(31.6)	203(38.4)	32(6.1)	124(23.5)	2(0.4)	528(100.0)
파악안됨	0(0.0)	0(0.0)	1(2.5)	2(50.0)	1(25.0)	4(100.0)
계	1,728(25.9)	2,034(30.6)	305(4.6)	2,416(36.3)	176(2.6)	6,659(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방임을 하는 행위자의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중독 및 질환문제, 가족·종교문제, 성격 및 기질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특성은 유기를 제외한 아동학대와 방임에서 모두 높았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다른 유형보다 방임에서 눈에 띄게 높았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방임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위험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2> 학대행위자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

특성 \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전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30.3	30.1	18.5	31.1	16.3	30.0
중독 및 질환문제	15.4	14.8	13.9	14.0	6.1	14.6
성격 및 기질문제	12.8	12.9	8.9	7.7	2.1	10.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0.0	21.2	11.6	30.0	23.1	23.5
어릴적 학대경험 및 폭력성	8.8	8.2	7.2	1.0	3.0	6.9
성문제	0.6	0.7	16.7	0.5	0.0	1.1
원치 않는 아이	1.2	1.1	0.3	1.2	2.8	1.1
가족·종교 문제	8.6	9.9	7.1	8.9	10.2	9.1
특성 없음	0.7	0.2	1.8	0.5	0.7	0.5
파악안됨	1.6	0.9	14.0	2.1	32.7	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200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05년 아동학대의 재신고 사례에서도 방임은 재신고율이 전체 604건 중에서 232건(38.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방임이 일시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방임 피해 양상과 방임피해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정익중(2005)은 아동방임 사례 중 거의 매일 방임이 일어난 경우가 거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방임 피해아동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임의 피해가 지속적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주고 있다. 방임 피해아동 가족의 특징을 살펴보면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가정이 전체 방임피해아동 가족의 약 50% 정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가족이 전체 방임피해아동 가족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아동방임에 미

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이봉주, 2006).

장화정(2005)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중에서 거점센터인 19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고소/소발되어 기소된 355건의 사례 중 진행 중이거나 고소가 취하된 100사례를 제외한 255사례를 직접 개입한 상담원들에게 설문은 통해 학대행위자 고소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장화정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임의 고소/고발 건수와 학대행위자 유형, 처벌근거 법률과 최종법적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총 255건으로 신체학대가 103건(40.4%), 성학대가 95건(37.3%), 방임이 47건(18.4%), 정서학대 10건(3.9%)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방임의 사례는 아동들이 제때 먹거나, 쾌적한 공간이 없고, 벌레 등 다양한 이물질이 온 집안 안에 있어 아동 양육 상 불결하고, 의료적 처치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다. 고소/고발 사례 중에서 아동방임의 경우 방임의 특성상 학대행위자는 부 36건(76.65%), 모 11건(23.4%)이며 특히 부의 방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편부가정에서 부에 의한 방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방임의 경우 학대행위자 처벌 근거 법률로 아동복지법이 94%로 절대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종법적조치결과도 불기소가 72%로 다른 학대유형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것도 19%로 낮게 나타났다. 2003년 고소·고발된 아동학대 사안 169건 중 사법연감의 통계자료상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자가 처벌되는 사안이 10건이 채 안 된다는 이찬진(2004)의 보고를 참고로 한다면, 아동복지법으로 가해자 처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치는 방임사건으로 학대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힘들며, 방임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처벌 규정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3>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처벌근거 법률의 결과

(단위: 건, %)

법률 학대유형	아동복지법	성폭법	폭력행위	형법	기타	전체
신체학대	58(56.3)	6(5.8)	24(23.3)	9(8.7)	6(5.8)	103(100.0)
성학대	15(15.8)	73(76.8)	-	1(1.1)	6(6.3)	95(100.0)
방임	44(93.6)	1(2.1)	-	2(4.3)	-	47(100.0)
정서학대	5(50.5)	-	3(30.0)	-	2(20.0)	10(100.0)
계	122(47.8)	80(31.4)	27(10.6)	12(4.7)	14(5.5)	255(100.0)

출처: 장화정(2005).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4).

<표 II-14>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 법적조치결과

(단위: 건, %)

조치 학대유형	불기소	명령	징역1년미 만	징역1년이 상3년미만	징역3년 이상	전체
신체학대	28(27.2)	23(22.3)	13(12.6)	26(25.2)	13(12.6)	103(100.0)
성학대	21(22.1)	16(16.8)	5(5.3)	38(40.0)	15(15.8)	95(100.0)
방임	34(72.3)	4(8.5)	5(10.6)	4(8.5)	-	47(100.0)
정서학대	2(20.0)	7(70.0)	-	1(10.0)	-	10(100.0)
계	85(33.3)	50(19.6)	23(9.0)	69(27.1)	28(11.0)	255(100.0)

출처: 장화정(2005).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4).

2)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1) 아동복지법

국내법 중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의 보호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동안 법률적으로 미약했던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16개의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용어의 정의(2조), 학대아동보호사업(16조), 긴급전화설치(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24조) 및 업무(25조), 아동학대의 신고(25조), 피해아동의 보호(27조), 금지행위(29조), 처벌(40조) 등이 있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2003년 12월 22일, 2005년 6월 23일 부분개정 되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내용은 <표Ⅱ-15> 과 같다.

<표Ⅱ-15>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조문번호	조 문 명	조 문 내 용
제 2 조	용어의 정리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 16 조	아동복지시설 사업의 종류	③ 4. 학대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제 23 조	긴급전화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4 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25 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및 치료의뢰 2.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6 조	아동학대신고 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

		하는 의료 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 27 조	응급조치 의무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 28 조	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

		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 29 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 31 조	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 40 조	벌 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아동학대와 방임의 정의와 처벌에 대한 명시는 아동복지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아동관련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방임과 관련해서는 29조 4항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벌칙을 규정하였다.

<표 II-16> 아동복지법에서 아동관련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

법	내 용	비 고
아 동 복 지 법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제29조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29조 제4호)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29조 제7호)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 (제29조 제8호)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제29조 제5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제29조 제6호)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29조 제9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 (제40조 제4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 의 학대행위 (제29조 제2호)를 해서는 아니됨.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됨.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아동복지법에 추가되어 전면적 개정이 된 이후로 아직도 아동학대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로는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강화 및 예방교육, 조사과정과 관련하여 상담원 역할 및 지위, 협력체계규정,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친권상실 청구, 응급조치기간, 수사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보호, 학대행위자와 관련하여

처벌규정 강화 및 교육 및 치료서비스 의무 등이 있다.

여기서는 아동방임에 중점을 두어 최근의 법률적 쟁점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강화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등이다(<표Ⅱ-15>의 참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율은 30%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해마다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여 2005년 27.5%의 신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없으며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신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신고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호균(2004)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인들의 양성교육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적시에 아동을 신고하여 아동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경우 포상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조기 발견되기 어려운 아동의 방임의 특성상 아동의 일상을 관찰하기 쉽고, 아동에게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신고의무자 신고는 아동방임 예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아동방임과 관련된 두 번째 법률적 이슈는 학대행위자 교육 의무이다. 아동방임은 크게 아동의 욕구를 박탈 또는 해를 입히는 경우와, 아동의 욕구에 부적절하게 반응 또는 감독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보호자의 잘못된 양육태도와 의식으로 인한 학대와 방임은 상담 및 교육 서비스로 예방되고 치료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수강 및 치료는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조항만 담고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진 가정폭력 특별법으로 방임하는 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한계가 있다. 또한 방임은 아동학대, 가정폭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호자는 아동의 발달 욕구와 관련된 적절한 양육지식이 필요하며, 생계형 방임인 경우 보호자는 아동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방임의 특성을 감안한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관련 법률

아동보호체계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피학대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외에도 많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문제로 아동학대를 접근할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도 성폭력과 관련지어 개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연령기준이 불일치함으로 인하여 청소년관련 법률도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

학대아동의 보호 및 치료 서비스는 각각의 아동학대사례 특성에 따라 다른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아동학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조항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에서는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와 관련한 법, 피해아동의 전학과 관련한 법, 학대행위자 강제입원조치시 필요한 법, 학대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법 등으로 아동학대관련법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는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형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신보건법, 경찰관

직무직행법 등이 있다.

(3) 아동방임 관련 법률

아동방임 관련 법률로는 아동복지법이 아동방임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적 방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은 폭력과 함께 방임으로 인한 생명 위험에 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

부모가 아동을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을 행하거나 아동의 출생 후 호적에 올리지 않을 때, 혹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를 강제적으로 정신과에 입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현행 법령을 활용하여 개입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하여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와 민법 제924조에 근거하여 부모의 친권을 제한·상실시킨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적 방임에 개입한다. 또한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으로는 호적법이 있으며, 정신적 질환으로 아동을 방임하는 부모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과에 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표 II-17> 아동방임 관련 법률 내용

법률명	법조항	내용
아동복지법	제2조의 4 (용어의 정의)	·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4 (금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을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교육기본법 (취학의무)	제13조의 1	·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초·중등 교육법	제13조의 1,3 (취학의무)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학년 초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3) 아동학대 및 방임 행정체계

(1)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에서 아동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기구는 보건복지부⁴⁾, 여성부, 청소년위원회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아동정책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사회정책본부이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정책총괄, 노인정책, 인구아동정책의 세가지 업무로 구분하여 영유아와 아동복지정책, 모성보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노인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아동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인구아동정책과이다.

(3) 인구아동정책과

인구아동정책과는 인구여성정책팀, 출산지원팀, 아동안전관리팀, 아동복지팀으로 구분된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부서는 아동안전관리팀이다.

(4) 아동안전관리팀

아동안전관리팀은 아동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아동관련법령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2004년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육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되어, 보육·아동정책과에서 아동정책과로 변경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어린이주간 및 어린이 날에 관한 사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24조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2000년 10월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2001년 10월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 홍보, 연구,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시·군·구 차원의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6년 11월 현재 중앙을 제외한 총 41개의 지방 및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지방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곳으로 그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2006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 업무수행지침 개발 및 수정
- 아동학대예방사업 정책건의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전국적 홍보
- 아동학대전문상담원, 신고의무자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배치 및 조정
- 전국 아동학대사례현황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국제 아동학대사례개입

나.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도 차원에서 설치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총괄하며 긴밀하게 협력 한다. 전국 16개 시·도에 각1개소 이상(서울, 경기도, 강원 2개소) 2006년 11월 현재 총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2005년 11월 아동복지법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승인·취소권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운영을 통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 서비스제공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연계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사례의 전산시스템 입력 및 보존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학대아동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필요한 보호 및 양육조치 의뢰

*아동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공동생활가정) 운영은 지방아동보호종합센터만 해당

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사업이 확장됨으로 인하여 피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4년부터 꾸준히 개소가 증가하여, 현재 21개소가 설치되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 피학대아동 보호조치 :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보호 종합센터로 의뢰
-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 사례회의 운영(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활용 가능)
-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1) 신고 및 접수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아동학대신고전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초기 1391 전용번호를 사용하다가, 현재 아동통합번호인 현재 129번 또는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번으로 변경되었다.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아동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아동학대의심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를 구분하고 사례의 응급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데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는 12시간 이내, 단순아동학대사례는 48시간이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여성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모자복지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2) 현장조사 및 사정

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보통 상담원 2명 또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학대여부 확인 및 위험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 조사 시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조사한다.

아동학대사례 사정 시에는 아동의 안전여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가족들의 욕구 및 특성, 학대에 관련된 내용, 조치 및 서비스 제공 등을 주로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후속조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사례를 상담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사정·판별하기 위해서 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한다. 이는 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 및 사례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생태학적 모형으로 아동학대의 잠재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스크리닝 척도는 현장 조사 시 아동의 안전성 여부와 아동의 가정 분리 여부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스크리닝 척도는 아동요인, 부모 및 가해자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예(1점), 아니오(0점)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스크리닝 척도 점수에 의한 결과조치는 <표Ⅱ-18>과 같다.

<표Ⅱ-18> 스크리닝 척도 결과 조치 및 기준점수

기준점수	결과조치
0점 ~ 1점	일반사례로 다루거나 잠재위험사례로 다룬다.
2점 ~ 4점	아동학대사례이며, 원가정보호를 원칙
5점 ~ 9점	아동학대사례이며, 원가정보호 및 격리보호를 모두 감안하여 개별지표의 특성에 따라 판단
10점 ~ 20점	격리보호를 원칙

(3) 사례판정

아동학대사례를 아동복지법 정의 및 규정에 의하여 심각성의 정도, 응급성 여부, 적절한 조치 및 개입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네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사례로 판정되는 경우는 현장조사 결과 허위신고이거나 아동학대와 관련없는 아동문제로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g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를 의미하며,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 등 전반적인 아동상담을 실시하기도 하고 적절한 타기관으로 연계하면서 종결한다.

잠재위험사례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일회성 실체적 체벌로 판단되거나 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며, 양육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다음기관에 의뢰한다.

응급아동학대사례는 현재 학대가 진행 중이며 아동의 안전이 매우 위험한 경우, 성학대 또는 아동유기 사례 및 지속적, 장기적으로 저 연령 아동의 양육을 방치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해를 끼쳐서 가족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방임사례가 해당된다. 아동을 격리하여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의 입원조치 등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학대행위 자료부터 격리를 원하는 경우는 3일 이내에 센터에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일이상의 장기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는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인척보호, 대리양육(가정위탁보호) 및 시설보호 조치 등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를 의뢰하게 된다.

일시보호 또는 장기보호 중 부모와의 상담을 통하여 부모의 아동양육 태도에 개선의지가 있고 학대재발의 우려가 없으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을 가정으로 귀가시킨다.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등은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되며, 응급아동학대사례가 대부분 경찰의 수사를 요한다.

단수아동학대사례는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처가 경미하고 학대의 지

속성 정도가 미약하여 아동과 가족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이다.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하면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계획에 따라 아동·부모상담 및 지역사회내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재발 또는 가정 내 문제의 개선 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월 1회 정도 직접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다(이봉주, 이호균, 2004).

사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를 사용한다. 위험사정척도는 사례의 위험정도 수준을 평가하여 객관적 사례판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험수준에 따라 조치사항이 달라지며 사례계획도 달라져야 한다. 위험사정척도는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세부요인으로 아동요인에는 아동의 취약성, 아동의 문제행동 신체적 상태, 정서적 상태, 사회성이 있으며 부모요인으로는 일상생활결여, 출생사항, 신체적·정신적 상태, 학대 및 범죄력, 양육행동, 관계기관 협조태도가 있다. 가족요인으로는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망, 스트레스, 상호작용이 있으며 생활환경요인으로는 가해자 접근성, 지역사회 위험성, 주거환경이 속한다. 점수는 0점(없음), 1점(저), 2점(중), 3점(고)을 범위에 해당하며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한다.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 점수에 의한 결과조치는 <표Ⅱ-19>와 같다.

<표Ⅱ-19> 위험사정 척도 결과 조치 및 기준점수

기준점수	결과조치
0점 ~ 9점	일반사례로 다루고, 사례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
10점 이상	지속관찰, 아동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원칙으로 제공, 아동격리를 다소 적극적으로 고려, 지표특성에 따라 달리 하겠지만 상담원 및 사례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행위자의 접근이 가능하거나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30점 이상	아동격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
50점 이상	가해자 치료 및 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을 원칙
70점 이상	반드시 치료 및 고발 원칙

또한 사례판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한다.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는 원가정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 타기관의회,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이 있다.

(4) 조치결정

피학대 아동에 대한 조치는 크게 원가정에서의 보호와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격리보호하는 것이 있다. 아동의 격리보호조치는 그 기간에 따라 일시보호와 장기보호로 나누어진다.

아동학대로 인해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위기사정결과 아동학대의 위험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상조치 및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에 대한 종합사정 또는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음단계로 넘어가기에 앞서 아동 안전을 위한 비상조치 및 응급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 이때 학대자로부터 아동을 3일 이내의 격리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례는 응급조치를 3일 이상의 장기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장기격리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보호조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보호조치는 두 종류로 분류되어진다. 긴급상황시 또는 단기간에 보호를 하던 일시격리보호조치와 아동학대를 가해한 부모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장기격리보호조치로 나누어진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시·군·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용어의 정의) 2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a. 일시격리보호(응급조치)

아동 격리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현장 조사 시 아동학대 유형 및 피해 심각성 정도, 신고자 및 이웃과의 면접을 기초로 아동격리문제를 결정하여야 하며 아동격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이 가능한 빨리, 안전한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동의 격리는 가족해체의 한 현상이므로 이것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동 격리 기준은 아동이 가족에게 계속 머무를 경우 즉시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와 가족 내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아동의 영양상태-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체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아동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에 한한다.

아동 격리보호 서비스는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분리시켜 응급처치나 일시보호를 실시하는데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시·군·구의 아동상담소,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쉼터, 위탁가정, 그룹홈 등이 있으며 그 목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3일 이내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례는 ‘응급조치’가 가중하며, 3일이상의 장기격리가 필요한 사례는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b. 장기격리보호

법률상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며 일시보호시설과는 달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부모 또는 친척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실시하며 방법으로는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이 있으며 아동학대사태에 관하여 장기격리보호조치 기간은 3일 이상이 해당한다.

아동을 일시 또는 장기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등이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육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호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아동단기보호시설은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에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원가정 보호

단순아동학대사태이거나 응급한 사례가 아닌 경우,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은 사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가정복귀

가정복귀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강제로 격리된 가족의 보호기간이 종료될 즈음에 문제 가정의 상태가 예전의 아동학대를 야기하였던 환경적 요

인과 부모 요인들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점검하여 보고 또한 문제적 요인을 소유하였던 아동들의 가정복귀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대 이전의 원래 가정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I -20> 조치결정기준

구분	기준
원가정 보호	- 학대의 위험도가 높지 않음. - 의뢰 및 연계 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가정 내 서비스를 한다’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음. - 가정 내에서 중요 인물(피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지지적 인물)이 되어줄 사람이 있음. - 아동이 학교나 유치원 등의 소속집단에 매일 다니고 있음. - 보호자가 아동학대예방센터에 협조적이고, 센터방문이 가능하거나 센터상담원의 가정방문이 가능한 상태임.
일시 보호	- 피해아동이 가정 내에 계속 머무를 경우 위험한 학대상황에 직면하여 생명이 위급한 경우 - 가정내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피해아동의 영영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보호자로부터 신체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피해아동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요인보다 위험요인이 많은 경우 - 피해아동자체가 가출, 부랑, 문제행동으로 행동수정이 필요한 경우
장기 보호	- 가정에서 아동의 생명이 위험함 - 기장에서 아동의 심신발달을 저해함 - 아동이 돌아가기를 거부함 - 가족·아동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성학대 - 학대가 반복되는 사실이 있음 - 아동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없음. - 보호자가 정기적인 방문·통원지도를 거부함 - 가정이 현저하게 불화·대립하고 있음 - 끊임없이 아동을 꾸짖고 질책함 - 보호자가 학대행위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지 않음 - 보호자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임

(5) 서비스계획 및 제공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적인 가족보존 서비스/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부모교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알코올중독이나 정신 질환 등의 치료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빈곤문제를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기초생활보호 대상혜택을 받게 한다(이봉주, 이호균, 2004).

(6) 사례평가 및 종결

위험사정 척도를 3개월 단위로 실시하여 아동과 갖고의 위험요인의 감소 및 보호요인의 증가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종결시 종결평가서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여부, v해아동의 문제 행동 감소여부, 구직, 이사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환경의 개선 여부 등을 평가한다.

재발의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아동은 장기시설 입소 및 학대행위자는 구속기소 또는 잠적하여 센터에서 그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이상 없는 경우 사례를 종결한다.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하여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피해아동과 가족, 주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4. 아동방임 선행연구 검토

최근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은 부모의 소유라는 개념(이원숙, 1998, 이용교, 1993)이 널리 퍼져 있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은폐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아동은 부모와 사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출생하므로 적어도 성인이 되어 독립적인 생을 영위하기 전까지는 부모나 아동의 양육권을 갖는 성인(친권자)에 의존하여 성장한다. 그러나 아동양육자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가해진다고 해도 아동 본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박은미, 1999).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게 행한 신체적 상해나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Burgess & Conger(1987)은 아동학대를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부모나 양육자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로 신체적,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의 개념은 부모나 보호자가 18세 이하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로 해를 가하는 다양한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의 제2조 4항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강은영(2000)은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 신체적 학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학대나 아동방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아동학대의 한 유형인 신체적 학대에 연구가 집중되면서 아동 성학대 및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한국이웃사랑회와 아동학대문제연구소(2000)가 전국규모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가 23.6%, 정서적 학대 36.1%, 성학

대 14.6%, 방임적 학대가 58.1%로 신체적 학대보다 약 2.5배, 정서적 학대보다 1.6배, 성학대보다 약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한 이재연(2000)의 연구에 의하면, 방임적 아동학대는 20.2%로 나타났으며, 안동현(2000)의 연구에서는 방임적 아동학대가 39.6%로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조사된 방임적 아동학대의 비율도 46%로써 다른 학대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Trocme et al., 2003). 또한 Coohey(2003)은 신체적 학대 뿐 만 아니라 방임적 아동학대에 의해서도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아동들은 교통사고, 화재, 낙상, 수재상황에서 적절하게 지도 및 감독되지 않을 때 성인보다 높은 비율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방임에 대한 방임”은 지난 20년간 인식되어졌으나(Horowitz, 1984), 여전히 아동방임은 아동학대 연구에서 초라한 사촌정도로 통한다. 이렇듯,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는 아동학대 연구에 포함되어 조사되어져 왔으며, 아동방임에 대한 단독연구는 2000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을 초점으로 실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는 아동방임의 개념 또는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류혜정, 2003; 안동현 2000), 빈곤·저소득지역이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김은경, 2000; 김영미, 2002; 김순애, 2000, 신선희, 2005; 이봉주, 김세원, 2005; 오승환, 2003; 황재성, 2001), 방임된 아동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권정현, 2004; 원지원, 2004)와 방임의 영향과 이에 대한 정책 제안에 관한 연구(이은주, ; 이정희, 2000) 등이 이루어졌다. 방임의 영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세영과 남미정(2000)은 교육적 방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배종우(2000)는 신생아 치료실에서 자의퇴원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송미령(2005)는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해, 김혜영·장화정(2002)은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5년 개에 물린 아동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아동방임의 개입, 예방, 보호체계 등 관련된 연구가 정부차원의 정책토론회와 아동학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아동방임의 사회적 인식 및 문제점(의왕시 사례 중심)과 “아동방임의 현황과 범위 및 대책”에 관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매년 발행하는 아동학대 사례연구집 중 2005년도 연구집에서는 대부분의 사례를 방임사례에 치중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노숙하는 부에 의한 방임사례, 조부모에 의한 교육적 방임 사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방임사례, 한 부모 가정의 방임사례, 정신질환 보호자로부터 방임된 사례,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접근한 방임사례이다. 또한 굿네이버스 아동학대문제연구소는 “빈곤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이라는 주제로 사례 연구집을 발간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방임의 쟁점과 대책, 가족해체 및 빈곤으로 인한 만성적 방임사례, 빈곤으로 인한 물리적 및 교육적 방임 사례, 빈곤 및 모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방임사례, 빈곤 및 부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방임사례, 부모의 알콜문제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방임사례, 아동방임사례 평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천세영과 남미정(2000)의 연구는 교육적 방임에 대한 개념설정을 하고 교육적 방임의 원인을 모색함으로써 교육적 방임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교육적 방임의 개념을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소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은 학교나 기타 교육적 기회 접근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방해된 아동의 경우를 가리킨다. 이러한 방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가난 또는 부모결손 등으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애아동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 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와 부모의 인식부족으로 장애아동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 제도와 학교시설의 확충으로 교육적 방임현상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빈곤가정의 경우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소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

은 아동이 습관적으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는 경우, 연령에 맞는 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 특별교육이 필요함에도 그러한 교육적 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거부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 이외에, 학교와 교육기관 내부에서도 교육적 방임은 발생하고 있다. 외현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이상으로 교육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목적의 구현과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아동소외가 적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차원의 교육적 방임이란 학교의 교육적 처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육의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고 그로 인해 아동의 입장에서 교육적 결손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학교 내에서의 방임은 교육현실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다.

천태영과 남미영(2000)은 위에서 설명한 교육적 방임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적 방임의 원인을 가정, 학교, 사회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소극적, 적극적인 차원의 교육적 방임을 알아보기 위해 취학방임의 실태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방임의 실태를 조사했다. 교육적 방임의 일차적인 원인은 가정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정의 역할이 부족하면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치유되지 못할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원인을 찾을 때, 빈곤이나 부모 결손으로 인한 교육방임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정의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교육방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학교의 교육적 방임은 학교붕괴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경우이다. 또한 교육적 방임의 원인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즉, 교육적 방임은 좁게는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시설과 인력자원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넓게는 모든 교육문제를 학교제도에 맡겨버리는 관행적 행태도 포함될 수 있다.

배종우(2000)는 신생아 치료실에서의 자의퇴원에 관한 경우를 중심으로 아동의 의료적 방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미숙아 후유증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의퇴원을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방임적 아동학대가 만연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아동에 대한 의료적 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환아의 치료결정을 보호자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은 문제 발생이후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시설이 가정과 다른 형태로 제공되므로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상태가 일반 아동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정희(2000)는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면서 아동방임을 경험한 아동들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법률적 제도는 확보되었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협조필요를 제시하였다.

오승환(2002)은 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교육적 방임이 약 40%, 지도/감독 소홀이 24%, 의료적 방임 16%, 방치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재연(2000)의 전국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승환의 연구는 결손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아동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결손가족 유형별로 보았을 때 아동방임은 부자가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방임을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 개인 특성 중에서는 학업성적과 비행으로 나타났고, 가족특성 중에서는 유의미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업성적이 낮고 비행행동이 많은 아동일수록 아동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김혜영과 장화정(2002)은 부모위험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부모위험 요인을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 양육태도, 부부갈등, 부모성격으로 구분하여 방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네 가지 부모위험 요인 중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 아동방임은 부모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혜영과 장화정(2002)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방임을 하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의 아동방임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 관한 연구(Dubowitz et al., 2005; English et al., 2005; Hildyard, & Wolfe, 2002; Jones, Finkelhor, & Halter, 2006)와 아동방임척도개발 및 검증에 관한 연구(Dubowitz, Pitts, & Black, 2004; Harrington et al., 2002; Kantor et al., 2004; Lounds, Borkowski, & Whitman, 2000, slack et al. 2004))가 있다. 주목할 점은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 및 정의와 관련된 연구들이 아동방임이 신체학대, 성학대 등의 다른 학대유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척도를 개발하고 검증하기 위해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척도개발은 아동방임에 대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주목할 만 하다. 그밖에 아동방임실태분석(Scope & Theobald, 2006), 아동방임예방프로그램(Depanfilis & Dubowitz, 2005)과 아동방임의 영향(Edwards, Shipman & Brown, 2005), 아동방임의 구체적 영역에 따른 관계 등에 관한 연구(Knutson et al, 2005, Wark, Kruczek, & Boley, 2003)가 실시되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아동방임과 빈곤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다(Brown, Cohen & Johnson, 1998; chaffin, Wherry, newlin, Crutchfield & Dynkman, 1996; Gaudin, 1993; Liaw & brooks-Gunn, 1994; Nelson, Saunders & landsman, 1993; Paget, Phillp & Abramczyk 1993). 몇몇 학자들은 방임되는 아동들의 상당수가 빈곤함을 들어 빈곤이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든 빈곤 아동들이 방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빈곤이 곧 방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이 빈곤과 아동

방임의 관계 정도의 크기나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로 빈곤과 방임의 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상으로 방임적 아동학대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아동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주로 가족특성이나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동방임이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지 및 행동발달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예방하고 아동방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III.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1. 미국의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미국에서 아동학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률 모두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 연방정부는 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CAPTA)을 근거로 대부분의 주정부는 주정부 법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방지및치료법(CAPTA)에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사망,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피해, 성적학대와 착취, 심각한 피해여부가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부모 혹은 보호자의 행위나 또는 이를 막지 못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각각의 주정부는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몇몇 주정부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또 다른 주정부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와 정서학대로 학대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미국 아동국의 아동복지관련 정보센터인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는 각각의 주정부의 법률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을 정의하였다. ‘Defini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Summary of State Law’ 보고서는 아동학대유형을 신체학대, 약물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로 구분하고 이를 정의하였다.

미국의 모든 주정부는 신체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일반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화상을 입히고 꼬집는 것과 같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해로움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말한다. 몇몇 주정부는 약물학대를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정의한다. 아동의 거주지에서 약물을 제조하는 것, 아동에게 약물 또는 알코올을 주거나 판매하는 것, 양육자의 약물사용으로 인한 아동을 부적절하게 양육하는 것, 약물 또는 약물매매범죄에 아동을 노출하는 것 등을 약물학대에 포함하였다. 모든 주정부는 성학대를 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성학대는 성적착취를 포함하여 아동을 성매매하거나 포르노그래피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의한다. 조지아와 워싱턴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는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행동, 정서, 인지에 심각한 영향을 줄만큼 아동의 능력과 정서적 안정성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자주 정의된다.

모든 주정부에서 방임은 학대유형에서 단독으로 구분하거나 학대의 하위유형으로 포함하고 있다. 방임은 주로 적절한 음식, 의류, 주거 또는 의료적 보호의 박탈(deprivation)으로 정의된다. 몇몇 주정부는 재정적 이유로 인한 방임은 방임에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약 18개 주정부와 지방은 방임의 정의에 유기를 포함하고, 13개주와 지방정부는 유기를 방임과 분리하여 정의한다.

(2) 현황

미국의 아동학대 건수는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994년 가장 높은 1,029,118명을 기록 한 후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90만 명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및 방임율이 1990년대 초에 비하여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30~40% 감소하였지만, 아동방임은 아동방임율이 가장 높았던 1992년에 비하여 7%의 낮은 감소율을 보인다.

<그림 III-1> 아동학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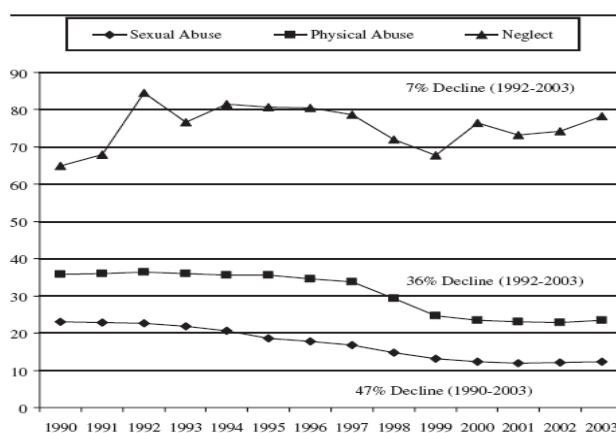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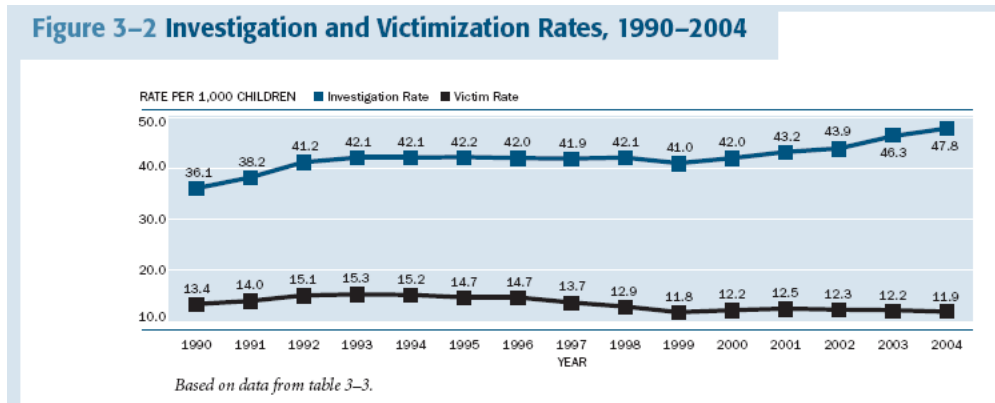


FIGURE 1: U.S. Maltreatment Trends
SOUR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Children's Bureau, 1992-2005.

출처 : Jone,L.M.,Finkelhor,D.&Halter,S.(2006). Child maltreatment trends in the 1990s. *Child Maltreatment*, 11(2), 107-120.

미국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는 매년 아동학대보고서인 Child Maltreatment을 발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아동보호서비스(CPS)기관에 신고 의뢰된 아동은 3,50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아동 1,000명당 49.8명이다. 신고 의뢰된 사례 중에서 872,000명이 아동학대 피해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동 1000명당 11.9명 이다. 이러한 피해 아동의 비율은 1990년 아동 1000명당 13.4명에서 2004년 11.95명으로 전체 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율은 감소하였다.

<그림 III-2> Investigation and Victimization Rates, 1990-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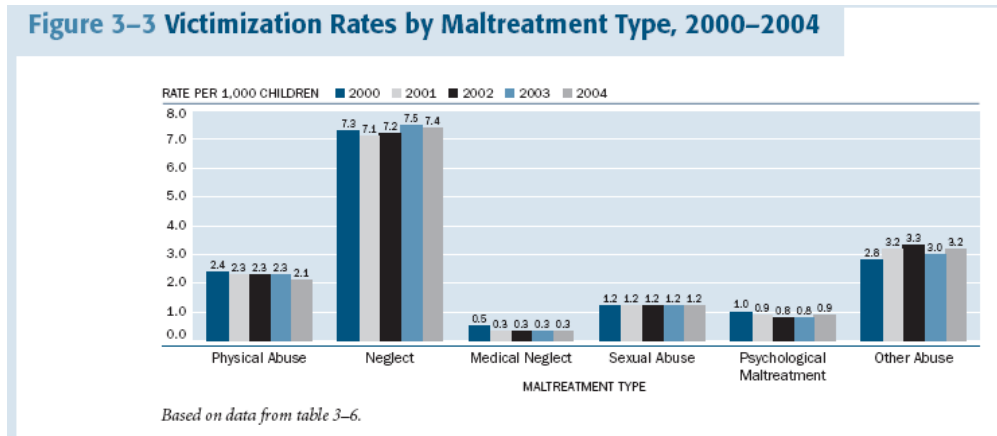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2004.

2004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 중 방임은 62.4%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학대 17.5%, 성학대 9.7%, 심리적 학대 7.0%, 의료적 방임 2.1%의 순이었다. 나머지 14.5% 피해아동은 유기, 해를 입히려는 위협, 선천적 약물 중독과 같은 다른 형태의 학대를 경험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교사, 법률가,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교사 24.1%, 법률가 21.8%, 의사 11.0%로 전문가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으며, 방임은 전문가에 의한 신고가 60.8%로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의료적 방임의 신고 형태는 신고의 1/3이 의료인이었으며, 전문가의 신고율이 7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가 48.3%, 여아가 51.7%로 여아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동일연령 아동 1,000명당 학대 발생비율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1-3세 16.1%, 4-7세 13.4%, 8-11세 10.9%, 12-15세 9.3%, 16-17세 6.1%로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학대의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3세 이하의 3/4의 피해아동은 방임으로 발생한 것으로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방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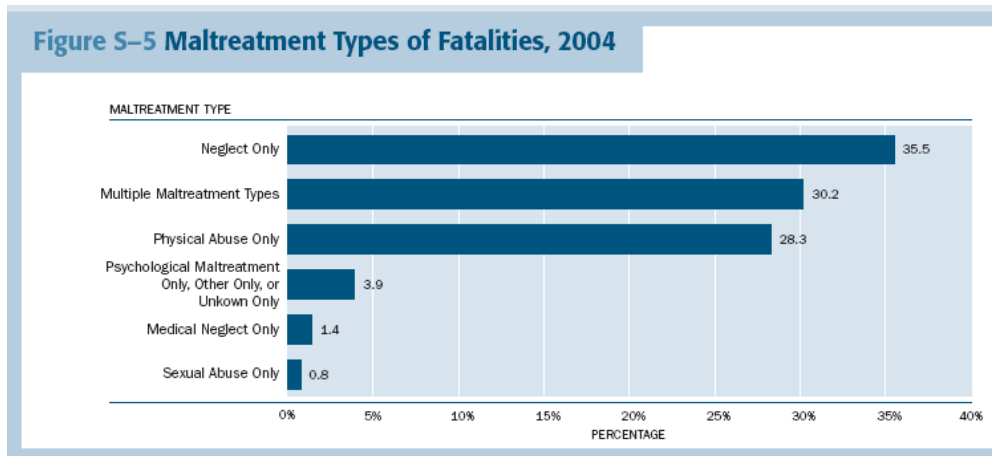
<그림 III-3> Victimization Rates by Maltreatment Type, 2000-2004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2004.

아동학대 또는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1,490명이며 이 비율은 동일연령 아동 100,000명당 2.03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 미만 45%, 1세 14.6% 2세 13.2%, 3세 3.2%로 4세 미만의 아동이 8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망률을 높았으며 특히 1세 미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 남아가 18% 여아가 17%였다. 아동의 사망과 관련되어 방임(35.3%), 복합적 학대(30.2%), 신체적학대(28.3%)가 주요한 세가지 원인이다.

<그림 III-4> Maltreatment Type of Fatalities, 2004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2004.

2) 관련 법률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은 아동보호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침, 아동보호에 관련된 정책 기반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 1973년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 의거하여 연방정부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예방, 조사, 사정, 기소 및 조치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정부에 재정적 자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신고, 조사, 법정 기록 등과 같은 정보를 통해 연방정부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일반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은 아동문제와 관련해서 가족중심적 보호서비스의 내용을 확대하며 개정되었다. 1990년에는 홈리스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보호내용을 포함하였으며, 2002년에는 가정폭력과 입양, 가족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아동가족안전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은 종전의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었던 아동학대 및 조치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2003년 재승인한 법이다. 아동가족안전법은 주정부 아동복지기관, 조사와 시험 프로그램, 가족지지와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동가족안전법은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가족안전법은 아동학대 및 예방에 대한 연구와 조사, 훈련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나 부모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연장아동에 대한 입양지원 유기된 신생아 중 약물중독 및 HIV에 감염된 신생아에 대한 우선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1) 보건 및 휴먼서비스부(Department for Health and Human Service)

미국의 아동정책에 대한 연방정부 전담부서는 보건 및 휴먼서비스(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이다. 보건 및 휴먼서비스부(DHHS)는 소득보장 및 기타 주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 및 휴먼서비스는 아동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이다.

(2)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아동가족청(ACF)는 가정, 아동, 개인,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가족청(ACF)는 다시 17개의 국로 나누어지며 아동관련업무를 주관하는 실무 부서는 아동청소년가족실(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이다.

(3) 아동청소년가족실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아동청소년가족실은 아동국(Children's Bureau)과 가출청소년, 홈리스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족청소년국(Family and Youth Service Bureau)과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드스타트국(Head Start Bureau)과 저소득층의 보육문제를 다루는 아동보육국(Child Care Bureau)이 있다.

(4) 아동국(Children's Bureau)

아동보호의 주무부서인 아동국은 각 주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들을 관할하며 각 주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한다. 그리고 주정부에는 아동보호서비스담당부서(Child Protective Service)를 두고 있으며, 이 부서에서 아동학대와 보호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아동국은 정책과(Division of Policy), 연구혁신과(Division of Data, Reserch & Innovation), 주정부체계관련과(Division of State System), 아동복지강화과(Division of Child Welfar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시행과(Division of Program Implementation)의 5개의 과(Division)와 아동학대 및 방임사무소(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국이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둘째,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액수는 주마다 다른데, 18세 미만 아동의 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아동학대 및 방임을 위해 주정부에 주어지는 예산은 약 2,200만 달러이며, 이와 별도로 1,700만달러 정도가 성학대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셋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각 주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등 실천현황을 조사하는데 2003년에 전국적인 조사가 실시

되었다. 넷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전국적인 현황보고서를 출판한다. 각 주로부터 강제적으로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주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교적 많은 주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주정부의 실천현황을 평가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연방정부차원에서 수립된 아동복지제도가 실제로 제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연방정부의 예산투입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연방정부 25명, 주정부 25명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이 평가하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 영역의 전문가, 즉 법원판사, 학교교사, 정신건강전문가 등을 평가에 참여시키며 주정부가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평가는 4년마다 실시되는데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평가된 주는 2년 후 재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매년 4월을 아동학대예방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5) 아동학대 및 방임사무소(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아동학대 및 방임사무소는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연구, 자료수집,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사무소는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아동보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특히 보호받고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을 주정부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별 주정부의 아동보호자료를 포괄하여 연장정부에서 단일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1995년 전국적 규모의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1996년에 전국 아동보호 보고서가 처음 발간되었다.

(6)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입양, 가족 서비스 법”에 따르면 학대를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정서적 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1974년에는 미국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아동학대 법률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 CAPTA)이 제정되었고 1996년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정책과 모델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가 설립되었다 (강민성, 2003; 장희승, 2002). NCCAN의 주요 기능은 첫째,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및 관리하는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아동을 포함한 학대와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기관에 대한 법률적인 대표성을 표방하는 것이고, 셋째, 24시간 긴급전화서비스, 상담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 실시 및 지원을 하며, 넷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 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상호연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학대로 의심되는 모든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다분야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여섯째,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 의료, 정신 보건 전문가 및 학교 교원을 교육하며, 일곱째,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조직 및 기관들 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것이다(민덕준, 2001). 현재는 보건복지부 (DHHS) 산하의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가 이를 전담하고 있으며, 그전의 주요 기능들에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써 가족교육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양영임,우남희, 2005).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 Abuse and Neglect Information에서는 약 35명의 직원이 ①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연구, 재구성하여 Children’s Bureau, 전문가, 일반인에게 보

급하며 ②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자료를 소장 및 관리하고 ③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데이트 한다. 또한 NCCAN에서 수행하던 매뉴얼 개발 업무가 NCCAN 폐쇄와 함께 Clearinghouse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문가 및 관련 지역사회 전문가(의사, 교사 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아동복지분야의 실천가, 법과 관련된 전문가, 그 밖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Technical Advisory Group(TAG)에 의해 매뉴얼의 주제가 추천되며, 최종적으로 Children's Bureau에서 결정된다. 매뉴얼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Clearinghouse의 직원에 의해 집필되는데, 매뉴얼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자, Resource Center, 법원, 지역사회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개발된 매뉴얼은 Clearinghouse의 웹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해 보급된다. Clearinghouse에서 발간되는 매뉴얼로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육자의 역할', 'CPS Worker를 위한 가이드'등이 있으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계속해서 개발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7)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 :CPS)

아동보호서비스는 현재 미국의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공공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의 아동보호제도는 각 카운티의 사회복지부 아동복지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부서는 크게 1) 아동학대 조사과 2) 아동보호 서비스과 3) 위탁가정과로 나누어져 있다(김형모, 2000). 또한 신고의무자를 지정하여 아동과 접촉이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 즉 교사, 보육사, 부모,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상담가등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 제도는 미국의 독특한 제도로써 아동 관련 전문인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지식과 인식의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다

고 볼 수 있다(양영임,우남희, 2005).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⁵⁾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 네가지 단계를 거친다. 학대 및 방임 아동은 주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와 지역사회 민간기관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호받는다.

(1) 신고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아동학대와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조기 개입을 위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상대하는 모든 전문가들, 즉, 의사 및 병원종사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시설 종사자, 교사와 교육기관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법률상담관련자 등이 신고의무를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고는 주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핫라인이나 경찰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신상정보, 학대나 방임의 의심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의무가 있는 전문가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거나 아동에게 야기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각한 상해나 위험을 내포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에 연계하여 형사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사 등 업무담당자는 법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원가정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임시 보호조치를 위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5) 「박세경외(2006). OECD국가와 한국의 보호체계비교연구」 중에서 제4장 1절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쟁점’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조사와 사정

신고사례를 접수하여 조사와 사정에 들어가는 과정은 주정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부 주정부에서는 신고접수와 조사를 같이 담당하는가 하면, 다른 주정부에서는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형사기소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사와 경찰이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신고된 아동이 미성년이 아니거나, 신고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학대의 내용이 주정부의 법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볼 때 신고 내용의 40%정도만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데, 이는 모호한 법규정이나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미비한 조사, 불충분한 신고내용 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고 후 조사에 착수하는 기간과 조사결과 이후 보호조치 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주법률이나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다. 대체로 신고 후 24~48시간 이내에 조사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신고접수 후 30~90일 이내에 조사결과와 보호조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 착수에 대한 규정은 아동학대의 유형과 긴급성에 따라 주정부마다 차별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신고 접수 및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업무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름, 연령, 학대상황의 정도, 원인, 성격 등의 내용과 더불어 가정 내 다른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매뉴얼은 조사자들이 아동이 처한 위험의 정도, 임시 보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사례를 법정에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사례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법정으로 인계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심각한 신체적, 성적학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년법정으로 사건이 인계된다. 또한 부모가 협조적이

지 않거나, 아동학대를 반복하거나, 결정된 치료 및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사건을 인계하게 된다.

(3) 보호조치 결정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은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 보호서비스인 가정위탁, 그룹홈, 입양 시설보호를 할 것인지 결정된다.

(4)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족과 아동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동학대예방및조치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바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인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및 심리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가해자인 부모나 양육자에 대해서는 상담, 약물중독 치료, 심리 치료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들은 아동이 대안적인 보호를 받는 대신 원래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 사례가 종결될 때 더 강조되어야 한다.

5) 미국의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미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수립에도 상당히 참고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려는 차원의 접근과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을 가족 외에 배치하기 보다는 가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접근이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2003년 아동학대예방및치료법안(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아동가정안전법(Keeping Children annd Families Safe Act)으로 개정된 배경을 통해서도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가 기존의 아동보호중심에서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전한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양육환경의 안전성 보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의 안전보장을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 아래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보존형태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족서비스 중심의 아동보호체계가 기존의 아동보호중심의 서비스의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영국의 방임아동 보호체계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

영국의 아동학대 업무 협력기관 지침인 ‘Working Together’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을 잘못 다루는 것이며, 해(harm)를 가하는 것이나 위협의 방지에 실패하는 것도 아동학대와 방임에 포함된다. 아동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학대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처음 보는 사람에 의해서 학대된다.

신체학대는 때리기, 흔들기, 던지기, 음독, 화상, 익사, 질식 등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해를 입히는 원인과 관련된다.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발달과 연령이 고려되지 않은 부적절한 기대 또는 과보호, 사회적 상호작용의 금지, 학습의 제한 등이다. 성학대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매춘을 포함하여 성적행동에 참여하도록 유혹하고 강요하는 것과 관련 있다. 성적행동은 신체 접촉(강간, 구강섹스 등)과 비신체접촉(온라인 이미지) 모두 포함된다.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육체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며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손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음식, 의복, 주거를 공급(집에서 추방 또는 유기 포함), 신체적 정서적 해 또는 위협으로부터 보호, 적절한 수퍼비전, 적절한 의료적 보호와 치료에 실패하는 것이다. 아동의 기본 정서적 욕구에 대한 무관심, 무책임성과 임신 중 약물중독도 방임에 포함된다.

법적 권한을 가진 영국의 대표적 민간기관인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Cruelty to Childre: NSPCC)에서는 아동학대를 아동들에게 필요 없거나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부당하게 안겨주는 모든 처치 또는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생명, 신체의 부분에 해가

오거나 희생이 강요되는 행위 및 도덕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행위, 아동의 생명연장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의식주의 해결 및 양육환경의 제공을 소홀히 하는 행위, 무리한 시간대나 날씨에 아동들을 부적절한 상해행위의 목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의 취업이 부적합하여 인격적인 손상, 불법 또는 부도덕하다고 규정될 수 있는 행위, 아동의 신체적 능력에 과다하게 부담이 되는 중노동, 또는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그리고 아동들을 구걸 행각에 내보내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박세경 외, 2005).

(2) 아동학대 및 방임 현황

영국의 교육기술부는 아동보호등록제(Child Protection Registers)에 등록된 요보호아동에 대해 매년 공식적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의 아동보호등록제에 등록된 아동은 25,900명으로 아동 1만명당 23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방임이 40%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로 나타났다. 2005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방임이 중복학대는 1,320명(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정서학대가 5,700명(19%), 신체학대가 5,500명(1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아동 1만명당 발생비율로 보면 방임은 10명, 신체학대는 4명, 성학대는 2명, 정서학대는 5명, 중복학대는 3명이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Ⅲ-1> 연도별 학대유형

단위: 명(%)

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방임	12,900(48)	10,100(39)	10,600(40)	11,000(42)	11,400(44)
신체학대	7,300(27)	4,200(16)	4,300(16)	4,100(15)	3,900(15)
성학대	4,500(17)	2,800(11)	2,700(10)	2,500(9)	2,400(9)
정서학대	4,800(18)	4,500(18)	5,000(19)	5,100(20)	5,200(20)
working together 구분이 적용되지 않음	440(2)	-	-	-	-
구분할 수 없음	80(0)	-	-	-	-
중복/working together 구분되지 않음	-	4,100(16)	4,000(15)	3,600(14)	3,000(12)

출처: DfES(2006). Statistics of Education: Referrals, Assessments and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Child Protection Registers: Year Ending 31 March 2005.

2) 아동법 (Children Act)

영국은 분산되어 있던 아동관련 법률을 한 곳에 모아 1989년 아동법을 제정하였다. 1989년 아동법은 제정 당시 현 시대의 가장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아동보호입법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재까지 아동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오정수, 이혜원, 정익중, 2005). 이전의 법에서는 아동의 보호특성 등에 대해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아동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법 안에 형법과 민법의 성격이 통합되었고 아동의 보호, 위탁, 입양 등 다양한 아동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의 아동복지,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아동법이다. 아동법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반영하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아동과 가족복지를 성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과, 아동은 가족에 의해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0년 빅토리아 클림비에(Victoria Climbie) 학대 사망사건으로 2001년 라밍경(Lord Lamming)이 이끄는 연구조사팀이 발족하여 아동복지전반에 걸쳐 영국 아동복지법을 검증하였다. 2003년 영국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이 발견되어 2004년 아동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개정 아동법은 2003년에 출판된 The Green Paper Every Child Matters Change for Children(2003)이 제안한 아동관련 서비스 개혁을 법제화 하였다. 동 법령은 모든 아동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도 아동이 필요로 하는 건강, 안전 교육, 사회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경제적 복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동 법령의 개정으로 아동과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쉽게 위의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한층 쉽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전문가와 교육 담당자들이 서로 공조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기관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책임에 우선권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 2006).

2004년 개정된 아동법은 아동학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의 보호시스템의 가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 잉글랜드에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를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아동보호국(The 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LSCB)을 설치하도록 하였다(DFES, The Children Act 2004). 이는 갑작스런 아동사망의 경우, 사망원인을 밝혀내도록 검시집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와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 2006).

개정된 아동법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동커미셔너의 임명이다. 아동커미셔너는 아동권리를 모니터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아동커미셔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ww.childrenscommissioner.org).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증진한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높은 우선권을 두어 아동에 대한 태도를 증진한다.
- 아동권리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법과 정책에 영향을 준다.
- 모든 수준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효과적인 조력을 한다.
- 아동을 위한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증진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의 관점을 존중하도록 한다.
- 아동권리 침해 고발절차 및 기타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를 증진한다.
- 아동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출판하고 정부도 아동에 대한 적절한 자료를 수집, 출판하도록 촉구한다.

개정된 아동법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6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아동 커미셔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부는 잉글랜드의 아동서비스, 지역아동보호위원회, 지역당국행정, 아동서비스의 감독으로 구성된다. 3부는 웨일즈의 아동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적 개요와, 지역아동보호위원회를 포함하며, 4부는 가사 소송을 위한 후견인과 지지 서비스와 양도를 명시하였다. 5부는 사적 위탁과 아동보육, 지역당국서비스, 다른 조항으로 구성되며 6부는 일반적 개요를 포함한다.

<표Ⅲ-2> 2004년 개정 아동법 개요

1부 아동커미셔너		1. 설립 2. 일반 기능 3. 커미셔너의 청문회 제안 4. 커미셔너의 청문회 개최 5. 웨일즈 커미셔너의 기능 6. 스코트랜드 커미셔너의 기능 7. 북아일랜드 커미셔너의 기능 8. 연례 보고서 9.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시설이용자와 청소년
2부 잉글랜드 아동 서비스	일반	10. Well-being 향상을 위한 협력 11. 복지 증진과 보장을 위한 배치 12. 정보 데이터
	지역아동보호국 (LSCBs)	13. LSCBs의 설립 14. LSCBs의 기증과 절차 15. LSCBs의 재정 16. LSCBs: 부칙
	지역당국행정	17. 아동과 청소년 계획 18. 아동 서비스의 감독관(director) 19. 아동 서비스를 위한 지도원(Lead member)
	아동서비스 감사	20. 공동지역재조사(Joint area reviews) 21. 구성체제(framework) 22. 협동과 대표 23. 20-22항 해석 24. 사회서비스 성과 비율
3부. 웨일즈 아동서비스	일반사항	25. Well-being 향상을 위한 협력:웨일즈 26. 아동과 청소년 계획:웨일즈 27. 25항과 26항에 속하는 기능을 위한 책임 28. 복지 증진과 보자를 위한 배치:웨일즈 29. 정보 데이터베이스: 웨일즈 30. 이 부분에 속하는 기능의 감사
	지역아동 보호국(LSCBs)	31. 웨일즈 LSCBs의 설립 32. 웨일즈의 LSCBs의 기능과 절차 33. 웨일즈의 LSCBs의 재정 34. 웨일즈의 LSCBs:부칙
4부. 가사소송을 위한	웨일즈의 CAFCASS의	35. 가사소송과 관련된 의회의 기능 36. 의회의 부수적 권한

자문 및 지지 서비스	기능	37. 웨일즈의 가사소송 사무소 38. 감사 39. 아동의 보호 40. 가사소송을 위한 자문 및 지지 서비스:부칙 41. 정보의 공유
	이동	42. CAFCASS에서 의회로의 재산의 이동 43. CAFCASS에서 의회로 직원의 이동
5부. 잡칙 (miscellaneous)	사적 위탁	44. 공고 계획(scheme) 수정 45. 잉글랜드에서 등록 계획 설립 권한 46. 웨일즈에서 등록 계획 설립 권한 47. 45항과 46항의 권한 파기
	아동양육과 보육	48. 아동양육과 보육
	지역당국 서비스	49. 위탁부모에 대한 지불 50. 개입 51. 지방교육당국의 감사 52. 교육성취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당국의 의무 53. 아동의 바램(Wished) 규명 54. 아동에 대한 정보 55. 사회서비스 위원회 56. 사회서비스 기능
6부. 일반사항	다른 조항들	57. 입양검토 패널 구성원들에 대한 지급되는 비용 58. 합리적 처벌 59. 재정적 보조를 주는 권한 60. 아동 안전 명령 61. 웨일즈를 위한 아동 커미셔너: 가입권한 62. 법률소송과 관련된 책의 출판 63. 국내 수입에 의한 정보의 발표
		64. 폐지 65. 해석 66. 규제와 명령 67. 착수(commencement) 68. 만료 69. 간단 표제(short title)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1)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

아동학대 및 방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H)이다. 보건부는(DH)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담당하는 하위 부서로 사회복지감독청(Social Service Inspectorate: SSI)과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 HCSU)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감독청(SSSI)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SSD)을 지도 및 감독하며, 아동안전국(HCSU)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부(DH)는 아동보호와 같은 사회보호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제공하며 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자질향상과 아동보호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보건부는 1986년 설립된 아동학대 관련 중앙연수원을 두고 있다. 연수원에서는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이해,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훈련한다.

(2) 사회복지감독청(Social Service Inspectorate: SSI)

사회복지감독청(SSSI)은 9개의 지역사무소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법적 책임 이행과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당국의 이행실태 및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복지감독청(SSSI)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본정책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SSD)에 전달되며 세부내용의 적용은 지방정부의 특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3)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 HCSU)

아동안전국(HCSU)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질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아동안전국(HCSU)은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중앙정부차원의 기구로

내무부(Home Office: HO)와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ES)내에 있는 아동학대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아동안전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경찰,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는 협력기관에 대한 협력지침(Working Together)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이 지침의 세부내용에는 학대예방 및 방임에 대한 교육, 특별한 상황에서의 아동보호, 공동협력에서의 중요원칙, 관련분야간의 교육과 개발, 아동관련 업무자의 교육이 포함된다(박세경 외, 2006).

‘Working Together’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방법
- 연구 및 경험에 의한 몇몇 교훈들
- 아동보호와 관련된 각 분야의 역할
-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의 역할과 책임, 활동
- 특별한 상황에서의 아동보호
- 공공협력에서의 중요한 원칙
- 관련분야 상호간의 교육과 개발

(4)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

지방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국(SSD)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국은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에 의해 설립되며, 아동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정신보건 사업, 소득보존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서비스국(SSD)은 아동보호사업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의 피해아동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과 정보제공,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 사례회의 참여, 아동격리보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 ACPC)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는 1970년대에 조직되어 지역사회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실무를 맡고 있는 지역단체이다. 지역아동위원회(ACPC)는 사회서비스국(SSD) 소속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경찰 등 그 지역의 아동 관련전문가로 구성된다. 지역아동위원회(ACPC)의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보건부(DH) 소속 중앙아동학대관련 중앙연수원에서 전문연수를 받는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는 보호조치에 대해 권고하고, 법원의 보호명령신청 여부와 아동보호등록(Child Protection Register)의 등재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4).

-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회의 실시
- 지역의 아동보호정책과 진행절차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아동학대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 및 발전방안 논의
-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평가
-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 아동보호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 연례보고서 작성
- 아동보호와 관련된 경험 및 정보 공유
- 다양한 서비스들과 전문그룹간의 효과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격려

(6)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Cruelty to Childre: NSPCC)

아동보호를 위한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

(NSPCC)가 있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아동학대사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아동을 격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간기관이다. 그러나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부모로부터의 격리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SPCC)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Help-line)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와 권리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사례에 개입하여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실무자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교육 및 훈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 기타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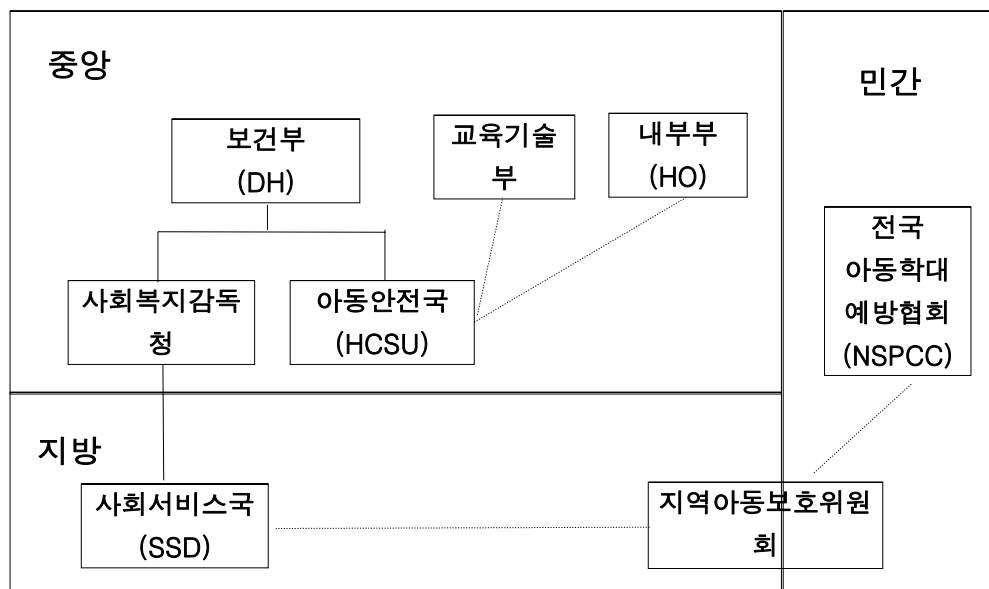
아동학대 초기 조사 시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경찰의 경우 43개의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구청별 지역방문간호사제도가 운영되어 의료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아동의 격리보호 조치의 승인과, 학대를 확인하는 의료적 검사에 대한 승인을 맡고 있다.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되어 아동법에 의하여 내려질 수 있는 법원의 사법상 조치는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아동평가명령, 아동의 거주지를 결정하는 거주명령, 아동이 누구와 몇 번 또는 어느 정도 만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접촉명령,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특정한 일을 하도록 부과하는 특별과제명령, 다른 사람들이 아동에 접촉하지 못하게 하거나 학교 및 특정장소에서 데려갈 수 없도록 하는 금지명령, 폭력이나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이나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 등이 있다. 공법상 조치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인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는 법원에 보호명령 또는

감독명령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 등이 보호조치가 합리적 보호방안이 되는지를 ‘아동의 복지수준 확인목록’에 따라 점검한 후에 명령을 내리게 된다. 보호명령이 부과되면 지방정부가 친권자의 책임을 공유하게 되며, 지방정부는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의 친권책임을 어느 정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감독명령이 부과되면 사회복지사인 감독자는 아동을 정기적으로 만나 평가하고 특정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거나 조언하고 아동과 친구가 되어줄 의무를 지게 되며 아동의 주소를 알아 항상 적절한 접촉을 하게 된다. 이들 명령은 법원의 심리가 오래 지속될 경우 약 8주간의 임시명령으로 우선 부과될 수 있다(박세경 외, 2006).

<그림 III-5> 영국의 아동관련 부서 및 단체



4) 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서비스 절차⁶⁾

영국은 전국학대예방협회(NSPCC)나 지방정부 등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전화를 받는다. 영국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사태가 신고되어 접수되면 현장조사는 지방 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된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사례회의를 통해 현재 아동이 처해있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전시키며, 사례담당자를 결정한다. 또한 아동보호등록대장(Child Protection Register)에 아동을 보호아동으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개입 과정에서 아동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 더 이상 개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아동등록 파일을 삭제한다.

아동보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보호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록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의 효력은 아동관련 전문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긴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히 아동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수용보호하고 있는 아동 및 그의 보호자는 조치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불복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는 긴급보호명령이나 아동평가명령을 신청하여 아동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부모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 아동은 부모로부터 격리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Social Service Department)과 경찰, 아동학대예방협회(NSPCC)에게 있다. 아동을 격리할 때 긴급 아동학대사태인 경우에는 경찰이 임의로 분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72시간내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가

6) 「박세경외(2006). OECD국가와 한국의 보호체계비교연구」 중에서 제4장 2절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쟁점’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능하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실시하는 의료적 검사도 판사의 승인 후 실시되는데, 여러 기관에서 아동을 여러 번 검사할 경우 그 자체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번만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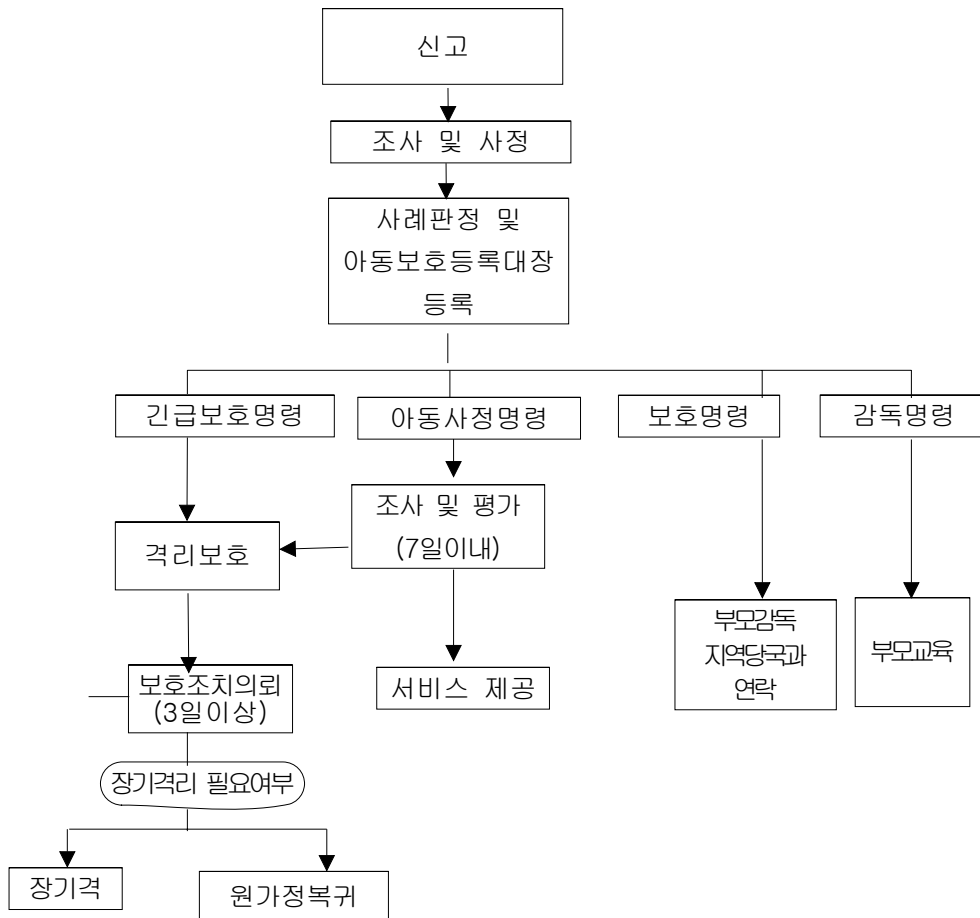
아동안전국(HCSU)의 협력지침(Working Together)에 근거하여 학대아동의 보호는 지방정부와 가정재판소 판사를 통하여 긴급보호명령, 아동사정명령, 보호명령, 감독명령을 받아 이루어진다. 첫째, 긴급보호명령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안전명령으로 아동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다고 믿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방정부와 전국 아동학대예방협회(NSPCC)가 신청한다. 둘째, 아동사정명령은 긴급보호명령과 같은 긴급 상황은 아니나 아동의 학대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충분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 보호명령은 지방정부는 부모와 보호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당국은 양육인이 법적인 지위를 잘 숙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역당국과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숙지시켜야한다. 일단 보호명령이 내려지면 지역당국은 권한행사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아동이 18세될 때까지 지속된다. 넷째, 감독명령은 감독명령은 아동 뿐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보호자 역할 수행인에게 요구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시간동안 지정된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동이 주기적으로 가족지원센터(Family Center)를 방문하는 것, 치료에 참여하는 것 등이 있고, 보호자에게는 아동이 앞에 열거된 것들을 잘 따르고 있는지, 부모와 아동이 정기적으로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감독 명령하에 이루어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은 많은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감독명령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동 소멸된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은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장기보호가 결정되어 아동이 원가정에서 격리보호 되더라도 지역아동보호위원회(ACPC)는 아동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부모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보호기간 동안의 모든

보호내용과 상담에 대해서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진 출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정으로부터 아동분리는 가능한 일시적이어야 하며 신속한 가정복귀를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요보호 아동의 대부분은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며 나머지 아동들은 지역사회시설, 자원봉사자 가정,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 위탁가정에 배치된다.

<그림 III-6> 영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달체계



5)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시사점

최근 영국의 아동정책과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아동법의 개정이다. 아동법은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을 잘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의 실천에 초점을 둔 아동법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영국의 아동정책과 제도의 기반인 아동법은 UN 아동권리협약의 의미를 반영하고 아동의 권리보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에 아동법은 최근의 방임으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법은 아동보호체계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제로 아동학대보호기관과 법률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의 네트워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지침인 Working Together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제하는 제도가 발달된 나라이다. 개정된 영국의 아동법에서 주목할 것은 아동커미셔너의 임명과 그 업무의 내용이다. 아동커미셔너에 대해서는 Children Act 2004 part1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커미셔너는 아동권리 관련 문제에 대하여, 사법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사법적 권한을 부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관련 법과 정책에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0월 24일 우리나라에서도 옴부즈퍼슨을 임명하였는데, 영국의 아동커미셔너의 모델은 아직 초보적 수준의 옴부즈퍼슨제도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의 아동보호체계

1) 아동학대 및 방임의 개념 및 현황

(1) 개념

아동학대방지법 제2조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방임은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후견인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 하는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①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생기고,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일, ②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일, ③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불충분한 섭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그 외의 보호자로서의 감독 보호를 현저하게 태만하는 경우, ④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아동과 함께 하는 보호자 외의 사람에 의한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에 대한 묵인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아동에게 배우자에 대한 폭언·폭행 장면을 노출시키는 것도 아동에게 간접적 상해를 주는 행위로서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상처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을 학대로 간주하는 등 아동학대의 범주를 확대하였다.

(2) 현황

2005년 전국의 아동상담소가 처리한 아동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34,372건으로, 통계를 시작한 1991년의 약 30배,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전의 2000년과 비교하여 3배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10월 개정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신고대상의 범위를 학대를 받은 아동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으로 확대한 것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증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Ⅲ-3> 학대에 관한 상담처리 건수의 추이

년도	1990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수	1,101	4,102	17,725	23,274	23,738	26,569	33,480	34,472

출처: 후생성 보고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체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약 50%를 차지하던 신체학대의 비율은 2005년 약 43%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심리적 학대는 발생건수와 비율 모두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이후 신체적 학대에 집중되었던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에서 방임은 35%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여 신체학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의 사례가 계속해서 기사화됨에 따라 아동방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표Ⅲ-4> 아동학대 유형

년도	총수	신체학대	방임,보호대만 , 무시	성학대	심리적 학대
2000	17,725(100.0)	2,692(50.1)	6,318(35.6)	754(4.3)	1,776(10.0)
2001	23,274(100.0)	10,828(46.5)	8,804(37.8)	778(3.3)	2,864(12.3)
2002	23,278(100.0)	10,932(46.1)	8,940(37.7)	820(3.5)	3,046(12.8)
2003	26,569(100.0)	12,022(45.2)	10,140(38.2)	876(3.3)	3,531(13.3)
2004	33,408(100.0)	14,881(44.6)	12,263(36.7)	1,048(3.1)	5,216(15.6)
2005	34,472(100.0)	14,712(42.7)	12,911(37.5)	1,052(3.1)	5,797(15.6)

출처: 후생성보고

2) 아동학대 및 방임관련 법률

(1) 아동학대방지등에 관한 법률

일본은 절대적 빈곤과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소유물적 아동관'에 따른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미 1933년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47년 아동학대방지법은 폐지되고 요보호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리증진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인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최근에 일본은 아동학대발생건수와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금지, 보호 등에 관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예방과 개입 등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가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아동학대방지법이 2000년 5월 제정되었다. 또한 2004년 4월 아동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더욱 포괄하여 아동학대방지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안은 일본의 2차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아동의 권리증진과 보호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전된 법안이라고 평가 받았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가 아동의 심신의 성장 및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해 아동에 대한 학대금지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 등을 정함에 따라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규정하고 아동에 대한 학대의 금지는 물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통고, 경찰관의 지원, 출입조사 등에 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방과 조기발견에서부터 아동의 자립촉진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모든 단계에서도 시도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방지법은 2004년 4월 개정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은 다

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 학대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을 계기로 2003년 아동상담소의 학대상담건수는 26,569건으로 10년 전의 1993년과 비교해서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각지의 아동상담소의 학대상담건수가 급증하므로 아동상담소의 적절한 대응이 곤란에 처해 있으며, 또한 관련 아동 양호시설 등에 피학대아동의 입소가 증가하는 등 학대부모나 피학대 아동의 원조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아동학대에 관한 조치에서는 아동상담소나 경찰, 보건소, 학교 등의 연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계체제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경찰에 의한 강제개입이나 사법기관의 관여를 포함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넷째, 아동학대의 예방에는 초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입후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기에 아동양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역할도 지금까지의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치료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부모의 지원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다섯째, 양육지원시책의 추진과 함께 지금까지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던 학대문제가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양육지원, 양육불안대응시책으로서도 인식되게 되었다(요시다 쓰네오, 2006).

이번 법 개정은 학대가 판명되었는데도, 각 기관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최악의 상태로 발전한 사건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광역자치제)의 지방자치제의 책임하에, 각 관계기관의 연계 강화 추진을 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정의는 ‘보호자 이외의 동거자’에 의한 신체학대와 성학대, 방임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것을 저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시켰다. 또한 심리적 학대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 환경 노출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의무의 대상을 ‘학대받은 아동’에서 ‘학대의심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의 신고접수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비중을 두었으며 신고 후의 신속한 아동의 안전 확인을 명시하였다. 아동상담센터장과 각 지방지사는 지역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학대로 학업이 뒤떨어진 아동이나 상위단계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시도정부는 지원조치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표 Ⅲ-5>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내용

조항	제목	내용
2조	아 동 학 대 의 정의	보호자 이외 동거인에 의한 학대를 보호자가 방치하는 일. 또는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4조	국 가 또는 지 방 자 치 단체의 책 무	① 아동학대의 예방 또는 조기발견과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자립까지 이 모든 단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의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는 아동학대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연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케어와 함께 보호자의 지도, 지원의 설정과 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조사연구 및 검증을 해야 한다.
5조	아 동 학 대 조 기 발 견 등	① 아동복지에 관련하는 단체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①의 단체 및 아동복지에 직무상 관계있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해야만 한다. ③ 학교 또는 아동복지시설은 아동 및 보호자를 상대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개몽을 위해 노력하여야만 한다.
6조	아 동 학 대 에 관 계 되 는 신고(통 고)의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10조	경 찰 청 장 에 게 원 조 요청	① 아동상담소 소장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아동의 안전 확인 및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원조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①의 원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소속경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복지법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률이다. 아동복지법은 1947년 12월에 제정된 이래 계속해서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04년 11월 개정되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을 기본으로 특별법인 아동부양수당법, 특별 아동부양수당 지급법, 모자 및 과부 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수당법이 있으며 이들을 '아동복지6법'이라고 부른다.

아동복지법은 총208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원칙, 정의, 아동복지심의회, 실시기관, 아동복지사, 아동위원, 보육사), 제2장(급여 아동보육·의료급여, 재가생활지원, 모자생활지원, 요보호아동조치, 잡칙), 제3장 아동복지시설, 제4장 비용,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오정수, 이해원, 정익중, 2005).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내용은 아동복지의 개념(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권한(8조), 아동복지상담소의 설치 및 직무(12조), 아동위원(18조), 요보호아동에 관한 조치(25조-33조), 금지행위(34조) 등이 있다.

3)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행정체계

일본의 아동복지행정은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도도부현, 지정도시)기초지방정부(시·정·촌) 수준의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다.

(1) 후생노동성

일본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기구는 후생노동성이다.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 평등고용, 아동·가족국, 총무부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2) 학대방지대책국

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이 아동학대 대응조치 계획과 초안을 구성하는 책임을 갖고 있으며, 개별 현이나 지정도시의 아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에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가족과 문제를 논의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위해 각 지방자치정부는 학대방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단체들이 정보를 나누고 관계 아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절히 협조하도록 한다.

(3) 아동상담소(도도부현)

일본의 아동학대보호기관의 활동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에 기초한 행정기관으로서 각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중핵시 등 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에도 아동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6년 4월 시행). 아동상담소는 가정 등으로부터 아동문제에 관한 상담의뢰를 받아 보다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의 복지와 권리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로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요보호아동의 신고를 접수한다.

아동상담소의 운영의 근간이 된 아동상담소 운영지침은 1990년에 발간되어,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의 급증 등을 감안하여 1998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또한 2000년 아동학대방지법 시행에 따라 동년 11월 아동상담소 운영지침도 개정되었고, 2004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다시 개정됨으로써 아동상담소운영지침도 재차 개정되었다.

이러한 아동상담소의 주요 업무로는 전문지식과 기술에 근거한 아동문

제에 대한 상담, 필요한 조사의 수행 및 의료적·심리적·교육적·사회적·정신보건적 판정, 조사 및 사정에 근거한 개입, 아동의 일시보호, 시설입소 등의 조치, 시·정·촌에 필요한 조언 등이 있다.

(4) 시·정·촌

시정촌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조직으로서 지역사회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2004년 1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종전의 아동상담소만이 전담하여 왔던 아동상담업무체제가 개편되었다. 즉, 시·정·촌이 지역사회의 일차적 상담창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아동상담소는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친권예외의 개입 등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례에 전담하도록 역할이 분담되었다. 이러한 시·정·촌에 아동학대의 신고 접수 등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시·정·촌의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해 필요한 실정의 파악에 노력할 것,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행할 것,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행할 것,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상담소의 기술적 원조 및 조언을 구할 것, 의학적, 심리학, 교육학적, 사회학적, 정신보건 상 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의 자문을 구할 것, 아동학대의 신고 및 접수의 역할이 있다.

시·정·촌 가운데 시의 경우는 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상담과 자녀양육지원사업등의 법정 아동복지업무는 시가 아니라 복지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은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지원내용을 협의한다.

(5) 법무성의 인권위원회

국가적인 인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

동을 비롯하여 일반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영체제로 법무성의 인권위원회가 있다. 법무성 산하 인권위원회는 아동폭력을 포함한 인권에 관한 여러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인권조직에 조사를 의뢰한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법무부 인권위원회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건과 관계된 특정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과정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준다.

또한 시군구의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인권자원봉사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권자원봉사대 중에는 ‘아동권리보호 자원봉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임무는 아동의 권리는 보호하는 것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보호아동의 교정 및 치료 역할을 수행한다. 단, 이들 조직이 행하는 조사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박세경외, 2005).

(6) 기타 각 자치제의 아동학대추진사업

- 요코스카 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

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그결과 일본 지방자치제에서는 학대 방지와 상담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일본 지자체 중에서 요코스카 시의 아동학대사업을 살펴보겠다.

요코스카시는 동경만에 접하고 있는 카나가와켄에 속해 있는 인구 433,170명의 시이다. 카나가와켄에 속해있는 아동상담소 중에서도 요코스카시는 학대 상담건수가 390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중에서도 방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66.4%로 가장 높다. 이것은 다른 아동상담소의 방임 평균 비율인 45.6%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학대원인으로는 부모의 미성숙이 33.1%, 정신적 불안정 14.1%를 차지하여 부모관련 원인이 다른 아동상담소의 평균치보다 높은 편이다. 요코스카시는 이러한 자녀양육 불안사례에

서 심각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의 학대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요코스카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하고 기능을 강화하였다.

요코스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보호자, 관계자, 관계기관의 상담과 지원, 지역주민의 인식 증진활동을 위해 상담과 교육,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요코스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아동상담소에서 전담하고 있던 아동학대 상담창구의 기능이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센터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요코스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2005년부터 아동학대 신고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해 조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학대는 아동상담소와 연계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의 하나로 아동의 긴급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로 아동은 보호자 동의에 의하여 6일간 무료로 시립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의해서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이다.

요코스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비교적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요코스카시 아동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기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가족지원과 관계기관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학대방지 네트워크외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아동학대관련 종사자의 연수를 개최한다. 학대는 단순하고 일시적 지원으로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방임의 경우는 문제의 개선이 더욱 어려우므로 연대기관과 직원들의 연수는 중요하다.

요코스카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보호자의 상담과 교육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보호자와 가족 그리고 관계기관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또한 한달에 2회씩 육아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학대가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라벤다'라는 그룹미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라벤다'는 비밀이 보장된 등록제도로, 보호자들이 육아에 관한 모

든 것을 안심하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대 조기 발견 및 조기 대응을 위하여, 가족이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아동학대업무로 소진된 직원들의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표Ⅲ-6> 요코스카시 아동학대 네트워크

기관	예방	발견	초기대응	원조
어린이집 .유치원	• 육아지원사업 • 육아상담 • 교류보육 • 양육자에게 조언원조	• 생활 속에서 접촉을 통한 조기발견	• 아동상담소 • 복지보건센터에 통보 • 직원회의를 통한 공유화 및 역할분담	• 복지보건센터 • 민생위원아동위원 • 주임아동위원 • 아동상담소와의 연대에 의한 피학대아동과 양육자 지원
학교	• 아동행동관찰 • 아동상담 가능한 체제	• 생활 속에서 접촉을 통한 조기발견	• 아동상담소 • 복지보건센터에 통보 • 담임등교사와의 연락	• 복지보건센터 • 민생위원아동위원 • 주임아동위원 • 아동상담소와의 연대에 의한 피학대아동과 양육자지원
의료기관	• 일반진료에서의 육아상담과 조언	• 치료를 통한 조기 발견	• 아동상담소 • 복지보건센터에 통보 • 병원 내 회의를 통한 역할분담	• 아동상담소 또는 복지보건센터와의 연계 관계에 의한 경과 관찰 • 아동의 치료
민생위원 아동위원 주임아동	• 일상활동 속에서 양육가정	• 일상상담 활동에서 조기 발견	• 아동상담소 • 복지보건센터에 통보	• 아동상담소 또는 복지보건센터와의 연계 관계에 의한 지역의

위원	- 에 대한 상담 - 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 주최 - 양육지원사업 개최		지역 안에서 민생위원, 아동위원, 주임아동위원과의 연계	대응
경찰		비행, 미아 야간배회 등을 통한조기 발견	시민, 관계기관의 통보를 통해 아동상담소, 복지보건센터에 통고	아동상담소가 가택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양육자와 강제 분리의 경우 협력
복지보건센터 (아동가정지원담당)	- 양육지원사업 안에서의 지원 - 모자건강수첩 배부 - 부모교실, 지역육아교실, 가족방문 등 가족지원 - 생활지원상담	- 각종업무를 통한 조기발견 - 아동가정지원상담 - 영유아검진 - 여성복지상담 - 생활보호 등의 상담	- 발견자로부터의 신고처리 상황파악을 위한 가정방문 - 아동상담소에 통고, 송달 - 아동상담소에 정보제공	- 신뢰관계에 의한 실태파악 -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 그 외 모자보건사업을 통한지원 - 아동상담소 관련 기관과의 역할분담에 따른 학대대응
아동상담소	- 아동학대 방지의 개몽 - 연수회개최 - 학대방지책자 배부	아동상담소에서 조기발견	- 발견자로부터의 신고처리 -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수집 - 상황파악을 위한 방문	- 신뢰관계에 의한 방문과 상담 - 관련 기관연계에 의한 아동과 가정을 원조 -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 - 분리가 장기간 필요한 경우 아동시설입

				소조치와 양부모에 위탁 • 부적합하다고 생각 될 때 가정재판소에 친권상실 신청
그 외 기관	• 구(鎭)사회복 지협의회 • 지 역 안 에 서 신 뢰 관 계 에 의 해 아 동 을 돌 보는 양 육 서비스사업			

출처 : 쇼지요코·마츠바라야스오(2006). 아동가정복지. '카나가와켄 요코하마시 아
 동학대방지핸드북' p.295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대대책사업을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 편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출장 상담회(카가와켄)
- 아동학대 방지 전문 본부를 설치(오카야마켄)
- 아동학대예방, 방지 네트워크 사업(북해도삿포르시)
 - : 2000년부터 구단위의 사업 추진
- 아동학대 대응 지역 협력원을 정비(오오이타켄)
 - : 현재 515명이 시·정·촌에 배치
- 양육지원정보연락회의(시즈오카켄 하마오카동)

4)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⁷⁾

(1) 학대의 신고 및 접수

아동학대방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즉시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형법에 규정된 비밀정보의 개방금지 조항과 그밖의 면책특권이 있는 정보의 개방금지와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조항이 학대아동보고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후견인 없는 아동이나, 아동보호와 감독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견인을 둔 아동을 목격한 자는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직접 신고하거나 아동위원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를 신고의무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대 상담을 받은 후의 처리로는 조언 지도 등 면접을 통해 지도한 것이 28,070건(81.3%)으로 가장 많으며, 시설에 입소한 것이 3,621건(10%)이다(후생성 조사).

(2) 현장조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상담소는 보호자와 아도에 대한 임의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하면 관계기관 관계자도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이 조사를 통해 아동을 긴급 일시보호의 필요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의하면 가정을 직접 조사한 가택조사건수는 2003년 249건, 2004년 287건, 2005년 243건이다.

(3) 판정 및 조치

7) 「박세경외(2006). OECD국가와 한국의 보호체계비교연구」 중에서 제4장 4절 ‘일본의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및 주요쟁점’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지내는 재가지도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도록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은 27조에 따라 지방정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또는 위기 상황에 경찰서에 이관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사례에 대하여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일시보호

시설로 인도하기 전 아동들은, 아동복지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일시보호소에서 보호하거나, 경찰서에 위탁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한다. 일시보호소는 전국 113곳에 설치되어 있다(2006년 4월 현재). 이러한 일시보호는 원칙적으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아동을 학대 또는 방임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일시보호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05년 일시보호건수는 9,043건으로, 전년대비 7%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아원에 위탁하여 보호받게 한 건수가 1,362건(51.8%)으로 일시보호 위탁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 아동복지시설로 입소

아동복지법 27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인, 유아원, 아동보호기관, 인지장애아동 기관, 지적장애아동 기관, 아동보육시설, 시각, 청각, 언어장애아동 기관, 신체장애아동 기관, 심각한 신체적, 지적 장애아동 기관, 단기 정서장애아동 치료기관, 아동독립지원기관 등에 인도, 조치된다.

다. 위탁부모 또는 후견인 인도

위탁부모는 지방정부가 보호자 없는 아동이나 아동보호와 감독자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보호자와 지내는 아동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후견인은 의무교육을 마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집에 데리고 있거나 자기 집에 통원하도록 원하는 사람, 아동의 소질에 따라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를 주는 사람이다.

라. 친권박탈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가 친권은 남용하거나 아동학대와 같은 비행의 혐의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아동의 친인척, 검사, 아동상담소장 등의 신청에 의해 친권을 박탈한다. 아동복지법 제28조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그 외 보호자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시설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친권자, 미성년자의 후견인과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시설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3조의 6에서는 친권자가 아동에게 친권을 남용하거나 확실하게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는 아동상담소 소장이 친권박탈신청을 가정재판소에 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표Ⅲ-7> 시설입소조치 승인건수 및 친권박탈선고 승인건수

연도	사항	시설입소조치의 승인신청*	친권박탈선고청구**
2003년	청구건수	140	3
	승인건수	105	0
2004년	청구건수	186	4
	승인건수	147	1
2005년	청구건수	176	2
	승인건수	14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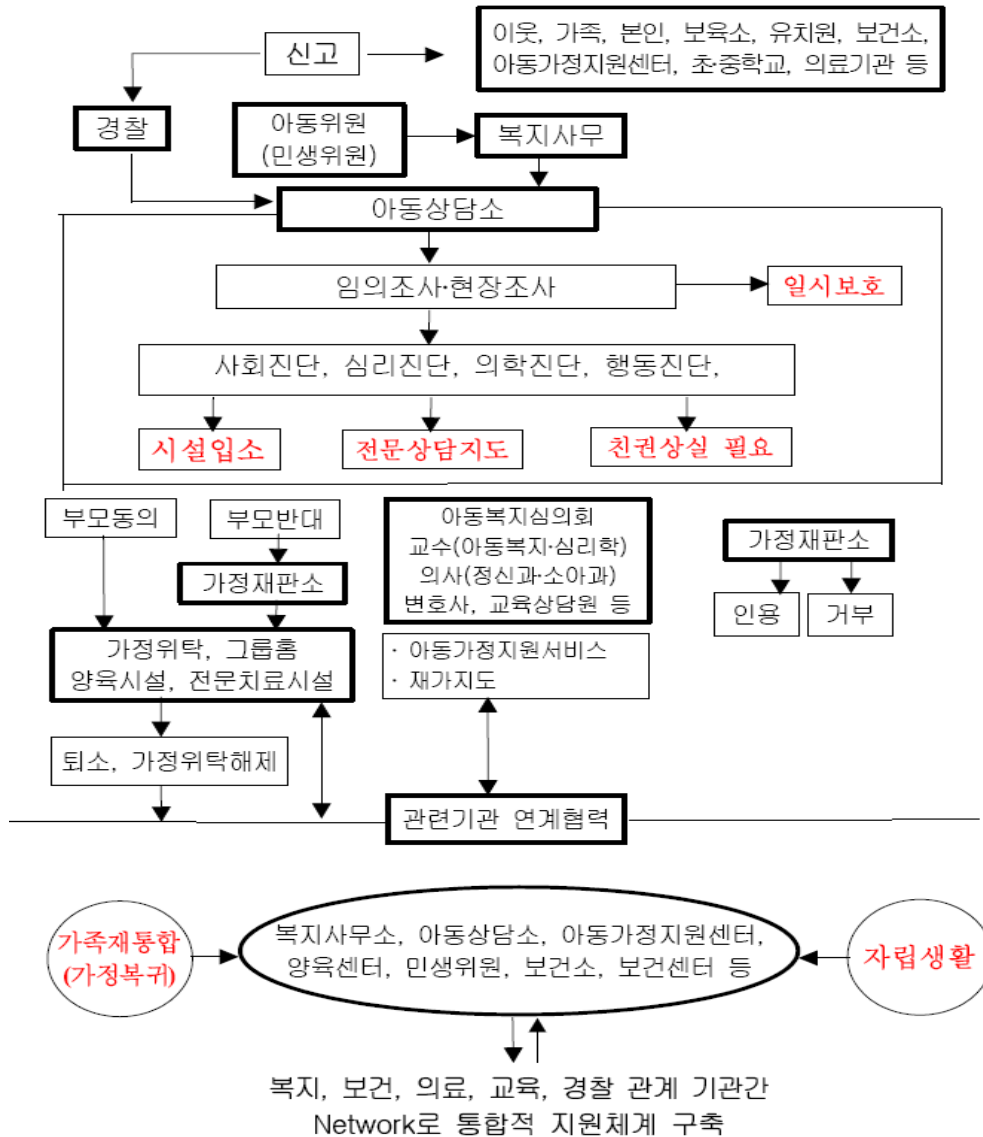
*아동복지법제28조(가정재판소승인을받아서설에인도)

**아동복지법제33조의6(가정재판소에아동상담소소장이신청하는친권박탈)

(4) 교육 및 상담

보호아동이 학업이 부족하거나 또는 상위단계의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시도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주관하여 지역정부의 교육센터에서는 폭력피해아동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림 III-7> 학대 및 방임아동 서비스 절차



출처 : 박세경외(2005). 주요 OECD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일본 아동보호체계의 시사점

우리나라가 아동학대의 개념을 법제화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던 시기와 일본의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한 시기는 비슷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및 보호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본격적으로 아동학대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현재 일본은 법과 제도 면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빠른 진보를 보여준다. 2004년 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에서 주목할 것은 아동학대개념의 확대와 신고 의무 대상의 확대이다.

최근 개정된 것은 개정 법 3조에서는 보호자 이외의 동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및 성학대, 방임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것을 저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하였다. 또한 4조에서는 심리적 학대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포함되어 가정폭력을 아동에게 목격시키는 일이나 이러한 환경에 두는 것이 아동의 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하여 이것을 심리적 학대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확대된 아동학대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폭력상황에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행동과 가정폭력 환경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을 방임에 포함시킨 것과 일치한다. 현재 아동방임을 아동의 생명과 관련되어 위급한 상황 또는 극단적 상황만을 방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간접적 위험노출과 폭력의 영향을 고려한 일본의 아동학대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개정된 아동학대방지법은 신고의무의 대상을 '학대받은 아동'에서 '학대의심아동'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확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여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친권, 보호조치의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굶어죽은 아동 사건 등에 자극을 받아 아동학대방지법을 보완하여 그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서는 관련기관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는 아동학대의 조기에방, 발

건, 재학대 예방의 역할을 하여 아동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다. 요코스카시 아동학대 네트워크에는 아동과 밀접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경찰, 복지센터, 아동상담소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예방, 발견, 초기대응, 원조로 구분하여 기관별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코스카시의 네트워크는 아동학대 관련기관의 업무연계나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요코스카시 아동학대 네트워크는 아동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고, 아동의 권리 관점에서 조직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IV. 아동방임 실태조사

1.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대상

아동방임 실태조사는 임의로 선정된 전국의 24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하였다. 임의로 선정된 서울 6개, 경기도 6개, 충청남·북도 3개 전라남·북도 4개 경상남·북도 5개의 총 24개 지역아동센터에 총 556부의 설문지가 배포되고 492부 회수되어 88.5%의 회수율을 보였다.

※ 24개 지역아동센터 리스트는 <부록1> 참조

2) 설문조사 진행 방법

(1) 예비조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번안된 다차원방임행동척도(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의 이해도, 적절성, 신뢰도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14일 ~ 8월 2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은 임의로 추출된 초등학교 14명과 부모 14명으로 조사원이 직접 만나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을 실시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2) 본조사

본 실태조사는 2006년 9월 3일 ~ 9월 10일에 실시하였다. 미리 전화로

조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조사에 동의한 24개의 지역아동센터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에게 설문 실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가 아동의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시간을 이용하여 아동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아동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 교사가 각각의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설문조사 내용

설문지는 아동에게 물리적, 정서적, 인지적, 지도감독, 환경적 방임의 경험을 묻는 문항과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친구의 문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아동의 인간관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지역아동센터 생활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조사내용

영역	조사내용
방임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인지적 방임, 지도·감독 방임, 환경적 방임
사회적 지지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친구의 문제행동
학교생활	학교생활만족도, 수업태도
아동특성 및 가정환경	연령, 성별, 형제 수, 가족형태, 경제적 수준*, 인간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 적응*

*표시는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및 교사에게 질문한 내용임.

(1) 아동방임 실태

아동방임에 관한 설문은 Straus와 그의 동료들(1995)이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다차원방임행동척도(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 MNBS)를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MNBS는 정서적(Emotional)방임 10문항, 인지적(Cognitive)방임 8문항, 지도·감독(Supervisory)방임 12문항, 물리적(physical)방임 13문항, 유기(Abandonment) 2문항, 가정폭력노출(Exposure to conflict) 3문항, 알코올(Alcohol Use) 2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거쳐 방임의 유형구분과 문항수를 수정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재, 가정폭력노출, 알코올을 환경적 방임이라 명하고 방임유형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물리적 방임(12문항), 정서적 방임(10문항), 인지적 방임(8문항), 지도·감독 방임(11문항), 환경적 방임(6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17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개항의 보기를 가진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방임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물리적 방임: 아동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위험하거나 청결하지 못한 환경에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리 아동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정서적 방임: 아동에게 애정적 표현을 하지 않거나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거나 아동의 학습성과물이나 놀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지도·감독 방임: 아동을 혼자 두거나, 양육자와 함께 있지 않는

시간에 어디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거나 체크하지 않는 것이며, 아동의 비행이나 잘못된 행위를 그냥 방치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 인지적 방임: 아동의 학습활동이나 취미·여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며, 아동과 숙제 또는 독서 등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가정환경방임: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음주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 아동방임 척도 구성

방임유형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
물리적 방임	12	6-1, 6-2, 6-3, 6-4, 6-5, 6-6, 7-1, 7-2, 7-3, 7-4, 7-5, 7-6	
정서적 방임	10	1-1, 1-2, 1-3, 1-4, 3-1, 3-3, 4-1, 4-6, 4-7	
인지적 방임	8	1-5, 1-6, 1-7, 3-2, 4-2, 4-3, 4-4, 4-5	
지도·감독 방임	11	2-1, 2-2, 2-3, 2-4, 2-5, 2-6, 3-4, 3-5, 3-6, 3-7, 3-8	
환경적 방임	6	5-1, 5-2, 5-3, 5-4, 5-5, 6-8	
총합계	47		.92

(2)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을 조사하기 위하여 허남순(2006)이 빈곤아동의 삶과 질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질문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중에서 교사의 지지(4문항)와 친구의 지지(6문항) 및 친구의 문제행동(7문항)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학교생활 중에서는 학교생활만족(3문항), 수업태도(6문항)에 관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교사의 지지, 학교생활만족과 수업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5개 항목의 보기를 가진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친구

의 지지와 친구의 문제행동은 '있다',와 '없다'로 표기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분석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방임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차이를 알아보며,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방임의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아동방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경제수준에 따라 아동방임 유형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켜 전체 연구대상은 433명이었다. 분석과정은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t 검증을 통해서 알아보았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집단간 차이를 ANOVA를 실시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아동방임 경험이 있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Ⅳ-3>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퍼센트(%)
지역	서울	96	22.2
	경기	105	24.2
	충청	52	12.0
	전라	79	18.2
	경상	101	23.3
	합 계	433	100
연령	6	22	5.1
	7	53	12.2
	8	75	17.3
	9	88	20.3
	10	86	19.9
	11	80	18.5
	12	29	6.7
	합 계	433	100
학년	1	56	12.9
	2	64	14.8
	3	85	19.6
	4	90	20.8
	5	77	17.8
	6	61	14.1
	합 계	433	100
성별	남	201	46.4
	여	231	53.3
	합 계	432	99.8
형제수	없다	46	10.6

	1명	189	43.6
	2명	104	24.0
	3명	59	13.6
	4명 이상	33	7.6
	합 계	431	99.5
가족관계	부모	248	57.3
	한부모	123	28.4
	조부모	40	9.2
	형제	10	2.3
	친척	5	1.2
	기타	3	0.7
	합 계	429	99.1
학년구분	초등학교저학년	205	47.3
	초등학교고학년	228	52.7
	합 계	433	100
학업성적	아주 못함	31	7.2
	보통이하	90	20.8
	보통	206	47.6
	보통이상	97	22.4
	합 계	424	97.9
특수교육	예	6	1.4
	아니오	415	95.8
	합 계	421	97.2
경제수준	보통	100	23.1
	저소득가정	211	48.7
	기초생활수급권가정	104	24.0
	기타	7	1.6
	합 계	422	97.5
적응수준	아주 못함	12	2.8

	보통이하	42	9.7
	보통	173	40.0
	보통이상	192	44.3
	합 계	419	96.8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Ⅳ-3>에 제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아동 중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표집된 아동들 수가 24.2%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아동들이 12%로 가장 적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여 보면 전체의 약 46%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비례수를 고려하여 아동을 표집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수도권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연령을 만나이로 조사하였는데, 연령범주는 만 6세부터 12세에 분포되어 있다. 만 6세의 경우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간 아동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의 학년을 구분하여 보면, 저학년 아동들이 205명으로 전체 47.4%를 차지하고 있고 고학년 아동들이 228명으로 전체 52.7%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의 연령과 학년별 아동수를 고려해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연령과 학년에 따라 비교적 고르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동들의 성별도 남학생이 201명으로 전체 46.4%, 여학생이 231명으로 전체 53.3%로 나타남녀 아동의 성비가 거의 비슷하게 포함되었다.

아동들의 형제관계를 살펴본 결과, 형제가 없는 아동들이 전체 10.6%, 1명인 경우가 43.6%로 자녀수가 두 명 이하인 경우가 약 54%이고 한 가정에 3명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경우도 약 44%로 나타났다.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가 57.3%로 가장 많았고 한부모 가정의 아동들이 28.4% 조부모나 형제 또는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아동들도 약 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에서 조사와 일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들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수준, 가정환경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정도 등에 관한 질문은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아동들이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그 아동에 대한 평가 문항에 응답하였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학업성적에 대해서 교사들은 아동들의 학업성적이 보통이거나 보통이상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구에서도 보통과 보통이상의 학업성적을 가진 아동들이 약 80%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교사 대부분은 아동들의 학교성적이 보통이거나 보통이상으로 다소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특수학급에 속한 경우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6명의 아동들만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들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 아동들의 적응수준을 물어보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84.3%)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보통 또는 보통이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교사들에게 질문할 결과 보통가정이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권가정이 24%로 약 73%의 아동들이 빈곤가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의 조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구에서도 수급권 가정과 저소득 가정을 포함한 빈곤가정이 전체 약 72%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약 70%는 빈곤 가정에 해당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 수와 비례하여 볼 때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고 비교적 고르게 연령과 학년 및 성별로 분포되어 있었다. 가족관계는 양부모와 형제수

가 1명인 핵가족 가정의 아동들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평가한 아동들의 학업성적과 지역아동센터 적응수준은 대부분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경제수준은 저소득가정과 수급권 가정을 포함하여 대부분 빈곤가정에 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IV-4> 아동 학교생활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36	8.3	24	5.5	107	24.7	91	21.0	172	39.7	430	99.3
나는 학교 가기가 싫다.	41	9.5	37	8.5	99	22.9	72	16.6	180	41.6	429	99.1
나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38	8.8	43	9.9	130	30.0	106	24.5	109	25.2	426	98.4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지나간다.	61	14.1	41	9.5	134	30.9	90	20.8	102	23.6	428	98.8
나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집중한다.	44	10.2	48	11.1	125	28.9	115	26.6	98	22.6	430	99.3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해간다.	19	4.4	31	7.2	110	25.4	121	27.9	147	33.9	428	98.8
나는 학교 숙제를 반드시 해 간다.	21	4.8	43	9.9	102	23.6	123	28.4	140	32.3	429	99.1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선생님 모르게 수업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다.	33	7.6	28	6.5	84	19.4	93	21.5	190	43.9	428	98.8
나는 수업시간에 즐거나 잔적이 있다.	18	4.2	21	4.8	43	9.9	58	13.4	290	67.0	430	99.3

<표 IV-4>는 아동의 학교생활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구분하여 조사

하였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약 40%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학생들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로 간주했을 때 전체 약 85%가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 42%의 아동들이 '항상 학교에 가기 싫다'라고 응답을 하여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응답을 한 아동들도 전체의 약 80%를 보이고 있어서 아동들이 학교에 만족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라고 추정하거나 학교 만족도나 충실도를 사회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비교적 높은 비율의 아동들이(약 75%) 대부분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수업시간에 대한 집중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약 80%). 그리고 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도 약 34%의 아동들이 항상 준비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제를 반드시 해 가는 아동들이 '자주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약 6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수업내용 이외의 활동을 해보지 않았다는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한 아동들이 약 44%로 나타났으며 수업시간에 졸거나 잔적이 없다고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아동들도 67%로 높게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에 만족하거나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높게 응답한 것을 고려해 보면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보고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표 IV-5>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우리 학교선생님(들)은 나를 차별 대우한다.	20	4.6	21	4.8	55	12.7	68	15.7	263	60.7	427	98.6
나는 우리 학교선생님(들)을 항상 존경한다.	36	8.3	40	9.2	89	20.6	90	20.8	172	39.7	427	98.6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44	10.2	56	12.9	80	18.5	87	20.1	161	37.2	428	98.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33	30.7	71	16.4	79	18.2	55	12.7	88	20.3	426	98.4

<표 IV-5>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교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동들은 교사들이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 61%가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아동들이 약 90%나 되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아동들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약 80%)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들도 ‘자주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가 약 55%나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선생님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약 31%의 아동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였다.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응답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의 성실성 등에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응답을 아동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모순된 현상을 보이는 것처럼,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도 모순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위에 제시된 것처럼 아동들은 항상 존경하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고

응답을 하면서 많은 교사들이 차별대우를 하고 실제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교사들은 전혀 없다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아동들이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교사에 대한 존경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강조 되는 이미지 일 수 있는데 아동들이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교사의 차별 대우 및 대화를 할 교사가 없다는 응답에는 좀 더 솔직한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표Ⅳ-6> 아동과 친구 관계

문항	있다		없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는 친구	358	82.7	69	15.9	427	98.6
나에게 조언을 주는 친구	302	69.7	125	28.9	427	98.6
내가 외로울때 나와 함께 있어주는 친구	349	80.6	77	17.8	426	98.4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친구	377	87.1	49	11.3	426	98.4
내가 하는 행동을 좋아해주는 친구	330	76.2	98	22.6	428	98.8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328	75.8	97	22.4	425	98.2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친구	25	5.8	401	92.6	426	98.4
가스나 분드, 환각제 등을 경험해본 친구	36	8.3	388	89.6	424	97.9
남의 물건을 훔쳐본 친구	102	23.6	323	74.6	425	98.2
이유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해 본 친구	88	20.3	337	77.8	425	98.2
학교를 무단결석해 본 친구	94	21.7	330	76.2	424	97.9
학교를 중퇴한 친구	47	10.9	375	86.6	422	97.5
가출해본 적이 있는 친구	53	12.2	372	85.9	425	98.2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또래 관계를 긍정적 영향을 주는 친구와 부정적 영향을 주는 친구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표Ⅳ-6>에 나타난 것처럼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담배를 피우거나 가스/본드, 환각제를 경험해 본 친구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가 없다는 비율도 거의 30%나 되었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23.6%),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하거나(20.3%), 학교를 무단결석하는 친구(21.7%)도 높게 보고되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이 초·중·고등학생임을 고려해 볼 때, 주변에 비행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경우 앞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방임의 유형별 실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방임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거의 그렇지 않다, 3=가끔 그렇다, 4=자주 그렇다, 5=항상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이 척도에서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방임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아동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물리적 방임의 결과는 <표IV-7>와 같다. 아동들은 물리적으로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에 응답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들이 잠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이불 등이 있는 경우는 약 74%가 ‘항상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의식주 등에 관계된 물리적 환경 부분에서는 크게 방임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에 의한 방임 현상은 거의 없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목욕을 하는지 양치질을 했는지 또는 예방접종이나 신체검사를 위해 의사에게 데리고 갔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5.7%, 10.6%, 10.9%로 나타난 것은 아동 위생이나 의료적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의 방임보다 아동의 위생이나 청결 등 과 연관된 물리적 환경의 방임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Ⅳ-7> 물리적 방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 트	빈도	퍼센 트	빈도	퍼센 트	빈도	퍼센 트	빈도	퍼센 트	빈도	퍼센 트
우리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23	5.3	33	7.6	116	26.8	88	20.3	168	38.8	428	98.8
날씨가 추웠을 때 우 리 집은 충분히 따뜻 하였다.	32	7.4	24	5.5	61	14.1	77	17.8	232	53.6	426	98.4
내가 잠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이불 등이 있었다.	21	4.8	14	3.2	30	6.9	43	9.9	319	73.7	427	98.6
나는 집에서 충분한 음식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었다.	30	6.9	37	8.5	91	21.0	62	14.3	207	47.8	427	98.6
야채, 과일 등 골고루 음식을 먹도록 이야기 하였다.	42	9.7	34	7.9	72	16.6	74	17.1	204	47.1	426	98.4
과자, 음료수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두 었다.	29	6.7	21	4.8	76	17.6	79	18.2	223	51.5	428	98.8
내가 목욕 또는 샤워 를 하는지 확인 하였 다.	68	15.7	23	5.3	72	16.6	70	16.2	197	45.5	430	99.3
매일 양치질을 했는지 확인하였다.	46	10.6	25	5.8	68	15.7	78	18.0	213	49.2	430	99.3
내가 따뜻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 였다.	31	7.2	24	5.5	69	15.9	77	17.8	228	52.7	429	99.1
내가 아플 때 병원이 나 약국에 함께 갔었 다.	26	6.0	25	5.8	58	13.4	58	13.4	260	60.0	427	98.6
신체검사, 예방접종을 위해 의사에게 데리고 갔다.	47	10.9	36	8.3	69	15.9	65	15.0	210	48.5	427	98.6
검진을 위해 나를 치 과에 데리고 갔었다.	43	9.9	31	7.2	77	17.8	69	15.9	208	48.0	428	98.8

한편 <표Ⅳ-8>은 아동들의 긍정적 인지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호자의 행동에 관한 질문인데 아동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아동들의 공부 및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개입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의식주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방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반대로 인지적 방임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방임 경험(‘전혀 그렇지 않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아동의 인지 발달을 위해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행동은 아동이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며(32.6%-‘항상 그렇다’) 아동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을 가장 적게 한 것(42.7%-‘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나타났다. 또한 37.6% 아동들은 보호자가 학교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들의 긍정적인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는 행동, 학교 교사와 아동의 인지행동에 대한 면담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들이 인지적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V-8> 인지적 방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였다.	76	17.6	83	19.2	129	29.8	80	18.5	56	12.9	424	97.9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94	21.7	80	18.5	122	28.2	74	17.1	54	12.5	424	97.9
나의 여가활동이나 취미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73	16.9	70	16.2	108	24.9	83	19.2	92	21.2	426	98.4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다.	163	37.6	95	21.9	119	27.5	29	6.7	25	5.8	431	99.5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데리고 갔었다.	99	22.9	71	16.4	166	38.3	48	11.1	47	10.9	431	99.5
나와 함께 책을 읽었다.	185	42.7	73	16.9	90	20.8	42	9.7	38	8.8	428	98.8
학교 숙제를 도와주었다.	94	21.7	62	14.3	124	28.6	68	15.7	82	18.9	430	99.3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할 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54	12.5	53	12.2	105	24.2	76	17.6	141	32.6	429	99.1

상당수의 아동들이 인지적 방임을 경험한 것처럼, 정서적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IV-9>.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정서적 방임 행동은 아동들의 그림을 집에 걸어놓지 않은 것이었고(36%) 그 다음으로는 아동들이 학교에서 만든 작품이나 과제물을 집에 제대로 걸어놓지 않는 행동(34.6%)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들이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지 않는 것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30.8%) 아동이 놀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놀이터나 집안에서 놀 때 발생할 수 있는 아동안전사고

에 대해서 상당수의 아동들이 방임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동들의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호자의 행동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보고된 경우는 아동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옳고 그른지에 대한 설명(29.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랑한다/예쁘다/착하다/잘한다/말잘듣는다/'고 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 보호자는 아동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아동의 그림이나 작품을 집에 걸어 놓는 등의 행동적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Ⅳ-9> 정서적 방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슬퍼할 때 기분이 좋아지도록 나를 위로해 주었다.	52	12.0	48	11.1	156	36.0	105	24.2	72	16.6	433	100.0
나에게 “사랑한다/예쁘다/착하다/잘한다/말잘듣는다”고 말해 주었다.	39	9.0	38	8.8	137	31.6	103	23.8	112	25.9	429	99.1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 주었다.	58	13.4	63	14.5	135	31.2	92	21.2	76	17.6	424	97.9
나의 행동을 칭찬해 주었다.(예: 일찍 일어났을 때, 방 정리를 했을 때 등)	59	13.6	44	10.2	130	30.0	105	24.2	94	21.7	432	99.8
내그림을 집에 걸어놓았다.	156	36.0	62	14.3	94	21.7	51	11.8	69	15.9	432	99.8
내가 학교에서 만든 작품 또는 과제물(예:그림, 만들기 작품)을 집에 걸어 놓았다.	150	34.6	63	14.5	92	21.2	59	13.6	68	15.7	432	99.8
내가 놓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131	30.3	95	21.9	117	27.0	42	9.7	46	10.6	431	99.5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바빠서 대답해주지 못하였다.	38	8.8	45	10.4	109	25.2	95	21.9	144	33.3	431	99.5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설명해 주었다.	57	13.2	62	14.3	94	21.7	89	20.6	127	29.3	429	99.1
내가 좋아하는 음식(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73	16.9	50	11.5	128	29.6	71	16.4	102	23.6	424	97.9

다음 제시된 <표Ⅳ-10>은 보호자의 지도감독 방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의 지도 감독과 관련된 문항은 아동이 혼자 집을 보거나 어딘가 혼자 갈 때 또는 등하교 지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지도감독 방임 경험은 낮선 장소에 아동들을 혼자 남겨두는 것이

며(74.8%), 그 다음 집을 비웠을 때 어른 보호자가 있는가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33.3%).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아동들은 집뿐 아니라 낯선 장소에서도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아동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경우도 약 30%의 아동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고하는 것을 보면 보호자가 아동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아동들이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 보호자의 46%가 알고 있다고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아동들이 혼자 낯선 장소에 있거나 안전하게 잘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방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 안전에 대해서 방임하고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나쁜 행동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비율이 28.4%나 되는데, 이는 방임된 아동이 향후 비행행동을 표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보호자가 아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방임할 때 아동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것과 함께 이후 비행행동을 나타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0> 지도감독 방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내가 밖에 있을 때 어느 곳에서 있는지 알고 있 었다.	71	16.4	63	14.5	93	21.5	84	19.4	121	27.9	432	99.8
방과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54	12.5	51	11.8	57	13.2	67	15.5	199	46.0	428	98.8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서 집밖에서 나 에게 전화를 하였다.	128	29.6	66	15.2	86	19.9	69	15.9	79	18.2	428	98.8
안전한 장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장소(예: 주 차장, 처음 가는 장소 등)에 나를 남겨 두었 다.	16	3.7	14	3.2	30	6.9	48	11.1	324	74.8	432	99.8
집을 비웠을 때 나를 돌 볼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144	33.3	68	15.7	81	18.7	47	10.9	91	21.0	431	99.5
나를 집에 혼자 남겨 두 었다.	41	9.5	40	9.2	134	30.9	82	18.9	130	30.0	427	98.6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관심을 가졌 다.	70	16.2	61	14.1	103	23.8	76	17.6	117	27.0	427	98.6
아침에 학교에 갔는지 확인 하였다.	97	22.4	38	8.8	46	10.6	50	11.5	199	46.0	430	99.3
내가 집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90	20.8	44	10.2	98	22.6	76	17.6	115	26.6	423	97.7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심을 가졌 다.	123	28.4	33	7.6	56	12.9	48	11.1	172	39.7	432	99.8
내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41	9.5	32	7.4	61	14.1	77	17.8	219	50.6	430	99.3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방임 유형은 보호자의 폭력적 행동이나 음주와 관련된 행동을 보이는가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표Ⅳ-11>에 제시된 것처럼, 성인 보호자가 밖에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가 44.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자의 폭력적 행동을 아동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도 58.9%(장면 노출)와 55%(소리 노출)로 높게 보고되었으며, 보호자의 음주 행동으로 인해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68.1%)와 아동의 음주 행동 목인(77.4%)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아동이 음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말리는 행동이 5.1%밖에 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아동의 음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동들이 보호자의 폭력적 행동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아동들이 보호자의 폭력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음주로 인해 아동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아동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당할 위험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1> 지도감독 방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어른들이 밖에 나가야 할 상황에서, 집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192	44.3	84	19.4	71	16.4	32	7.4	49	11.3	428	98.8
가족 중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려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보호해 주었다.	68	15.7	41	9.5	83	19.2	88	20.3	149	34.4	429	99.1
나는 집에서 어른들이 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	17	3.9	14	3.2	67	15.5	76	17.6	255	58.9	429	99.1
술에 너무 취해서 나를 보살피지 못했다.	14	3.2	14	3.2	45	10.4	60	13.9	295	68.1	428	98.8
내가 맥주나 다른 술을 마시는 것을 그냥 두었다.	22	5.1	9	2.1	20	4.6	42	9.7	335	77.4	428	98.8
나는 집에서 어른들이 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29	6.7	19	4.4	58	13.4	84	19.4	238	55.0	428	98.8

한편 본 연구결과 분석에서 아동방임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방임에 관한 질문에 ‘전혀 없다’와 ‘거의 없다’에 응답한 경우를 아동방임을 경험한 것으로(=1) 그 외는 아동방임의 경험이 없는 것(=0)으로 이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으로 아동방임의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는데 전체의 약 21%가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화정(2003)의 연구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Ⅳ-12>에 나타난 것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방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방임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12.2%로 나타나 의식주와 관련하여 물리적으로 결핍된 환경을 경험하는 아동들의 수는 전체 아동방임 수

준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인지적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약 6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호자가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들의 인지발달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서적 방임도 약 44%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같이 놀아주거나 아동의 행동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도감독방임의 경험도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자의 부재로 아동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는 요즘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지도 감독에 대한 방임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호자의 폭력적 행동이나 음주와 같은 상황 등에 관한 가정환경 방임은 약 1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식주나 보호자의 폭력 및 음주 행동과 같은 형태의 아동 방임 비율은 전체 아동방임 비율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인지적, 정서적, 지도감독방임과 같은 방임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쉽게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형태의 아동방임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으면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 유형이 심각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동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임 유형을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향후 이에 대한 아동방임 대책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V-12> 아동방임 실태

방임유형	방임경험 있음		방임경험 없음		합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물리적방임	53	12.2	362	83.6	415	95.8
인지적방임	255	58.9	149	34.4	404	93.3
정서적방임	191	44.1	216	49.9	407	94.0
지도감독방임	130	30.0	276	63.7	406	93.8
가정환경방임	56	12.9	368	85.0	424	97.9
방임전체	90	20.8	265	61.2	355	82.0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방임경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 검증 분석에 포함된 인구사회학적 변인⁸⁾은 다음과 같다.

- 성 별: 남, 여
- 학 년: 저학년(1+2+3학년), 고학년(4+5+6학년)
- 가족관계: 양부모, 양부모 이외 가족
(한부모+조부모+형제+친척+기타)
- 학업성적: 좋음(보통+보통 이상), 나쁨(보통이하+아주 못함)
- 적응수준: 지역아동센터에 적응 잘함(보통+보통이상), 지역아동센터에 적응 못함(아주 못함+보통이하)

8)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 특수교육 경험 유무는 특수교육을 받는 집단(N=6)과 받지 않는 집단(N=415)과의 사례수의 차이로 인해 t-test를 실행 할 수 없었음.

<표Ⅳ-13> 성별과 가족관계에 따른 방임경험

구분	변인	M	SD	t	P
성별	남	156.54	28.30	-3.69	p=.000
	여	167.93	29.36		
학년	저학년	161.29	30.84	-.91	p=.363
	고학년	164.14	28.06		
가족관계	양부모	168.33	29.09	4.18	p=.000
	양부모이외 가족	155.34	28.35		
학업성적	나쁨	151.09	29.04	-4.98	p=.000***
	좋음	167.84	28.14		
적응수준	적응 잘함	164.17	29.63	-1.92	p=.056
	적응 못함	154.98	27.38		

***P<.001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조사한 t 검증 결과는 <표Ⅳ-13>에 제시된 것과 같다. 통계분석 결과 성별과 가족관계 및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학년과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적응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먼저 성별의 차이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방임경험 차이를 보면,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3.67$, $p<.001$) 남아가 여아보다 아동방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관계를 양부와 양부모이외의 가족구조로 구분하여 양부모를 가진 아동들과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같이 사는 아동들의 아동방임경험을 살펴보았는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18$, $p<.001$). 본 연구결과 양부모가 모두 있는 아동들보다 양부모 이외의 가족형태인 한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친척 등과 함께 사는 아동들이 보다 빈번하게 아동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들의 학업성적에 따라 아동방임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t = -4.98, p < .001$),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들이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아동방임 경험은 학년이나 지역아동센터 적응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성별과 가족관계 및 학업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학업성적이 낮은 남아들이 아동방임을 제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방임 예방 대책을 마련할 때 가장 일차적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아동방임 고위험집단은 한부모나 조부모 및 형제/친척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학업성적이 낮은 남아라고 할 수 있다.

(4) 경제수준에 따른 유형별 아동방임

아동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집단은 보통가정, 저소득 가정, 기초생활 수급 가정⁹⁾이었으며, 아동방임의 유형을 물리적 방임, 인지적 방임, 정서적 방임, 지도감독 방임, 가정환경 방임, 아동방임 전체 경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9) 설문문항에서는 경제수준을 보통, 저소득, 수급자, 기타 네 집단으로 질문하였는데, 기타 가정에 속한 아도들의 수가 7명밖에 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표 IV-14> 경제수준에 따른 유형별 아동방임

변인	집단	M	SD	F	P	Scheffe
물리적 방임	보통	49.23	9.49	4.829	p=.162	
	저소득	46.95	9.46			
	수급자	48.10	10.68			
인지적 방임	보통	24.13	5.93	4.97	p=.007**	저소득
	저소득	21.60	6.89			ns
	수급자	22.03	6.47			ns
정서적 방임	보통	33.31	7.25	4.56	p=.011*	저소득
	저소득	30.56	8.19			ns
	수급자	30.42	6.98			ns
지도감독 방임	보통	39.32	8.11	2.15	p=.118	
	저소득	37.18	8.64			
	수급자	38.09	7.68			
가정환경 방임	보통	23.85	3.10	3.48	p=.032*	저소득
	저소득	22.64	4.07			ns
	수급자	23.02	3.49			ns
아동방임 (전체)	보통	172.80	26.54	5.989	p=.003**	저소득
	저소득	159.06	30.62			ns
	수급자	162.71	28.19			ns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표IV- 14>는 경제 수준에 따라 아동방임 경험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동방임 전체적으로 경제수준에 따라 보통 가정과 저소득가정의 아동방임 경험이 집단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F=5.989, p<.01).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의 하위유형 중에서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및 가정환경방임은 경제수준에 따른 집

단간 차이를 보였으나 물리적 방임과 지도감독방임은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지적 방임 유형은 아동의 경제 수준에 따라 보통가정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경험이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F=4.97, p<.01$), 저소득가정에서 보통가정보다 인지적 아동방임이 더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방임 유형도 보통가정과 저소득 가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4.56, p<.01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보통가정의 아동들보다 정서적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가정환경방임유형도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3.48, p<.05$),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보통가정의 아동들보다 가정환경적 방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에 나타나 것처럼, 아동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은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이 보통가정의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빈곤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수급권 가정의 경우 국가에서 생계비 보조나 보육비 면제 및 급식비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및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실질적으로 빈곤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여 아동방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책을 마련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저소득 가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아동방임 경험 유무에 따른 예측 요인

<표 IV-15> 아동방임 예측 요인

변수명		Model 1		Model 2	
		회귀계수	Odds Ratio	회귀계수	Odds Ratio
가족변인	상수	.820	2.271	9.319	11151.238
	연령	-.179*	.836	-.220	.803
	성별더미	.608*	1.838	.009	1.009
	형제수 더미1	-.850	.428	-.718	.488
	형제수 더미2	-.178	.837	.020	1.020
	형제수 더미3	-.465	.638	-.327	.721
	가족관계 더미1	-.538	.584	-.183	.833
	가족관계 더미2	-.102	.903	-.103	.902
	가족관계 더미3	-.161	.851	-.323	.724
	경제수준 더미1	-.749	.473	-.567	.567
	경제수준 더미2	.321	1.379	.344	1.411
학교환경변인	학년더미			.156	1.169
	적응수준			-.179	.836
	학교생활			-.160***	.852
	교사관계			-.165***	.848
	학업성적			-.084	.919
	센터이용시간			-.010	.990
Nagelkerke R-제곱		.111		.385	
Model Chi-square		24.708**		70.596***	

** p<.01 *** p<.001

아동들의 방임경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가족변인들과 학교환경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IV-15>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가족변인을 예측요인으로 모델 1을, 가족변인과 학교환경 변인을 함께 예측요인으로 설정하여 모델 2를 분석 모형으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아동방임 경험 유무를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방임 경험 집단을 1로, 아동방임 경험이 없는 집단을 0으로 설정하였다. 아동방임 경험을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 중에서 명목척도로 측정된 성별, 형제수, 가족관계, 경제수준, 학년은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먼저 모델 1에서는 가족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아동방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전체 독립변수 중에서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성별 변수와 연령변수로 나타났다. 성별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남아와 여아들을 비교하여 아동방임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여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고 Odd Ratio가 1.838이므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아동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1.838배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 연령 변수는 회귀계수가 -.179이고 Odd Ration가 .836이므로 아동들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아동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836배 더 많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방임을 예측하는 가족변인 중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별만 아동방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예방 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할 위험집단이 연령이 낮은 남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델 2에서는 가족변인들과 학교환경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영향변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표IV-16>에 제시된 것처럼, 모델 2에서는 가족변인들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 변인 중에서 학교생활과 교사관계가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학교생활 변인은 회귀계수가 -.160이고 Odd Ratio가 .852이므로,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852배 만큼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 변인의 회귀계수가 -.165이고 Odd

Ration가 .848이므로 교사들과의 관계가 부정적일 수록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84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들을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향후 아동방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기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각적으로 연대책임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교사들은 아동들이 가정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성인이므로 방임된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리나라 아동방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 공부방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433명을 대상으로 다차원방임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연구대상 아동들의 경제수준은 보통가정 23.1%, 저소득가정 48.7%, 기초생활수급자가정 24%로 나타났으며, 양부모 가정의 아동들은 57.3%이고, 한부모 가정 28.4%, 조부 또는 친인척과 함께 사는 아동들이 약 13%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학업성적이나 지역아동센터 적응수준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게 질문한 결과 아동들의 학업성적이 보통과 보통이상이 약 80%이며, 교사들의 84.3%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약 85%가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나 42%의 아동들은 항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는 등 모순된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학교 교사들이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동들이 90%정도이고 약 31%의 아동들은 교사들과 전혀 마음을 터놓고 이야

기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약 80%의 아동들이 학교 교사들을 존경한다고 보고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또래관계를 알아본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예: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폭행, 무단결석을 하는 친구)도 약 20%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은 자신을 도와주거나 외로울 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아동들은 비행 행동을 하거나 폭행을 할 위험이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방임 유형을 물리적 방임, 인지적 방임, 정서적 방임, 지도감독 방임, 가정환경 방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물리적 방임 실태를 살펴보면 다른 방임 유형보다 가장 낮은 비율인 12.2%로 나타나서 의식주 결핍이나 기본적 의료처치등과 관련된 보호자의 방임 행동은 비교적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음주문제에 노출되는 가정환경 방임도 12.9%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폭력문제나 보호자의 음주 행동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지적 방임은 58.9%, 정서적 방임은 44.1%로 나타나서 아동의 학업성취 및 교육적 환경을 향상시키거나 심리적 및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보호자의 행동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방임은 30%로 높게 나타나서 아동을 혼자 집에 방치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보호자의 안전불감증 행동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 가족관계, 학업성적, 지역아동센터 적응수준에 따른 아동경험의 차이를 t-test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과 가족관계 및 학업성적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여아보다는 남아가, 양부모보다는 양부모 이외의 가족(예: 조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함께 사

는 아동들이, 학교성적이 낮은 아동들이 아동방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보통, 저소득, 수급자)에 따른 아동방임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보통가정이나 수급자 가정보다 저소득 가정에서 아동방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저소득층 중에서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남아가 다른 아동들보다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고위험군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방임을 예측하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가족변인(연령, 성별, 형제수, 가족관계, 경제수준)과 학교환경변인(학년, 학교적응수준, 학교생활 만족도, 교사관계, 학업성적, 센터 이용시간)을 독립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아동들이 아동방임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아동방임을 경험할 수 있는 아동들은 양부모 이외의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학교성적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한 남아들이며, 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으며 교사와의 관계도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속한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일차적으로 이들을 위한 개입 서비스와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심층면접¹⁰⁾¹¹⁾

1) 심층면접 대상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또는 공부방을 이용하거나 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보호자와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종사자들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자로 선정한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빈곤 아동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기 때문이며,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호자의 일상과 방임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임의로 선정된 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부모에게 임의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약 1,700개소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서울 2개소, 경기 3개소, 충청도 2개소, 경상도 2개소, 전라도 2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임의로 선정하여 연구에 동의한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가 100개소 미만으로 설치된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에 제외시켰다. 경상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수능공부방과 종합사회복지관내 공부방 이용자를 포함시켰다.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이용하는 보호자와 아동은 교사를 통해 소개를 받아서 동의를 구한 후 면접을 하였으며, 서울 강서구, 관악구와 일산의 임대아파트 지역의 놀이터에서 면접자가 직접 아동과 부모에게 연구에 동의를 얻은 후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은 다음과 같다.

10) 면접자의 이야기를 서술한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중간 괄호로 내용을 첨부하였음.

11) 심층면접은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내 공부방 및 빈곤지역(영구임대아파트) 놀이터 등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아동보호센터로 간주하였다.

<표Ⅳ-16> 심층면접 지역 및 대상

권역	형태	지역	센터명
서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성북	시습공부방
		구로	파랑새나눔터
	임대아파트	방화동	
		등촌동	
		신림동	
경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고양	늘푸른교실 지역아동센터
		부천	반디불 지역아동센터
		안산	안산광림 지역아동센터
	임대아파트	일산 주엽	
충청	지역아동센터	충북 청주	수안보 지역아동센터
		충남 천안	낮은올타리 공부방
전라	지역아동센터	전북 전주	전주 지역아동센터
		전남 목포	새가정 지역아동센터
경상	지역아동센터	경북 문경	동성수능 공부방
		경남 진주	평거종합사회복지관 동그라미 공부방

2) 심층면접 진행 방법

심층면접은 아동, 보호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한 지역아동센터 목록을 가지고 전화로 교사, 아동 및 보호자를 심층면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심층면접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 심층면접 훈련을 받은 면접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하였다. 면접 대상인 보호자와 아동은 종사자들이 선정하여 면접원자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으며 심층면접에 참여하기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지역아동

센터 및 공부방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실시한 장소는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다른 아동들과 분리된 공간이었으나 아동들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어서 중간에 면접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임대아파트 지역에서는 놀이터 등에서 놀고 있는 아동들에게 다가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심층면접을 하였고, 아동과 함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면접자들과 면접대상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교사와 보호자의 면접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였으며 아동들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보조 면접자가 면접 내용과 주변 상황 등을 기록하였으며 모든 면접 과정은 녹음되었다. 심층면접을 하기 위해 면접자들에게 심층면접에 관한 이론적 교육을 세 번 실시하였으며 면접자들이 면접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서로 면접자와 피면접자가 되어 심층면접 연습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면접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을 하기 위해 면접자들이 융통성 있게 질문 내용을 면접대상자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수정하였다.

3) 심층면접 대상 인적사항

심층면접 대상인 보호자와 아동, 종사자들의 인적사항과 면접에 응하는 대상자들의 태도를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먼저 면접에 참여한 보호자는 총 27명으로 부모 또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령 분포가 33세부터 72세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형태는 기혼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13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보호자의 직업형태를 보면 무직과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으며, 경제수준은 거의 대부분 하위수준으로 나타났고, 많은 보호자들이 심층면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Ⅳ-17> 보호자 인적사항

No.	성별	지역	연령	결혼 형태	최종 학력	직업	경제 수준	면접태도
보호자1	여	서울	34	기혼	고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2	여	서울	68	기혼	초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3	여	서울	42	이혼	고졸	자활센터	하	적극적
보호자4	여	서울	39	기혼	고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5	여	서울	35	기혼	고졸	가내부업	하	적극적
보호자6	여	서울	48	기혼	고졸	무직	하	적극적,감정호소
보호자7	여	서울	39	기혼	초졸	판매직	하	적극적
보호자8	여	경기	35	이혼	고졸	판매직	하	성실
보호자9	남	경기	46	이혼	중졸	공장근무	하	소극적
보호자10	여	경기	38	기혼	고졸	마트근무	하	적극적
보호자11	남	경기	47	기혼	대졸	무직	중하	적극적
보호자12	여	경기	38	기혼	전문대졸	학원강사	중하	적극적
보호자13	여	경기	37	기혼	중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14	여	경기	37	기혼	전문대졸	학습지교사	중하	적극적
보호자15	여	경기	33	기혼	고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16	여	충북	72	사별	초졸	무직	하	적극적, 질문이해어려움
보호자17	여	충북	47	기혼	고졸	목욕탕근무	하	방어적
보호자18	여	충남	44	기혼	고졸	보험설계사	하	적극적
보호자19	여	충남	42	기혼	고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20	여	경북	50	기혼	대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21	여	경북	45	기혼	고졸	급식보조	하	적극적
보호자22	여	경남	34	기혼	중중퇴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23	여	경남	64	사별	무	무직	하	산만
보호자24	여	전북	67	사별	초졸	무직	하	적극적
보호자25	여	전북	52	기혼	초졸	무직	하	소극적
보호자26	여	전남	43	기혼	고졸	방과후교실교사	중하	적극적
보호자27	여	전남	56	이혼	중졸	공장근무	하	적극적

심층면접에 참여한 종사자들은 모두 14명인데, 이들의 인적사항을 살펴 보면, 대학 졸업 이후 첫 직장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부터 센터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령이 24세부터 48세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담당 업무는 아동 관리 및 교육, 자원 봉사 연계, 상담, 총괄, 복지 업무 등이었고,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심층면접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표 IV-18> 종사자 인적사항

No.	성별	지역	연령	직위	역할	근무년수	면접태도
종사자1	남	서울	34	교사	아동관리및교육	6년	적극적
종사자2	여	서울	31	사회복지사	방과후교실 담당교사	2년	적극적,호의적
종사자3	여	서울	48	시설장	총괄	3년	매우 적극적
종사자4	여	서울	27	사회복지사	교육,문화	2년	적극적
종사자5	여	경기	43	아동담당교사	아동교육,복지	3년	적극적
종사자6	여	경기	24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연계, 상담	6개월	성실, 질문내용생소함
종사자7	남	경기	47	소장	총괄, 아동관리및교육	3년3개월	적극적
종사자8	남	경기	48	소장	총괄, 아동관리및교육	3년7개월	적극적
종사자9	남	충북	42	소장	아동교육,복지	5년	적극적
종사자10	남	충남	25	교사	아동관리,상담	1년	적극적
종사자11	여	경북	36	교사	아동교육, 상담	5년	소극적, 질문내용생소함
종사자12	여	경남	26	간사	아동복지	10개월	적극적
종사자13	여	전북	28	사회복지사	아동교육 및 자원봉사연계	9개월	적극적, 호의적
종사자14	여	전남	43	소장	총괄, 아동교육및상담	3년	적극적

본 심층면접 대상으로 초등학생 28명을 선정하였는데, 이들의 연령 분포는 8세에서 13세로 구성되었다. 가족형태는 양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양육자는 어머니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기간을 보면 대부분 1년에서 3년사이 였으며, 아동들이 면접에 참여한 태도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 또는 방어적인 태도 등 다양한 면접태도를 보였다.

<표Ⅳ-19> 아동 인적사항

No.	성별	지역	연령	가족형태	주양육자	형제수 (본인외)	센터이용 기간	면접태도
아동1	여	서울	10	양친	모	1	1년	적극적
아동2	남	서울	12	양친	모	없음	1년	소극적, 방어적
아동3	여	서울	8	편부+조모	조모	2	1년	적극적
아동4	남	서울	10	편모	모	2	2년	수줍음
아동5	남	서울	10	양친	부모	2	무	소극적
아동6	여	서울	11	편모	모	1	7개월	적극적
아동7	남	서울	10	양친+조모	모	2	1년	소극적, 산만함
아동8	남	서울	13	양친	모	2	3년	수줍음
아동9	여	서울	11	양친	모	2	1년6개월	적극적
아동10	여	경기	9	양친	부모	1	7개월	진지, 성실
아동11	여	경기	10	편모	모	1	7개월	성실
아동12	여	경기	11	양친	모	1	2년	수줍음, 성실
아동13	남	경기	8	양친	모	1	1년	수줍음
아동14	여	경기	12	양친	부모	2	2년7개월	수줍음
아동15	여	경기	12	양친	부모	1	2년7개월	적극적
아동16	남	경기	12	편부+조모	조모	없음	7개월	방어적
아동17	남	충북	9	조모	조모	없음	1년	소극적
아동18	여	충북	9	양친	모	2	2	적극적
아동19	남	충남	11	편모	모	1	2년	산만
아동20	여	충남	9	부모	모	2	8개월	소극적
아동21	여	경북	8	양친+조부모	모	1	1년	적극적, 성실
아동22	남	경북	12	양친	모	1	8개월	적극적
아동23	여	경남	9	양친	부모	없음	없음	적극적
아동24	여	경남	10	조모	조모	없음	2년	소극적, 수줍음
아동25	남	전북	10	양친	모	1	3년	비협조적
아동26	여	전북	12	조모	조모	2	3년	적극적, 호의적
아동27	여	전남	11	조모	조모	1	2년	수줍음, 성실
아동28	여	전남	9	편모+조부모	모	없음	1년	산만

4) 심층면접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면접 분위기를 녹음과 함께 기록하여 대상자의 언어적 응답 이외에 비언어적 행동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면접과정을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음 한 다음 면접 이후에 바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심층면접 분석은 전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차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관점에서 아동방임을 분석하려고 개방코딩(open coding)을 해 나갔다.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자는 원문에 의해 지지되는 정보의 범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검토하였다. 연구자가 계속적으로 자료 원문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비교 접근(constant comparative approach)을 이용하여 범주를 나타내는 경우들을 찾고 획득된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범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살펴보았다.

개방코딩 다음에는 범주와 하위범주를 관련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축코딩(axial coding)하였다. 이 과정에서 범주가 나타났고, 참여자의 진술 그대로(in vivo) 범주 명칭이 정해졌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는데,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다른 범주들과 핵심 범주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며 범주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재정의하고 개발할 범주를 채우는 통합적인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분석 수준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조용환, 1999).

5) 심층면접 결과¹²⁾

<표 IV-20> 심층면접 결과

대분류	소분류	주요 발견
아동방임	가. 아동방임의 대한 이해수준	● 보호자: 용어에 대한 생소함, 아동 단순 방치, 정서적 방임까지 정의 ● 종사자: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단순 방치, 교육 및 정서적 방임까지 정의
	나. 아동방임의 범주	● 보호자: 생각 해 본 적 없음, 의식주 부족, 심리 및 정서적 방임까지 포함 ● 종사자: 구체적으로 모름,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까지 포함
	다. 아동방임 현황	● 보호자: 아동방임 현황에 무관심, 50%이상의 높은 발생률 ● 종사자: 지역사회에서 70%정도까지 상당히 높은 발생률, 센터 이용 아동의 50% 이상, 운영규칙으로 인해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함 ● 아동: 저녁식사를 거름, 아동 스스로 준비물 챙김. 안전사고 상황에서 혼자 대처
아동방임 예방 및 아동정책	가. 아동방임·아동 권리·아동안전·예방주체	● 보호자: 보호자가 일차적 책임, 국가 및 지역사회 공동 책임 ● 종사자: 보호자와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동책임, 아동 개인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아동권리 침해 위험
	나. 아동방임 예방정책 인식 수준	● 보호자: 아동방임 예방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사회 예방 기관 및 프로그램 활용 없음, 방과후 교실 및 수급자 지원을 아동방임 예방 정책으로 인식 ● 종사자: 아동방임 예방 대책에 대한 정보 부족, 아동방임 사례 전문 기관에 의뢰,

12) 심층면접 결과에서 면접대상의 응답 중 괄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연구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면접 상황을 부가 설명한 것임.

		다른 기관에 대한 정보와 연계 어려움으로 즉각적 개입 부재
	다. 아동방임 예방대책 개선 방향	● 보호자: 다양한 문화적 체험, 야간 무료 호보 시설 요구 ● 종사자: 아동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의 기능 강화, 전문 인력 확충,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인식 변화, 아동방임 개념에 대한 합의, 아동방임 실태 파악, 보호자의 인식 변화, 아동 및 보호자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기관
	라. 아동정책 개선 방향	● 보호자: 지원 대상 아동의 심리적 상태 고려, 융통성 있는 지원 정책, 센터와 같은 아동보호시설 지원 확대, 가정단위의 경제적 지원 ● 종사자: 아동중심 정책 제정,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아동보호시설 운영 합리화, 종사자들의 신분 보장, 관련 기관 네트워크 강화, 일관성 및 지속성 있는 정책 실행, 보호자와 종사자를 위한 교육 강화
아동보호 시설	가.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태도	● 보호자: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만족감, 사교육 욕구 충족 기능 ● 아동: 대부분 재미없고 오고 싶지 않음, 일부 아동은 재미있음, 센터이용을 외부에 노출하기 꺼림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문제	● 종사자: 일관된 정부행정의 부재, 행정문제,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 불합리한 지원금 지급 방식, 현실적 지원금 기대
아동과 보호자	가.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	● 보호자: 아동의 일상생활(학교생활 중심) 위주만 파악, 아동의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에 무관심, 최소 하루 한 시간 이상 대화, 대화시간 부족 ● 아동: 거의 대화하지 않거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대화, 원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에게 이야기 하지 않음
	나. 노는 토요일	● 보호자: 아동을 집에서 방치(TV 나 게임), 가족단위로 놀이 ● 아동: 집에서 TV, 밖에서 또래와 놀이,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선호
	다. 야간보호 문제	● 보호자: 주변 친인척 활용, 아동 스스로 보호 요구 ● 종사자: 아동보호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안전 장소 요구 ● 아동: 공포감을 느낌, 폭력상황을 접함

(1) 아동방임

가. 아동방임에 대한 이해수준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보호자는 아동방임이란 단어에 생소한 반응을 하였으며 대답하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아동방임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동방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

‘방치하는 것,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들이 들어주는 않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을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글쎄요...’

일부 보호자의 경우 방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은 아동들이 잘 때 보호자가 나가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아동방임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임이 뭐예요?... 애들을 재워두고 불일을 보러 나가는 것은 방임이 아니라고 봐요...’

‘방임... 방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뜻 이예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요...’

그러나 몇몇 보호자의 경우 방임에 대해 나름대로 뚜렷하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녀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또는 보호에서 무관심한 상황에 있는 것...아이가 학교를 안가도 별로...학교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더라구요. 학교 갔다 돌아와도 관리를 못하고 그런 것도 방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어딜 딱히 갈 만한 곳이 없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밖으로만 많이 돌게 두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방임인 것 같아요...’

‘일단 부모의 무관심... 음...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떤 능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또 해줄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돌아 봐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방임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환경적으로는 그러는데...부모의 어떤 의지 여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애한테는 무관심한 상태... 애한테 양육이나 돌봄이 전혀 이런 저런 관심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지는 상태...’

보호자와 달리 종사자들은 아동방임에 대해 들어본 경우가 많았으나 그냥 방치된 상태를 이야기 하는 협의의 아동방임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호자의 보호책임 문제나 교육적 방임 및 정서적 방임 등을 포함하고 있

는 광의의 아동방임 정의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많이 들어봤죠... 아이를 길러야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니...뭐... 부모라기보다는.....보호자가 성인이 아이를 보호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음...글쎄요. 특별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그냥 무관심으로 지켜본다는 거...’

‘아동방임 음... 그러니까 부모나 학교에서나 그런데서 아동을 돌보지 않고 말 그대로 아동을 방치한 상태에서 아동들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입는 그런... 상태까지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음... 방임이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방임된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데요’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또 교육받고 온전히 성장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몇 종사자들은 아동복지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에 대해 기본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즉, 앞으로 아동복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동복지학을 수강한 종사자들을 고용하여 아동복지 현장에서 아동방임을 발견하였을 때 종사자들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아동방임) 개념은 하여튼 간 잘 모르겠고 뭐 주위에서 어떤 그런 얘기는 자주 못 들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호되어야 되는데 보호되지 못하는 거’

‘글쎄요. (아동방임)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동방임을 예방하는 지역사회 기관)글쎄요 저도 말만 들어가지고. 뭐 단체 있어요?’

‘(아동방임)잘 모르겠어요.’

‘(아동방임에 관한 정책)글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여기가 지금이 상황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책에 대한 걸 같이
생각해보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아동방임에 관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종사자들의 낮은 의식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을 방임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종사자들의 경우 센터에 일하는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보다 자원봉사자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동보호기관의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아동방임이나 아동권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을 때 아동방임 및 학대 사례관리 및 보호조치에 문제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의 법령은 사회 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교직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장은 자격기준이 되거든요?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사회복지학 그런 공부를 했지만 개론적인 얘기지 지역아동센터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생업이고 또 일을 위한 일로서 돈을 벌기 위한 일로서 참가를 보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예 가족적으로 완전히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회복지사가 직업적으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자원봉사자들의 일을 침범할 수도 있고 권위라든지 이런 걸 침범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제 입장에서서는 자원 봉사자들 중에서도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 일을 계속 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상 더

크죠.’

‘사실상 대부분 저희 교사들이 다들 다 대학생들이고 복지사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요새는 시간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딸 수가 있고. 실무하고 이론하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상담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부 할 필요가 있긴 한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특별히 광범위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나. 아동방임의 범주

아동방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동방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으로 아동방임이 방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몇 보호자의 경우 아동방임의 범주가 의식주를 포함하는 최소한의 아동방임에서부터 아동의 심리적 상태 및 정서적 부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아동방임 범주를 언급하였다.

‘제가 바빠서 피곤할 때 가끔 그러거든요... 그리고 후회해요... 큰애랑 작은애랑 같이 애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워”라는게 나와요.....그 점부터가 아이들한테는 방임이라 생각해요. 아이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는 거요.’

‘음... 아주 폭이 넓은데... 뭐 지금...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애한테 먹거리조차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방임을 최소한의 방임으로... 이 방임이 될 수 있구요... 또 이제 어떤 애들 또 학업적인 쪽에서 보통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 보다는 애들의 어떤 심리상태라 던지 심리적인 상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안 되고 있는 그 상태도 방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 선까지... 3시간 이후 3시간 정도는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 그것도 방임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3시간 이상이 아닌 정신적으로 해주지 않는 상태도 방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결국 물리적인

거 보다는 마음의 거리....’

‘물론... 장소적인 것은 집 근처면 되겠지만 아이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내외로 잠깐씩...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던지 아이들이 어디 가는지 아는 것은 괜찮지만 부모들이 아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이 흘러도 모르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의 미래에 관심이 없고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먹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부모 역할인데 밤늦게 들어와도 찾지 않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러냐... 이런 걸로 끝나면 방임인거 같아요...’

아동방임의 범주에 대해 종사자들은 보호자와 같은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종사자들도 아동방임의 범주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신체적방임을 넘어서 정신적 방임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조차 아동방임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아동방임 사례 발견이이라든지 사정기준에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방임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가장 작게는 아이들 밥을 안 준다던가, 심하게는 저는 학대까지도 방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딱 범위라고 말하기가... 그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어렵네요.’

‘...신체적인... 시간... 그런 것을 떠나서 아동이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다 보기에 약간 이상하다... 그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 범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임의 범주... 만약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라면 그냥 본인이 생활이나 개인환경 때문에 아이의 그 생각... 아이를 교육 시키고 아이를 자랄 수 있게끔, 성인이 될 수 있게... 그 권리성을 잊고 사시는 거랄까? 진짜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 생각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안하다는 말 하나로 끝내버리는... 그런 부분이 방임인 것 같고 그리고 할머니가 키우시는 그런 부분도 방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방임이라고 봐요... 어르신들이 키우시는 부분은 보호 기능밖에는 없어요. 교육에

대한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방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이들은 사람이라서 교육은 꼭...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임이라는 게 그럴잖아요. 어른들이 계셔도 아이들이 방임이 되잖아요. 물론 어른이 없는 상황에서 방임이 더 많이 발생하고 크겠지만... 예를 든다면 저희 방과 후 교실 아동에서 본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할머니가 일을 나가셔서 생계가 유지되는 가정에서 자라서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방임의 하나라고 봅니다.'

다. 아동방임 현황

보호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 실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50%이상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상반되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방임 현상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농사일을 하거나 주변 상업지역에서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그냥 방치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에서 방임당하는 아동을 보았죠...잘 모르겠어요..제가 늦게 다녀서...'

'솔직히..제가 남 참견할 저기가 아니구요...애들 관리하기도 바빠요.'

'다 맞벌이하고... 엄마가 늦게 집에 오니까... 애들이 지네들끼리 늦게까지 놀고... 한 65%정도....'

'글쎄... 한 60%이상 되지 않을까? 이게 시골 농사일로 바빠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관심을 못하지는 경우가 보통의 방임이고. 이제 조손 가정이나 결손 가정도 꽤 많거든요...'

'주변에서 놀이터 같은 데서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주로 노출되어 있어요...'

종사자들은 지역사회의 아동방임 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아동복지 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아동을 보호하면서 빈번하게 아동방임 사례를 목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100명을 본다면... 어제 제가 방과 후 교실을 하면서 보았던 아동들의 100명 중에 60-70명은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한 6, 70%는... 그런 것(아동방임) 같아요.’

‘여기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에요... 열악하다는 것은... 주변 환경... 부모 수준... 그리고 문화적으로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수준을 보면은 여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다니는... 학교 다니는 3분의 1보다 많다고 봐요’

‘저희 센터 경우는 한 70%... 그 정도고... 그 이상은 되요...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임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절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대부분 모자가정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1시 2시 이렇게 학교 끝나는 시간부터 7시 8시까지 홀로 방임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그렇구요....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방임된 아이들이 있다고...’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다니는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방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이 제시한 구체적 아동방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복지관에 그 시간대 프로그램에 잘 참석은 하는데 그 외에는 바깥에서 보통 10시까지도 계속 노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아니고 그게 그 아이의 생활인 것예요. 그니까 할머니의 생각은 뭐냐하면 몸도 불편할뿐더러 이게 자기에 대한 어떤 이 손자가 귀엽다기 보다는 스트레스인거 예요. 그 전에는 혼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손자 세 명이 들어오니깐 다 돌봐야 되죠. 그리고 말을 또 안 들으니까... 그러다보니

까.. .밥만 주는 정말 밥만 주는.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애가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부모가)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부모와 상담을 직접 해보면은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쉽게 이야기 하면 남의 집 자식일에 왜 간섭하느냐.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지도가 필요하고 부모님의 돌봄도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방임이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직장 다니시고 애들 초등... 방과 후에 봐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부모님 상관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은데....형젠데, 초등학교 2학년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인데, 어머니가 저녁에 이제 노래방 일을 하시면서....낮에 오면 엄마가 많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몸이 좀 약하시고 해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여기 공부방에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가 지금 학습 능력이... 2학년인데 거의 지금 유치원... 미취학 아동보다도 못 할 만큼... 그렇고 그리고 학교도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럴 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마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엄마가 있어야 할 시간에 없기 때문에 마트 같은데 종사하는 분들은 이브닝 타임이 끝나면 11시에 끝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의 운영규칙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 지역사회 보호자의 요구가 있고 센터의 보호 의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으로 인해 아동을 방임한 상태로 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저희 센터는 정원이 30명이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필요한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수용 인원이 20명이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공간에 몇 몇까지 들어가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고 싶어도 그게 안 되

면 더 넘어가면 또 지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수용해야 할 인원이 많은데도 솔직히 그만큼의 공간이나 그런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정부 지원이 정말... 미흡하기 때문에 정말 대기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 여기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위급하고 위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저희도 다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30명이 넘으면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써야한다는 법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인건비나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한테...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지원이 미흡하거든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힘들고 필요한 면이 있죠.'

아동방임 실태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보호자들이 아침은 챙겨주지만 저녁을 챙겨줄 수 없어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센터에서 저녁을 먹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먹지 못하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어요.'

'네. 공부방에서 저녁은 먹어요.'

'안 먹을 때도 있고요 먹을 땐 할머니랑 먹어요... 점심은요 학교에서 주고요... 뭐더라... 저녁은요 공부방에서 먹어요.'

'... 밥 없으면요 그냥 안 먹든지 라면 같은 거 부셔먹어요.'

'배고프면... 그때는 그냥, 참는대요.'

'네. 엄마가 맨날 차려주시는데요. 저는 아침밥을 싫어하고 안 먹은 날이 몇 번 안돼요.'

'여기서(공부방)먹고 가요... 흠... 이렇게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어요.'

또한 아동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학교준비물 등을 스스로 직접 챙기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호자로부터 준비물을 살 돈을 받아서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였다. 보호자가 아동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을 챙기지 못하거나 무엇을 샀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들이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건을 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가

아동들이 어떠한 물건을 샀는지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머니한테 필요한 것은 돈을... 만원씩 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준비물 사요) 거스름돈은 다시 줘요... 양치질 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가 원하는 드라마 틀어주고(웃음)’
‘준비물은 할머니한테 졸라서 사요.’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사서’
‘돈 주시면 준비물을 사요... 아니요. 가끔은 주시지 않아요.’
‘(ADHD아동임)준비물이 있을 때는 엄마에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엄마가 챙겨주세요.’
‘준비물은요 할머니가요 하루 전날 말하면요 집에 있는 거는 챙겨주고요 아니면 돈을 쥐가지고 사가지고 가요.’
‘준비물은 제가 사고요 옷은 엄마가... 준비물은 아침에 사요.’
‘음... 엄마랑 아빠랑 있을 때도 있고,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엄마가 저한테 (준비물)사 오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몇 개는 챙기고, 뭐, 돈 필요한... 뭐, 사야 되는 것은 엄마한테 말해서 돈 받아서 학교 갈 때 사고 그래요.’
‘제가 직접 가서 사는데요..... 그날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가)챙겨주기 보다는요, 사와가지고 제가 넣어요.’

아동방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동 안전사고인데, 본 심층면접 결과 아동들은 혼자 있을 때 빈번하게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동들은 혼자서 대처하고 있었으며, 보호자나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어른들에게 말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된 아동들은 아동안전 사고 발생의 잠재적 고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음.....완도에, 고향에 갔을 때요. 그때요. 어른들 없을 때요. 동생이 불장난 해가지고 다칠 뻔 했어요. 그냥, 물바가지 가지고 물 퍼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비닐만 타고... 그때 기분이요? 아슬아슬했어요.’

‘네, 있어요. 동생이 활귀어서 다쳤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할 경우 제가 잘못 안했을 경우 동생을 때려요.’

‘다칠 뻔 한 적은 있어요. 어. 다리를 다쳤어요... 엄마가 사고 난 곳에 오셨고 돈을 주어서 좋았어요... (엄마가 없을 때는) 혼자 소독하고 치료 했어요... 왜 다쳤는지 짜증이 나요. 귀찮고요.’

‘친구들이랑 제가 어렸을 때 놀 때요 언니네 집에 놀러 가는데 거기서 놀다가요 찾길로 치였어요... 그때는 언니가 같이 병원 갔어요... 아뇨 언니가 같이 있었어요... 네. 많이 당해봤거든요... 놀 때만 그래요 신호 등 없이 놀 때만 그래요.’

‘엄마도 알아요... 오늘 저녁에 고칠 거예요... 며칠 전부터...(고장 났어요)’

‘그냥... 그냥... 놀다가 엎어져서 팔 다친 경험 있고... 음.. 음... 거의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다쳤을 때 선생님한테 말하고 그냥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말하니까 병원가고..’

‘아빠랑 같이 일하다가 칼로 손을 좀 베었어요. 그냥 밴드 붙이고... 제 동생은 저랑만 같이 있었을 때 사과를 깎다가, 먹고 싶어서... 살짝 다쳤어요... 그냥 밴드 붙이라고 한 다음에 학습지 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만 하고 좀 놀다가...’

‘밥 먹다가 밥을 옆어버려 가지고 밥을, 밥에 데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로 씻었어요. 시원하게... 음... 아픈기분(아팠어요)’

‘(혼자 있다가 다친 적이)있어요’

‘김스하고 혼자 있었던 적은 있는데요. 그냥 다치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그때 딱 한번 있었어요. 눈병 있었을 때요 하도 (보호자가)안와서 진짜 병원가야 하는데... 거기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큰누나 집에... 그래서 혼자 계속 있다 가요 자고 일어나니깐 괜찮아 진적 있어요.’

‘어... 제가 어렸을 때요, 엄마가 시장 갔었던가, 일을 갔었던 거 같은데 그때요 제가 저금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요 쪽가위로 빼다가 손 찢어진 적도 있고, 파랑새(공부방)에서 장난 치다가요 귀에 구슬이 들어간 적도 있고..... 많아요... 휴지요, 휴지로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다가 연고 같은 거 발라요. 소독...’

(2) 아동방임 예방 및 아동정책

가. 아동방임 및 아동권리 아동안전 예방 주체

아동방임을 예방하는 주체가 보호자-지역사회-국가 중에서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아동방임의 일차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같은 보호자와 지역사회 또는 국가가 공동 책임을 가지고서 아동방임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환경이 안 되었을 경우 국가나 지역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다.

‘일단 방임 되는 제일 주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것 같아서...일단 부모들이 애들을 낳았으면 그런 것에 노출이 안 되게 책임져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정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러고 싶어도 왜 그게 여건이 진짜 안돼서 그러는 거면 나라에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기본은 보호자인데 보호자가 안 되기 때문에 방임이 되니까 지역사회로 가야 되겠죠.....’

‘보호자가 먼데...정부가 신경 써주면 좋죠... 정부에서부터... 그거를 지역에서도 신경 쓰고.....’

‘첫째는 물론 엄마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정부에서 나서야 되요. 그래야지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를 욕심을 내면 그럴겠지만... 진짜 없는 사람들은 주 5일째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웃음팔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해본적은 없지만 그 외에는 다 해 보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임했잖아요. 일을 하니깐..... 현재 정부가 나서야지 부모가 나서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방임되는 제일 주원인이 부모한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부모들이 애들을 낳았으면 그런 것에 노출이 안 되게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정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러고 싶어도 왜 그게 여건이 진짜 안돼서 그러는 거면 나라에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 거 같아

요.’

‘부모가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 지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인제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인 것 같고, 가장 일차적으로 이게 인제, 의식이 깨어있어야 할 것은 부모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아 그냥 잘 크겠지, 잘 크겠지 하는 이런 것에서 좀 부모들이 깨어서 방치되는 아동들이 그 아이들의 정신 상태나 개네들이 컸을 때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것을 조금은 부모들이 인식을 하면 그 이후의 프로그램도 아,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일단 부모인 것 같고.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지역센터보다는, 지역보다는 국가가 먼저 이렇게 더 나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부모도 우선이지만, 나라 정책이 안 바뀌는 이상은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살려면 부모들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깐 일단은 국가가 (정책) 시행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들은 아동의 네 가지 권리(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에서 아동방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보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먹는 것을 크게 생각 안하는 같아요..... 아이들은 먹는거나 그런 의, 식, 주보다도 관심, 그러니깐 보차원에서 부모들이 뭔가를 해줘야지 관심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각해요’

‘보호권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시골이어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 성폭이나 성추행에 당할 확률이 높아요...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순찰강화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우선은 생존권.... 요즘도 쌀이 없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생존권이 우선적으로...’

‘생존이 중요하죠... 생존이.... 요새 애들은 옛날처럼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과일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지네는 먹고 싶지만 부모는 그것을 일일이 챙겨주기 부담스럽잖아요...’

‘아동이 참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참여권이 중요... 시민회관 등에서 무료티켓을 주어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글쎄 뭐든지 좀 어딘가 (아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보고 듣고 그런 좀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그 체험하는 거...’
 ‘균등한 기회. 평준화처럼... 요즘 차별이라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호자들은 아동안전 문제 예방에 대해 보호자-지역사회-국가 중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아동방임 예방 주체와 비슷하게 보호자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였다.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차단시키는 거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좀 이렇게 좀... 그렇다고 국가가 다 일일이 해주 기에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지역사회에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 아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그건 정부에서 어 떻게 해라 뭐 고장 난 것을 고쳐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만지면 사고가 안 나잖아요. 몰라서 만져서 사고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건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 것도... 늘 가르쳐줘야 하는데 주입식으로 그걸 정부에서 해줄 수는 없잖 아요...’

‘보호자일 수도 있지요.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데 못 보니까. 그런데 어 떻게 범위를 넓게 하면...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안전수칙 같은 거를 엄마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맞벌이 안하고 집에만 있는 엄 마들이 있기가 있지만...나라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복지나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가르쳐야죠. 그리고 (아동)본인도 조심해야죠.’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있는 것 같고. 인제 그 이후에 실은 혼자 있기 때문에 많이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 눈에 있으면 많이 다칠 거 조금 다치고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 일단 일차적인 책임 은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에서 어른들 눈에서 놓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이

많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면, 실은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접했을 거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실은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그럴잖아요.’

중사자들은 보호자, 지역사회, 국가 중에서 아동방임을 예방하는 책임주체는 일차적으로 보호자 또는 국가 및 지역사회라고 다양하게 이야기 하였다. 즉, 아동방임의 주체는 보호자와 지역사회 및 국가에서 공동책임 하에 예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 거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어떤 소수 기관이나 아니면 방임 전문가 혹은 그 분한테만 모든 책임이 지워지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받침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호자가 신경을 안 쓰면 아이들이 따로 나가니깐. 아무리 센터에서 신경 써도. 신경써주면 부모님이 하는 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같이 어울려져야 될 일이지. 부모가 없을 때는 국가가 정말, 정말 주체가 되 주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어떠한 사회제도가 있어도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그 자격이 안 되면 그 마인드가 안 되면, 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것. 여기가 없을 때는 여기가 채워줘야 되고...’

‘방임 예방의 주체는 국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방임아동을 위한 체계를 만들지 않아서 그런 아이들이 안 생기죠. 일차는 국가고, 지역사회는 중간에서 부모와 국가를 조율하고...’

‘양육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보호자이지만 방임이라하면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아동들이 방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아동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임된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관심을 갖기 어려운데 지역사회의 여러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고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 상담하고 설득하고 한다고 해도 체벌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그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 수 있는 문제이고...부모님의 책임이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동방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져야하는데 근데 부모의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그런 복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다 중요한 거 같아요. 아무리 국가가 잘 지원을 해줘도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 할 수 없고 부모도 관심이 없으면 안 되고 암튼 세 가지가 같이 해줘야...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역사회가 우선 먼저 주체가 돼서 점점 넓게...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종사자들은 아동권리 중 국가가 아동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발달권 또는 보호권이 생존권이나 참여권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기본적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발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발달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자라고 많이 배우... 자기가 보고 듣고 그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배우(고)... 자라잖아요...’

‘보호권. 예. 보호권. 왜냐하면 여기... 다른 지역에서는 아마 어떤 생존권이거나 발달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겠지만 수안보 지역은 이제 관광지다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성인들의 문화에 노출이 되어있어요.’

아동방임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또는 유사사례의 경우에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기관에 아동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지 아동정보 공개수준을 정하는 범주에 관한 질문에서 종사자들은 폐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개방적으로 완전 공개를 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종사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하여 임의적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기관에서 아동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해 일관된 정보공개 수준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아동정보 공개과정 동안 아동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절대 아무 말 안하고... 그냥 하고 있고요 그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왔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 힘든 아이들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들의 정보를 달라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제가 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않아요)’

‘아무래도 제대로 하려면 그 애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게... 그거에 대해서 서로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하고 이렇게 다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이게 확실하게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개입을 하고 방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배경이라던지... 히스토리는 어떤 사례를 개입을 하게 되건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정배경, 히스토리, 그 정도까지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대상자의 서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공개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회단체에서 프로필을 만들면 이 아이는 어떨고 저떨고 다 나오는데... 그래야지 모금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마는. 결국은 아이가 불리한 부분들을 드러내서 속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장사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구체적인 아이의 경력 이라 던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름이나 생년월일 정도. 주소정도. 그래서 그 지역이나 어느 센터에 가든지 차후에 그분들이 다 입수할 수 있는 일이니까는 그런 것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민감한 부분이네요...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하

는 것은 좀 어렵고 그렇고 그냥 적어도 아이의 인적사항이나 생활환경 전도는 알아야 그것이 대상이 되... 그렇지 않을까 요정도'

나. 아동방임 예방 정책 인식 수준

보호자들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이나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등을 이용하면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들었으며 그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방임 예방 대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아동방임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동방임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글쎄... 저는 많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정도만...’

‘실질적으로 대책을 잘 모르겠어요.’

‘아는 바 없음’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 눈에 안 띄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못 봤어요...’

‘뭐...모르겠어요...복지관에서만 하는 것만 알지. 안 그러면 싹 다 돈 주고 하는 곳..’

‘제가 이쪽의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실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아이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스쿨, 이 정도에 특기적성 교육으로 알고 있었지. 특별하게 국가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더라... 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있는지도 제가 이쪽을 공부하면서 알았지... 저도 있는지도차 몰랐지요...’

‘맞벌이 하는 엄마들도 이쪽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그냥 학원으로만 돌리는 생각을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같은 부분이 좀 확산 되었으면 하는...’

보호자가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대책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거나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한편 일부 보호자의 경우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해 주는 것만으로 정부 및 지역사회가 아동방임 예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학교에다 방과 후를 설치 한 정도 알고 있고 혹은 인식이 있는 마을은 마을 전체적으로 노는 토요일이라든지 그럴 때 아이들을 끌어들이어서 미술놀이나 연극놀이를 체험할 수 있게끔, 또는 벼룩시장 그런가 하는 마을도 봤어요.’

‘글쎄 이제 학교에서 방과 후도... 이제 방과 후 교실 운영하는 것도 이제 그 쪽의 한 부분인데 이제 뭐 학업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돌아가도 애들이 가정에서 보호받는 애들 붙들어서 뭐 예체능 뭐... 또 악기 쪽 뭐... 컴퓨터 쪽으로 뭐 하더라구요.. 방과 후 교실...’

‘급식비 같은 거 면제 해주는... 그런 거예요?... 기초 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뭐 이런 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 보호를 해주면 되지 뭐...’

위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아서 아동방임이 예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정보를 실제 이용자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보호체계가 실제 이용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아동방임 사례를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종사자들도 국가나 지역사회 아동방임 예방대책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방임을 예방해야 하는 아동보호시설에서조차 아동방임을 방임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글쎄요... (사회복지/아동복지 관련) 법하고는 제가 좀 약하고... 그걸로 그냥 나두고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가정문제라고 나두고. 또 바쁜기 때문에 서류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 (아는게) 없는데요.’

‘특별히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구요... 인근 복지관에는 장애인 아동 복지 보호센터가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몇몇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들을 발견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아동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서비스 및 보호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 오는 아이들과 강서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하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조손빈곤가정이구요. 처음에는 복지관 사례로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결국엔 아동학대센터에서 방임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네 (연계를) 좀 하고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센터교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밀접하게는 아니어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맞고 온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신고 같은 게 들어오면 갈 수도 있게...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센터가)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계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 공부방 같은 경우 부스리기 사랑나눔회, SK 직업구하기가 후원해주고 있는데 SK 직업구하기는 우리 공부방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들 유연하게 활동되었으면 좋겠고...’

한편 지역사회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도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아동복지 기관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즉 현재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종사자들은 아동방임 사례를 발견했을 때, 방임된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전문기관을 발견하기 어려워 즉각적 개입이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또한 종사자들은 센터 및 공부방 아동들에게 아동방임 예방을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아동방임 사례에 대해) 올바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에요... 차라리 몸을 맞거나 지도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은 그런 연계할 기관 자체를 찾는 것이 저희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 다른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공부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모두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쉼터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 기관이랑 연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요... 쉼터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들어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대기중이에요. 그룹홈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쉼터에다가 요청을 하면 당신네들 기관(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런 식으로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런 시설이 워낙에 미비해서 어려워요.’

‘연계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관이 적기 때문에 그 대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단체, 자기네들끼리 연계가 되는 거죠.’

‘음..... 물론 그러니까...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일시 보호소나 그런 곳에 갈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물론 연계가 되어 있다면 능률적이고 편하겠죠.’

다. 아동방임 예방 대책 개선 방향

보호자들이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정책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방임된 아동들이 결핍되기 쉬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들도 있었으며, 아이들을 저녁시간 늦게까지 무료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요새는 애들도 늦게 자잖아요. 그래서 밤늦게 까지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화생활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매일은 힘들니까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 달에 한번정도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종일반... 이런 데 해줘가지고 늦게까지... 애들이 왜 그냥 막 늦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논일하고 밭일하고 그래요 늦게까지 계시면... 그런 애들 일찍 집에 오면 막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위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늦게까지 시설 같은데서 시간을 정해서... 그런데 종일반 같은 경우가 비싸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서 그런 애들 다 돌봐주면 좋죠...’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방임된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아동방임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아동방임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국가관리 및 전문 인력 확충을 강조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 것처럼 방임예방센터랄까.....방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방임(된) 아동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아동방임 관련 기관이 생긴다면 그것은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일이 겹치게 되네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역량을 키워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아동방임을 관리하

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인력이 좀 더 필요한데 너무 열악한 거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밖에 일을 못하잖아요. 직접적으로 나와야 되고 보고한다면 그만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그만 인력에 조그만 투자에 뭔가 빛을 불라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말씀이)...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너무 일이 많아서 일일이 찾아 갈 수 없다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아동방임)에 사람들을 많이 배치 좀 하던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급해주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없는)사람들한테는 그런 요원들을, 사회복지사님들을 좀 더 배치를 해줘서 좀 더 공평하게 (자녀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쓰여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먹거리 도시락 배달 그런 거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배출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삶의 의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이죠...’

‘센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인력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계셔야지 애들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종사자들은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센터, 전문기관 등 사회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의 운영주체로는 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거나 다른 아동방임 전문기관과의 공동주체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 하였다.

‘(학교 교사)그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하고 대상자(방임된 아동)들을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아이들이 애프터(스쿨)를 해야 될까...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아이들을 보육해서 맡길 수 있는 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라도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맡아서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에서 같이 돌봄이 같이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돼서 연결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

들도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거의 애들이 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터치 안하고 상관 안하시는 분들이예요. 동사무소에 계신 사회복지사 분들도 부모님한테... 아이가 어디를 다니고... 구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각 복지관이나 정신보건센터, 학교가 연계되어서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기관 중에서 꼭 한 곳을 정하라고 하면 그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그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접하게는 아니어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맞고 온 애들이 있으면 우리가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신고같은 게 들어오면 갈 수도 있게... 이렇게 서로 알고 지냈으면... 그런 관계는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종사자들은 앞으로 방임된 아동들의 욕구를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나, 지역사회에서 방임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아동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확보 등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이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고 싶은 욕구도 많고, 배우고 싶은 욕구도 많은데, 어... 보통 이 방임 된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뭐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본 가정들은 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그게 돈으로 지원보다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여가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가시설 같은 게 그러니까 아동센터도 필요하지만 그냥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 시기 때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가나 시설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구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서 좀 더 아이들이 다양하게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거, 기관에서는 그리고 좀 더 전문화 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안정적으로 아동들을 돌 볼 수 있는 공간, 전문교사, 자원이 있어야 빈곤아동이나 방임아동들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빈곤아동이나 방임아동은 시설아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돌 볼 수 있는 소규모 센터가 있어야 해요. 아이들이 이런 곳에 와서 집처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냥 뭐, 저희 같은 경우 문화체험 같은 게 부족하니깐 청소년 수련관 그런 곳에서 전문 레크리에이션강사나 해서 2박3일 수련회 같은 것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또한 종사자들은 아동방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아동방임의 정의에 대한 합의점과 아동방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동방임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일반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방임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서 어른들 스스로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아동을 방임시킬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또 예방된 아이를 보호하게 해줄 수도 있고. 방임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임의 정의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임이 왜 (예방이) 안 되는 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문화의 경우 큰 아이들은 그냥 놔두는데 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방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성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방임아동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고요 그리고..둘째는 방임 아동을 무료로 의탁해서 하는 센터나... 이런 아동 쉼터나, 청소년 쉼터 그런 것 실태파악, 아울러서 해서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아이들이... 돌볼 아이들은 많은데 인력이 모자란다는지 또 아이들 밥도 먹이잖아요. 간식, 밥 다 먹이고 아이들 다 체험 학습 같은

거 가지는 것도 다 돈인데..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죠.’

‘방임 예방을 위해... 어... 그게 그냥 우선... 방임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계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같구요. 그런 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뭐... 무슨 축제 같은 거 있을 때 딱딱하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홍보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

종사자들은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 서비스로 아동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보호자이 부모교육 또는 보호자 상담을 제공받음으로써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의 위험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이들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부모님 무슨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아이들이 방임상태에 있다는 게 부모님 상태에... 부모님한테 뭔가... 부모님이 뭐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텐데...’

‘저의 복지관에서는..그 아동을 방임한 할아버지에게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했어요. 왜냐면 그 할아버지는 학교를 안가도 뭐라고 말 안하는 게 나쁜 건지도 몰랐거든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라던가, 방임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에게 인식 개선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했고. 또 그 할아버지가 빈곤가정에서 자원 봉사자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관차원에서는 이렇게...’

‘부모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부모님들이 심각성을 이렇게 좀 알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꼬박 꼬박 나오게라도 좀 어머님들이나 뭐 이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냥 놀러 가면은 가서 좀 공부 하고 별로 이제 안 가는 날은 그냥 뭐 밖에서 놀아도 그냥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시니까 항상 아이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놀고 차도 같은 데서도 차 다니는데 딱 지치기 하고.. 학교가고 또 부모님들이 부모교육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문 부모교육 그게 아니다 보니깐 한계가 있죠.’

‘그런 프로그램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이 같이 참여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 부모님이 알아야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세요. 부부가 같이 있는 거 아니고 혼자서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거 같아요.’

‘.....음... 먼저 부모가 이 아이가 방임 됐구나...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 혼자서 있고 사고할 수 있는지 혼자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부모님들은 전혀 받아들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종사자들은 방임된 아동들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며, 방임된 아동과 가족들이 함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방임된 아이들이라는 것은 몸 자체도 혼자만의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애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병든 아이들이에요.’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일반아동들하고 약간 틀린...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하고자 제가 이것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서 이런 곳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맺으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센터...’

‘아동에게만 치우치는 서비스는 이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깐 뭐 방과 후 교실에서 아이들을 맡기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것 보다는 가족 연계로 좀 더 넓혀가지고 가족끼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 아동센터도 되지만 거기서 가족이 같이 엮어 나갈 수 있는 가족센터, 그런 중심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가족 서비스라는 게 부모님들이 문제가 되게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아요. 요즘 이혼율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도 결국은

가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초점도 중요하지만 부모 서로 간에 어떤 관계 개선이나 또 그런 관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뭐 가족동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괜찮을 거 같아요.’

라. 아동정책 개선 방향

보호자들은 수급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는 식권이라든지 급식비 또는 의료비를 받을 때 아동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걱정하였다. 그리고 아동 보호자에게 일괄적으로 식권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결식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고 일정 금액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식권 때문에 사용상 불편함이 있으므로 수급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금액을 지원해주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무료급식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아이들한테 식권을 가지고 가게 가서 뭐 사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사와야지 안 그러면 아이들이 굶거든요...’

‘한 달에 식권을 9만원 정도 주잖아요. 그걸 식권으로 주지 말고 돈으로 주든지 쌀로 주면 우리 식구들 한 달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우리 집 생활이 개선이 될 텐데.....내가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000원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김밥 두 줄이나 자장면 한 그릇 정도 살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아이들 3명 저녁으로는 부족하지...’

‘아이들이 무료로 복지관 다니는 것, 학교에서 급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려면 서류를 해년마다 해가야 해요..너무 번거롭고 힘들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첫째랑 둘째, 급식을 학교에서 못해준다고 해서 몇 달 동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그걸 보고 해결해 주었더라고요. 내가 직접 영양사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해주지 않았는데 담임이 나서서 해주니까 그렇게 바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왜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병원비가 무료이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아직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지만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에 가면 사람이 많을 경우 차례가 밀릴 수도 있고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뜬 곳으로 보낸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요...’

‘수급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진짜 수급자일 사람도 수급자들)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한테 상처줄까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4인 기준으로 월 생활비가 120만원이라고 하잖아요. 나라에서 정한게. 그런데 나라에서 정한거랑 동사무소에서 정한 게 틀려요. 나라는 120만원이지만 동사무소는 102만원 이에요. 그럼 벌써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모자가정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수급자가 됐어요. 제가 차가 있는데 그게 10년 넘으니깐 수급자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모자가정이든 부자가정이든 차는 요즘은요 사치품이 아니에요. 차는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쓰레기봉투...솔직히 20리터는 되어야지 쓰레기를 모아서 버릴 수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너 이거 내가 줬어. 명목상으로. 10리터짜리... 그거 줬으니깐... 그것도 다달이 오는 게 아니라 3달에 한번씩 20장씩.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해줄거 다 해줬다 했겠죠... 나라에서 몇 장을 주라고 하는지. 몇 리터를 주라고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다 해줬다 이거겠지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거지.....’

아동보호자들은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이나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가족단위로 가족수당과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아동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국가가 이렇게 보면 전혀 자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지원이라든가 후원... 이라든가... 그 안의 생활 같은 것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사비 털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맛벌이 부부를 위한 혜택을 해 줘야지. 그 엄마들이 시간 짬이 나서 아이들을 좀 더 볼 수 있잖아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 많더라구요. 우리도 힘든데 우리보다 더 힘든 가정이 여기에 많더라구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보통 아빠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한다고 치지만 엄마들이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더 벌기 위해서 보통 7시에 끝날 일을 9시 10시까지 연장시켜 일을 하잖아요. 보통 여기에 다니는 생활이 어려운 엄마들이 좀 좋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보다는 소위 말하는 식당 다니거나 갈빗집에서 식당일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엄마들이 10만원 20만원 더 벌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니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준다면 좀 일찍 올 수 있잖아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니깐 나라에서 돈을 각 가정에 주면은 엄마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애들만 뒹치다꺼리 하면 뭐 애들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죠.'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종사자의 시각에서 국가 및 지역사회가 실행하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에서 앞으로 개선되어 하는 점은 아동중심적 정책 실행을 위해 아동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실적위주의 센터 운영 및 비합리적인 센터 운영을 합리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 교사의 안정된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장에서 온전한 복지를 원한다면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 (필요하죠)....'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동중심으로 가야하는데 결과만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아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더 다른 어떤 동사무소나 아니면 파출소 같은 데랑 지역연계를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그 실무자들에 대한 지금 현재 운영비로만 운영이 되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그 어떤 아동... 그 방과 후 교실로서의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상담 그리고 아동의 실질적인 그리고 가족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럼요... 여기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 달에 40만원 나가는데... 그죠? 봉사에 가까워요...'

'실정상으로 보조금의 문제는 인건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실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복지 시스템은 네트워크이거든요... 저도 지금 그 네트워크 멤버인데 말로만 네트워크 되어있어요... 지역, 시민단체로... 근데 그것이 집행하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있고 주체... 주로 메모하는 단체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센터의 기능은 없어요.'

'지역... 안산 지역아동 협의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 씩 월례회 같은 거 있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 회의가 있고... 프로그램 같은 거 공유하고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끼리는 있는데 복지관이나 아동학대 예방센터, 보호기관이랑은 아직까지는 저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종사자들은 아동복지정책을 포함한 국가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아동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교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게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쪽 내려오는 게 아직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청소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일관적으로 어떤 정책 하나를 세우면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스타트 운동도 이제 시작

되고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좀 더 다른 복지관도 확대되면서 그게 좀 자리 매김 됐으면 좋겠어요.’

‘...최고한도(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 중에서도 효과적이고 실적 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느 순간 무슨 얘기해봤다가... 또 어느 순간 흐지부지 없어지고 또 다른 정책이 나오고...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기를 끝까지 하시라 그 거예요...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지원이에요. 공부방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 이해하지 못해 공부방에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학교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정부에서 방학 때 및 학기 중에도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 방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보완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방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공부방 교사들도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다면 아이들의 문제에 보다 세밀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요...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정부정책을 암만 들여다봐도 아동인권 재정만 하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또는 그 아동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안하는지. 일선에선 몰라요.’

‘국가 정책이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펼쳐야 하는데... 지금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요...보면 프로그램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애들한테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모한테도... 해줘야 한다구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애도 좀 알고...솔직히 부모 교육들도 다 낮에 이루어지더라구... 그래서 이런 엄마들을 위해서 야간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누가 낮에 일 안하고 교육 받으러 가겠어요...’

(3) 아동보호시설¹³⁾

가.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태도

보호자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체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등에서 사교육을 대치할 수 있는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학원과 같은 사교육 기관에 보내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센터나 공부방에서 공부를 시켜주거나 음악/미술 등 예능 교육을 시켜줌으로써 보호자의 사교육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공부를 하는데 매일 매일 다른 과목을 또 시험을 매일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매일 해 가지고 사람은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뭐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 같고

‘.....애들이 여기서 피아노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우고 수화도 배우고 종이접기도 하고 무슨 만들기도 하고 하트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아이들을 나가면 돈 내고 (사교육)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돈이 없으면 (사교육을) 못 받잖아요. 환경이... 남들이 받는 거 우리 애들이 못 받는 거를 사랑으로 베풀면서 해주는 거 같아요. 이 쪽에서는’

‘제가 특별히 뭘 못하니까. 선생님들도 유능한 분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전에 있던 영어 선생님도 유능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복지관이래서 그냥 그런 선생님이 오시는구나 했더니 생각보다는 시설도 깔끔하고 선생님도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하고 가면 대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학원은 보통 가르치고 가버리잖아요....’

‘자원봉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영어든 수학이든 그런 것을 일주일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학원 안가도 되고...’

13) 본 연구에서 아동보호시설은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지칭하는데 다른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함의를 주기 위해 통합적으로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하였음.

‘.....저는 대충 여기 와서 놀겠거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풍선 만들기를 한다거나...학습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여기서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놀랬거든요....응급상황에서 소방서에서 진짜 오시고... 케익 만들기 때 정말 빵 만드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단순히 학습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별도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도 안 들어가고, 문화경험도 하고 뭐 예습/복습도 하고. 또 가서 책 읽고, 가서 뭐 그림 그리고 뭐 애들은 또 여행을 얼마나 잘 다니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요...’

‘저는 만족해요... 선생님들도 맨날 들어오고 감사도 항상 오고... 프로그램 교체도 되고 좋게 생각하는데 근데 어떤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다 다른 거 같아요. 전 만족해요. 글쓰기도 배우고 논술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견학도 가고... 이런 시스템 맘에 들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여기에 다 데리고 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고맙죠. 아주 고맙죠. 이제 교육비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일단은 해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이 하려고만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효과가 월등하게 아주... 그냥... 잘... 나타나더라구요’

‘....덕을 봐서 좀 수학 괜찮게 시험 봐요. 학교에서도 그렇구요...(학원가는)친구들 덜 부러워하더라고요...’

‘좋더라구요...솔직히 놀이공원이라든가 애들 데리고 그런데 가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데리고 가주는 거 같고 식물원 가주고....’

‘....또래를 만들어서 놓고 또 공부도 하구요.....제가 쓸 수 있는 신경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많이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편하죠.’

‘공부 위주가 아닌 것은 좀 그런데... 선생님이 많이... 별로 없잖아요. 전문직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직장 생활로 멀리 못 가는데 영화도 보러가기도 하고 그랬으니 미술이랑 뭐 다양한 인성, 그런 것도 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저녁시간이나 집에 보호자가 없는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의 야간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특히 저녁시간에 일을 하는 보호자들은 아동들끼리 집에 있는 것보다 믿을만하게 운용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아동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내가 당장 말길 일이 없더라도... 남들이 급할 때 말기면 유용하게...’
‘맡겨놓으면 좋죠... 아이들끼리만 있으면 불안하고 언제나 좀 마음이 안 좋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관이 있으면 마음 놓고 맡기죠.’
‘(아동보호 기관이나 센터가)생긴다면 맡기죠... (아이)혼자 밤에 잠자는 게 좀 그럴거든요... 무섭고... 믿을 만하면..(기관이)믿을 만하면 애를 맡기지요...’
‘믿을 수만 있으면 맡기겠어요.’
‘말길 곳이 있으면 훨씬 좋죠. 아이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좋죠.’

대부분의 아동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하거나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몇몇 아동들만 재미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고 어떤 아동들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비교하여 공부방에 가는 것을 또래 친구들에게 노출하기 꺼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소득층 아동들만 공부방을 이용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아동들이 느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저소득 아동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보편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부방에서 좋은 것이)없는데요. 저는 공부방에서는 공부만 하는 줄 알아서요.’
‘방학 때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공부방 올 때)좋아요.’
‘(공부방에서)재미없어요... 어... 없는데.’

‘많이(재밌어요)’

‘음... 뭐 배우는 거도 있고... 그런 거 있어서 좋아요.’

‘(공부방 밥)별로예요.’

‘짜증날 때는 오기 싫어요.’

‘음... 공부 별로 안 해서 졸긴 졸은데요, 생활이요 너무 빨라가지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친구가요 여기 미용실이 옆에 있거든요? 근데 개네... 공부하다가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그 다음날에 물어보는데요, 너 학원 다니냐고 자꾸 물어봐갖고요 아니라고 그래서 좀 그래요.(고개를 숙이고 우울해하며)’

나. 지역아동센터 운영문제

종사자들이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일관된 정부행정의 부재나 행정상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나 지원금 지급 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일관된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사실상 복지 담당자가 좀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상 처음 말을 때 복지 담당자가 일 년에 네 번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자체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를 만드는데 뭔가 정보를 얻고 배운다는 것 보다 제가 직접 다 찾아보고 제가 가르쳐야 합니다. 서식도 제가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애착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두세 달 있다가 바뀌니까... 대부분의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동사무소만 해도 지금 세 번 네 번째 바뀌거든요. 급식비를 제가 처리를 할 때도 일일이 가서 다 설명을 해줘야 해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이 잘 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있으면서 하는 일이 매일 사람이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서류적으로 잘못됐다고... 우린 분명 다 한건데 다시 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보냈는데 없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자기가 제대로 인계를 못 받은건데 우리한테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정부행정가와 센터) 협력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지시자가 되요. 같이 우리의 목적이 아이한테 혜택을 줘야하는 입장인데 당신이 우리한테 고압적으로 하는 위치가 아닌데 자기네가 주는 돈이 아닌데 주종의 관계로 가려고 하는...’

또한 정부입장에서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운영을 고려하여 센터에 필요한 현실적 지원금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그 운영비 한 달 운영자금에 뭐 얼마이상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정부입장에서도 야 이거 돈 다 없어도 너희 충분히 이달 운영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돈 아니냐. 더 힘든 곳으로 주자라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아주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일단 현실이 그럴지 않으니까 ’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가 우리도 장소가 있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부랴부랴. 그것도 (돈을) 꺾가지고..... 먼저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해놓고는 모든지 뒤에 후원 식비랑...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계획을 짜서 (아이들에게) 줄 텐데 줄지 안줄지 모르니까 (프로그램 등을)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범이었으면...’

(4) 아동과 보호자

가. 보호자와 아동과의 관계

보호자들이 자녀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거나 대화시간 및 대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자녀의 일상을 파악하고 있고 하루 최소 한 시간이상정도 대화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학교생활, 친구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많은 보호자들이 늦은 귀가 등으로 아이들과 충분하게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으며 주로 식사시간에 간헐적으로 해야 할 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공부 등에 관한 질문 만하고 있어서 실제 아이들의 고민이나 학업문제, 친구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사이의 대화는 단순하게 이야기 하는 기능을 넘어서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나 비행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 사이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지 못함으로써 아동들의 교육문제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아동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즉 아동들의 의식주문제와 같은 신체적 물리적 방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서적 방임이나 보호책임의 부재와 같은 아동방임 유형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을 추론 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밥 먹을 때, 아침이라든지 보통 오늘 어떻게 네가 뭐 뭐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학교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 숙제는 했니? 물통은 꺼내 두었니? 오늘 반찬은 뭐였니?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에요...’

‘뭐... 밥 먹으면서 하니까... 한 30, 40분 되는데 이제 그것을 길게도

하고 뜨문뜨문 생각나면 물어보지...'

'저녁에 좀 얘기하죠... 낮에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핵심만 5분 정도 이야기 하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숙제 챙겨줄 때 좀 하고....'

보호자들이 아동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어도 하루 한 시간 정도 대화한다고 응답한 반면, 아동들은 보호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즉, 보호자는 아동들과 나름대로 충분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동들은 보호자의 일상적인 대화가 부족하며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한 시간 30분... 아침, 저녁, 학교 갔다 와서.'

'4분정도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 하는 거 이야기요. 또 동생이 괴롭힌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밥, 청소(정리정돈)를 잘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얘기 많이 안 해요. 엄마는 저보다 형아랑 많은 얘기를 해요...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요.'

'잘 안 나뉘... 할머니가 공부방 갔다가 집에 가면 꿀아떨어져 있어요.'

'그냥 한 30분 정도?... 그냥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말하고, 그냥 뭐... 뭐 하는 것도 말하고, 뭐 숙제 같은 것도 말해주고 그래요.'

'음... 한,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해서 30분이요...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길 때가 1시간이고요. 짧을 때는 10분인데요... 아니요. 피곤한 날에는 (보호자가)그냥 자는데요... 피곤해서 오자마자 그냥 자는데요.'

'엄마가 얘기는 뭐 저한테 공부 잘 했냐고 그런 거 물어보시는데요. 저는요 대답을 안 해요... 제가 하기 싫어서요... 글썄. 하루에 두 번 정도... 엄마가 얘기를 하면요 그 저는 대답을 안 해요. 하기 싫어 갖고'

센터나 공부방에 다니는 아동들은 보호자에게 원하는 것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말

하고 않고 있거나 원하는 것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보호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머니가)아빠 오면 아빠한테 (원하는 것을 사)달라 그러래요.’
‘네. (갖고 싶은 것에 대해 보호자에게) 이야기 한적 있어요. 근데 자주
는 안 해요... 엄마는 내가 말할 때 거의 게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엄마가 잔소리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야기를 안해
요.’
‘그냥 부탁하면 좀 (말하기 어려워요)...’
‘(갖고 싶은 것 말해보면)없어요. 갖고만 싶고...’
‘엄마가 안 사줘요.’
‘아뇨...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모르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바라는... 뭐, 없는데요... 음,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같이 놀아주는 로봇... 심심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 노는 토요일

보호자가 없는 노는 토요일의 경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방치
된 상태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
분의 보호자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간보다 더 늦게
까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노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
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보호자들은 아이들과 함께
노는 토요일에 가족 단위로 휴일을 보내고 있었다.

‘제가 없을 때 아이들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롤러를 타거나 그래요...’
‘처음에(아이들이 어릴 때) 가스 위험하니까 그런 거 다 잠그고 나가거
든요. 애들이 뭘 만질지 몰라서... 그런 거 조심시키고... 보일러고 끄고
나가고...’
‘아이들끼리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봐요...’

‘지네가 텔레비전 보든지. 냉장고에 뭐 꺼내 먹든지..앞에 나와서 놀든지...’

‘집에서 TV 본다든지... 컴퓨터를 해요... 밖으로 못나가게 하거든요...’

‘(노는 토요일)에 각자 할 일을 해요... TV를 보거나... 올해는 한 번도 온 가족이 함께 놀러가 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일 하러 가면은 상록호텔 물탄 공원(보호자 직장 근처)에 와서 노는 거예요. 자다가... 엄마 나올 때 까지도...’

‘할아버지 댁에도 가고... 안가는 날은 공원으로 가고, 컴퓨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토요일이 제일 문제거든요...여기(센터) 운영안하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위험 상황을 누누이 이야기 하죠. 집에서 놀게끔 하고 식사 해놓고... 아이 믿고... 그냥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아동들은 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휴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그냥 집에서 방치되고 있었으며 일부 아동들은 공부방에 가거나 나가서 놀았고 몇몇 아동들은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에서) 그냥 놀기도 하고 그래요.’

‘어...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보거나 밑에 놀러가요... 아니, 친구들이랑.’

‘음... 아침에 밥 먹고 또 어떤 때는요. 아빠가 보는 거 TV도 보고요. 또 학교 숙제하고.’

‘공부방에 갔다가 교회가요. 일요일에도 교회에서 보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자주는 안가지만 영화관에 가요. 저번 주에도 영화관에 갔었어요.’

‘음..밖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거나 그냥 컴퓨터 할 때 있고, TV볼 때 있고. 엄마랑 아빠랑 놀러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럼 밖에 나가서 놀아요.’

‘대부분 친구들이랑 놀러가거나, 자연학교라는 곳에 가는데.’

‘엄마가 놀러 데리고 갈 때도 있고, 밖에서 놀 때도 있고 그래요.’

아동들이 노는 토요일이나 휴일에 보호자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는데, 아동들은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가장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게임이나 스포츠 등을 말하는 등 보호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즉 아동들은 노는 토요일이나 휴일에 보호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동산 같은데 가고.’

‘놀러 가는 거요...’

‘놀러 가는 거’

‘놀러 가는 거... 아뇨... 가족하고 같이 안가고요 따로..’

‘축구. 여기서 수요일마다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어... 뭐하고 싶냐면... 같이... 같이... 여행가고 싶어요.’

‘음... 그냥... 뭐, 같이... 노는 거’

‘여행가고 싶은데요...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십자수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리도 해보고 싶어요.’

‘같이... 놀 때도 같이 놀고 싶어요. 재밌게’

다. 야간보호 문제

저녁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 보호자의 경우 아동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위사람들이나 조부모와 고모 같은 친인척 또는 센터 선생님 등에게 연락을 하라는 등의 언어적 조치이외에 다른 행동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아동들이 센터에서 돌아온 후 보호자가 올 때까지 사실상 방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간은 저녁시간이어서 아이들만 집에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역 사회의 보호가 없을 경우 아동방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몇몇 부모들의 경우 아이들의 초등학교 3학년정도만 되도 혼자 집을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이들을 믿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보호하는 것보다 혼자 집을 지키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여아들의 경우 보호자가 없는 시간에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위에 부탁해요... 큰애들이 알아서 있는 거지...’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라도 연락을 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은 우체부가 와서 아이를 뒤에서 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넣고 해서 지금은 일단락된 상태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순간 아무리 대피 하려고 누구한테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소리친다 하더라도 바로 앞에 집에서 누가 당하고 있어도 그게 잘 안되니까 참 안타깝구요...나와 있으면서도 늘 불안한게 그런 부분이죠...’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텔레비전보고 컴퓨터 하고 책 좀 보다가 자도 다른 거 뭐 해라 할 거는 없구요... 그렇게만 하기에 시간이지나고 정도만 하면 될 거 같고. 또 우리가 어디 좀 며칠씩 여행을 간다던지 비울 때가 좀 간혹 있어요. 부부가 다 없을 때, 그럴 때는 여기 선생님 주변에 어른들이 이제 잠시 봐 주세요...’

‘이제 혼자 잘 있어요... 커서 3학년이라서... 이젠 커서 잘 있고 안 말기고... 다 알아서 하니까’

‘주변에 부탁할 사람 없어요. 전화하지요. 애들한테. 오늘 엄마 좀 늦는다. 그러니까... 혼자 밥 먹어야 한다... (엄마가 올 시간까지) 안 먹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아동보호시설에) 말기고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공부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엄마가 올 때 8시까지 봐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불안해. 그것도. 차라리 나는 아이들이 셋이라서 내 집안에 갇혀놓고 사는 게 낫지 나가니깐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가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하는데 공부방에는 이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엄마만 안된다 뿐이지 가면 해준다는 건데... 그런 얘기 들으면 선생님들이 차라리 엄격하게 엄마들같이 봐주지 않은 이상 그런 보호센터도 불안하다는 거죠..... 집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나감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세상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잖아요. 그런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하죠...’

종사자들은 아동보호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센터에서 돌아온 후 저녁시간동안 야간보호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 맞벌이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센터에서 저녁시간까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아동들이 저녁시간에 그냥 방임된 채로 홀로 집에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아동들의 야간보호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자 분이냐 남자분이냐... 그렇게 되면 엄마나 아버지가 야간에 나가시면 아이들은 그 밤 세도록 있는 동안 그 아이들은 방임되어 있고.’

‘예. 부모님들이 일단은 맞벌이 부부로서 뭐 식당일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10시에 퇴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말에는. 그래서 야간보호의 기능을 지역아동센터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 일을 일단은 자원봉사차원으로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보호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특성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맞벌이이거나, 편모, 편부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간들이 다 쉽게 얘기하면 방치된 상태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애네들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고, 그 시간 들을 자기 또래나 아이들끼리랑 어울려서 다니는 게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 공부도 하고 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시설 필요)

‘어린이들이 저녁 먹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찍 집에 가라해도. 여기서도 밥 먹여놓고 공부를 시키면 해도 공부도 안해요. 이상한 어린이들이나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아예 붙잡아 놓고 집까지 데려다 줘도 집에서 나와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도 없고. 부모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종사자들은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동안 방임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나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야간 보육교사라든지, 보호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애들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지역사회 안에 저녁시간에 살펴보면 놀고 있는 공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빈곤층 아동들의 경우 집에 가면 혼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여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그 공간에서 저녁시간동안 시행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안에 모든 기관들의 네트워크구축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동들은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할 때 무섭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동들이 집에 혼자 있는 경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거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 비행이나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의 야간보호문제를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서운 기분... 조용하고 누가 나타날 기분이 들어요.’

‘혼자 있는데요... 혼자 있거나, 친구들 불러서 같이 자는데요.....아니요. 문은 열어놓고 자는데요... 네. 귀찮아서 전화를 안 해요.’

‘전에 TV가요... 지금 TV는 새 건데요, TV갈기 전에 갑자기요 TV가 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서웠어요. 그때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갑자기 TV가 꺼져서 깜짝 놀라 갖고요.....’

보호자 없을 때 대부분의 아동들이 집이나 놀이터 등에서 혼자 있어야

했으며 이 시간동안 대부분 다른 아동들과 놀거나 TV 및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이 보호자가 없는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냥……. 거기서... 뭐... (동생이름)이가 뭐... 공부하는 거 심심해서 보기도 하고, 만화책 같은 것도 보고’

‘.....무섭고도 재미있어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냥 밥 먹고 누워 자야 되요. 밥도 못해먹어요.’

‘숙제도 하고, TV도 보고 해요. 방청소도 해요... 하루에 한번은 걸레질을 해요... 아니요. 가끔이요. 가끔 부모님이 동생을 재워두고 우리 집에 두고 나가세요... TV나 컴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하고 보내요.’

‘컴퓨터 하다가 지겨우면 이제... 졸려요.’

‘나가서 놀거나 TV도 보거나 글씨쓰기’

‘그냥... 그냥 동생이랑 놀다가 TV보거나 컴퓨터 하거나... 졸지는 않은 거... ’

‘동생이랑 컴퓨터 하면서 놀아요. TV도 보고... 그리고요 집에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도 몰래했어요... 근데 엄마도 아세요. 그냥 말로만 혼나요.’

‘그때는... 음... 음...(침묵)... 그냥 놀아요.’

‘집에서는 컴퓨터하거나 텔레비전 보거나 그래요...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요? 여기서 놀거나, 아니면 그냥...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 보거나 그러는데요.’

‘게임 아니면 TV보거나 아니면 숙제하는데요.’

‘여기서 못한 숙제 거기서 하거나, TV보고, 또 배고프면 또 거기서 밥 먹고, 또 TV보고 그래요.’

‘오빠는요 거의 TV를 같이 볼 때도 있고요, 그냥 오빠가 오빠만 보거나 아니면 저는 그냥 다른... 오빠 없을 때 그냥 다른 거 하고 놀아요.’

한편 아동들이 센터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거의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무서움을 느끼거나 돈을 빼앗기는 수준의 폭력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센터 후 아동보호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보호자가 아동들을 데리러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센터 또는 공부방 교사 등이 아동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어두울 때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혼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요. 없어요. 동생은... 만난 적이 있어요. 낮에. 일요일 날에 가는데 돈 뺏긴 않고 튀었어요.’

‘그땐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친구들 돈 뺏어요... 안내놓으면 죽는다고 하지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돈을 뺏어요... 보통 하루에 한번이요. 짜증나잖아요. 돈을 뺏으면 짜증나는 게 좀 나아져요... 저보다 어린아이들끼를 뺏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 집 방향에 가는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 집이 골목이라 좀 어둡거든요 그럴 땐 선생님이 같이 가줘요.’

‘그냥... 그냥 뭐 그런데요. 음... 혼자 들어가면 좀 외로워요.’

‘누가 나를 쫓아오는 기분.’

‘(놀이터)여기서 놀아요.’

‘무서웠던 적은... 조금 있어요.’

‘무서워요. 그때도 누가 막 돈 뺏으려고 했어요... 그냥 작대기 가지고 휘두르고 도망갈 생각밖에 안했는데요.’

‘(혼자)그냥 걸어가요.’

‘그... 한번은 이랬었는데요, 제 친구... 제 친구하고요 오라고 했었거든요?...근데 그때요 어떤 언니들이요 한 7명쯤 되는데요, 그 언니들이 어디로 가나 봐요. 근데 그 언니들이요 내 친구가 오락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제 친..어떤 언니가 이랬는데 너 돈 있냐? 좀 빌려줘. 언니가 내일 500원으로 줄게. 그랬는데요 그 제 친구가요 자기 말하면 안 되는걸요 애 돈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 한 100원 뺏겼거든요.’

6) 소결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들과 보호자 및 종사자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들과 보호자를 심층면접을 한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방임에 대한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인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아동방임을 단순히 아동들을 보살피지 않고 방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동방임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보호자와 종사자 모두 물리적으로 의식주 결핍 상태부터 심리적·정서적 방임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아동방임 현황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 실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거나 아동방임이 50%이상 높게 발생한다고 보고하는 보호자가 있었는데, 이는 보호자의 아동방임 인식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사자들의 경우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아동방임 비율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하여 지역사회 아동방임 현황이 심각한 상황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지역사회에서 아동방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의 불합리한 운영방법 때문에 방임된 아동들을 더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아동방임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방법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언급하였고,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아동방임 예방 대책은 방임된 아동들을 위해 보다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확대와 기관에 대한 재원 확대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아동보호종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방임 예방대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지역사회 다른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아, 아동방임 사례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발견하여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사자들은 다른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연계활동은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보호자와 종사자들은 아동방

임이나 아동안전 문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지만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대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야간보호시설이나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의 결과에서 야간방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역에서 거주하는 조소득주민을 아동보호도우미로 활용해 빈곤가정 아동들을 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 야간방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아동 야간 보호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호자들은 아동과의 대화시간이 하루 약 한 시간 정도이고, 대화 내용은 아동들의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성적 등 아동의 일상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와 아동들이 아동의 고민이나 학업문제 심리적 상태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동안 아동들이 TV나 게임 등을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노는 토요일과 같은 휴일에도 보호자들은 아동들과 함께 집에서 TV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는 토요일에 아동들은 보호자 없이 보내고 있으며 보호자와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호자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동들이 사교육을 대치하는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을 받음으로써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종사자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일관성 없는 국가행정과 불합리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 운영의 합리화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신분보장을 보장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사자들은 아동방임 예방 대책으로 아동방임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치료 서비스와 아동방임 가정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아동방임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야 함을 요구하였으며 아동방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방임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종사자들의 아동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에 따라 폐쇄적 또는 개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 스스로 아동방임과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이 낮아 아동의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아동권리가 침해되기도 하였으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아동방임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동방임 예방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었다. 한편 종사자들은 보호자의 아동방임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동방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부모상담이나 가정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의 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들은 아침은 보호자와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으나 저녁은 굶거나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동들은 학교 준비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보호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혼자 물건을 사는 등 아동 스스로 챙기고 있었으며 보호자와 거의 대화를 안 하거나 10분정도 아주 짧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들은 보호자와 노는 토요일 등 휴일에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보호자 없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혼자 약을 바르는 등 혼자 대처하고 있어서 방임된 아동이 아동안전 사고의 고위험 집단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나 공부방이 끝난 후 혼자 집에 오는 길에서 폭력 상황에 직면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아동보호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6)의 연구에서 야간 방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야간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V. 아동방임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

1. 주요 정책

아동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17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되고 신고전화 1391이 설치되면서이다. 이때부터 비로소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의심되는 사례의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그에 따른 각종 서비스가 공적인 체계 안에서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24시간 응급전화를 설치, 신고제도를 의무화하였고, 2001년 10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공적 서비스가 시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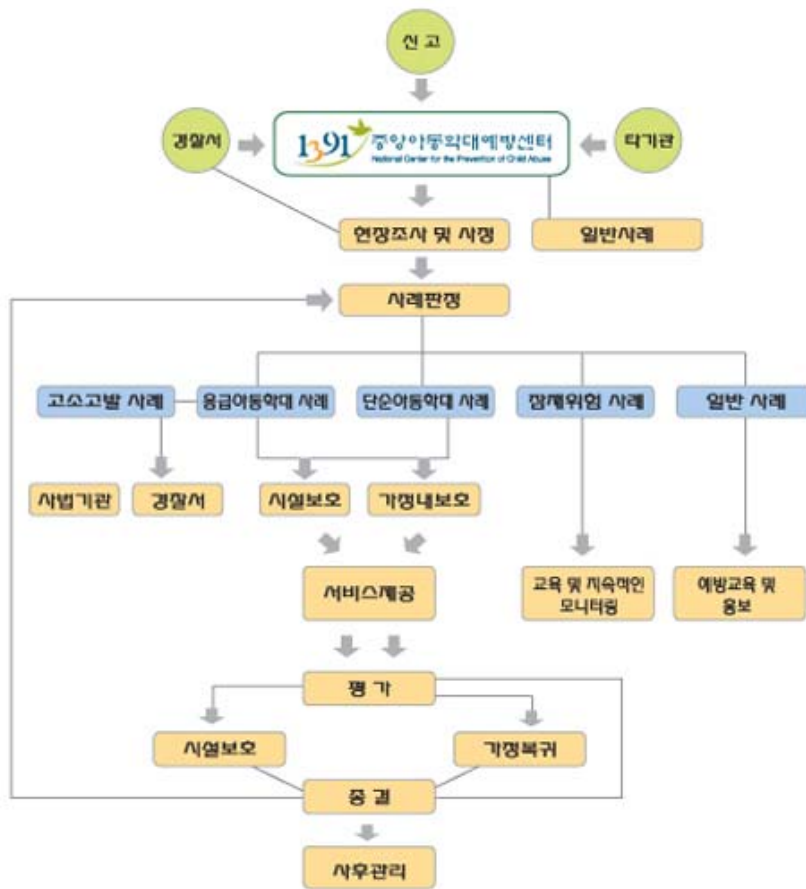
1) 아동보호체계와 아동방임

아동보호체계가 수립된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짧은 역사에 기인한 아동보호체계의 기능 및 역할, 그리고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동보호체계의 여러 쟁점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분야는 아동방임에 관한 분야이다.(이봉주, 2006).

먼저,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아동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 문제에 개입하는 국가정책과 보호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 사례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학대 및 방임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신고로부터 시작되어,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사례판정,

조치결정, 서비스계획 및 제공, 사례평가 및 종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V-1>은 이러한 아동보호 서비스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로부터 시작되어, 조사와 사정을 통해 개입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고와 조사가 아동보호서비스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V-1>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달과정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Korea.1391.org>

이와 같은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재정리될 수 있다(이봉주, 2006)

- ① 1391 신고전화 등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와 방임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 ②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에 따라 접수된 신고가 아동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 지를 사정하고 만약 그렇다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구분
- ③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실시
- ④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아동학대나 방임이 일어났는지를 판정
- ⑤ 판정결과에 따른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제공과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을 격리 보호

신고를 기점으로 작동되는 아동보호체계는 일반적으로 예방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왔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보고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례 역시 신고에 의해 접수된 사례에 국한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례에 개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와 방임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서 방임만을 구분하여 별도의 보호체계를 작동시키고 있지는 않다. 학대의 한 유형으로서의 방임은 단독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그 업무 특성상 동일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체계에 대하여 이봉주(2006)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신고되는 유형이 다양해져 전통적 표준화된 단일 서비스 접근법으로 더 이상 다양한 학대 및 방임 유형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방임의 경우, 빈곤에 기인한 방임에 대하여 기존의 신고조

사를 통한 심리·상담 위주의 단조로운 개입방법으로는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의 지원이라는 두개의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고체계를 기반으로 성립된 아동보호체계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도구라기보다는 아동학대의 조사를 통하여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사법적 도구의 성격이 더욱 부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학대를 비롯하여 방임된 아동에 대한 현재의 보호체계는 아동보호체계의 궁극적인 지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작동시킬 것인지 아니면 위기개입을 효과적으로 함으로써 아동권 보호에 보다 강조를 둘 것인지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관하여 우리의 짧은 아동보호의 역사는 적절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격리와 위탁보호를 통한 아동보호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 최근 가족중심의 서비스 강화로 정책을 변화시킨 것(보건복지부, 2004)은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 혹은 심각한 고위험군의 아동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 수준에 처해있는 아동과의 차등화된 개입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한다.

설문과 면접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동의 권리 특히 방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적 서비스 체계가 아동복지, 가족복지, 지역복지체계 등과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혈연 중심의 가족에 대한 강한 회귀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가족관이 지배하고 있고 입양가족이나 위탁가정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경험적 부재 또한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친권개입의 수준을 가늠하게끔 하고 있다. 즉 학대나 방임으로 판정된 아동들의 재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은 단순히 원가정으로의 복귀만이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2) 아동방임 개입 및 사정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조사하여 사정하는 것은 이후 아동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과 서비스의 불충분함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방임 개입 매뉴얼을 제작했으며, 이 매뉴얼에는 아동방임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및 예방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방임매뉴얼의 방임사정은 아동학대업무수행지침에 의한 스크리닝 척도와 위험사정척도를 사용하여 개입과 서비스 조치를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척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응급아동학대사례¹⁴⁾, 단순아동학대사례¹⁵⁾, 잠재위험사례¹⁶⁾, 일반사례¹⁷⁾로 판정하며 이러한 판정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 아동의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복귀가 있다. 두 척도는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 요인, 생활환경 요인으로 구성되며 스크리닝 척도는 20문항, 위험사정척도는 66문항이다.

사례판정에서 중요한 위의 두 가지 척도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동방임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동의 위생상태, 부모양육기술, 주거환경 위생상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별도의 방임판정기준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학대판정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임을 정도와 수준에 따라 판정하고 그에 따른 개입을 결정하기에는

14) 아동학대가 현재 발생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12시간 이내에 긴급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례, 성학대이거나 유기 등인 사례, 방임사례일 경우 아동의 연령이나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응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15) 아동학대가 발생되었으나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상처가 경미하고 학대의 지속성 정도가 미약하여 48시간 이내에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례, 가정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아동이나 가족의 욕구가 충족되고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6)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 아동학대사례이기보다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부족으로 인한 일회성 신체적 체벌 등으로 판단되는 사례

17) 아동학대와는 관계없는 아동문제로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 아동양육 및 정서행동 문제와 관련되어 전반적인 아동상담을 실시한 사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방임 판정기준의 부족은 다양한 아동방임사례를 명백하게 방임으로 규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학대판정기준을 사용할 경우 방임으로 신고된 사례일지라도 그 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아동방임사례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각한 사례로 결정되기 힘들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방임의 개입은 신고접수 -> 현장조사 -> 사정 -> 격리 -> 서비스 등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V-1> 아동방임에 대한 개입절차 및 내용

개입절차	내용						
I. 신고접수	<table border="1"> <tr> <td>목적</td><td>· 신고접수 된 방임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 및 학대의 지속성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함.</td></tr> <tr> <td>방법</td><td>· 신고접수 시 신고자에게서 신고목적,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대의 실제 발생여부,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함. ·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해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td></tr> <tr> <td>고려사항</td><td>·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 아동학대사례로서의 개입여부 판단</td></tr> </table>	목적	· 신고접수 된 방임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 및 학대의 지속성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함.	방법	· 신고접수 시 신고자에게서 신고목적,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대의 실제 발생여부,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함. ·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해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고려사항	·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 아동학대사례로서의 개입여부 판단
목적	· 신고접수 된 방임사례의 응급성 정도,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 및 학대의 지속성 여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함.						
방법	· 신고접수 시 신고자에게서 신고목적, 신고자의 인적사항, 학대의 실제 발생여부,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등과 같은 정보를 파악함. · 원활한 사례개입을 위해 정보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고려사항	·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 아동학대사례로서의 개입여부 판단						
II. 현장조사	<table border="1"> <tr> <td>목적</td><td>·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학대여부 확인 및 학대위험정도 파악 · 서비스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조사</td></tr> </table>	목적	·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학대여부 확인 및 학대위험정도 파악 · 서비스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조사				
목적	· 피해아동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학대여부 확인 및 학대위험정도 파악 · 서비스제공을 위한 충분한 기초자료 및 정보조사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7 235 603 658">유의 사항</td><td data-bbox="603 235 1189 658">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함. • 학대행위자 및 보호자에게 현장조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인간존엄성도 보장 • 필요할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조사 실시 •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사회적 요인 파악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것 </td></tr> </table>	유의 사항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함. • 학대행위자 및 보호자에게 현장조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인간존엄성도 보장 • 필요할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조사 실시 •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사회적 요인 파악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것		
유의 사항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를 직접 대면함. • 학대행위자 및 보호자에게 현장조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 피해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인간존엄성도 보장 • 필요할 경우 경찰과 연계하여 조사 실시 •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사회적 요인 파악 •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것				
III. 아동방임의 사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97 692 603 1449">고려 요인</td><td data-bbox="603 692 1189 1449"> • 부모성격요인 : 강점,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인간관계기술, 판단력소유여부, 스트레스 정도, 지적수준손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여부 또는 진단력, 약물남용, 우울증상, 부적절한 감정, 충동조절부족, 도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여부 • 가족체계요인 : 가족의 강점, 수입, 상호작용 유형, 안정성, 경계, 구조와 조직의 정도,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존재여부, 가족 내 아동의 수와 공간 • 환경적요인 : 주거, 양육에 대한 이웃의 지원 여부,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도 •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및 원인파악 </td></tr> <tr> <td data-bbox="497 1449 603 1697">척도 사용</td><td data-bbox="603 1449 1189 1697"> • 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의 활용 : 아동학대사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사례판정을 돕는 척도로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 보호요인으로 구분됨. 척도사용 후 조치사항과 개입방향을 계획함. </td></tr> </table>	고려 요인	• 부모성격요인 : 강점,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인간관계기술, 판단력소유여부, 스트레스 정도, 지적수준손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여부 또는 진단력, 약물남용, 우울증상, 부적절한 감정, 충동조절부족, 도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여부 • 가족체계요인 : 가족의 강점, 수입, 상호작용 유형, 안정성, 경계, 구조와 조직의 정도,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존재여부, 가족 내 아동의 수와 공간 • 환경적요인 : 주거, 양육에 대한 이웃의 지원 여부,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도 •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및 원인파악	척도 사용	• 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의 활용 : 아동학대사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사례판정을 돕는 척도로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 보호요인으로 구분됨. 척도사용 후 조치사항과 개입방향을 계획함.
고려 요인	• 부모성격요인 : 강점, 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인간관계기술, 판단력소유여부, 스트레스 정도, 지적수준손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여부 또는 진단력, 약물남용, 우울증상, 부적절한 감정, 충동조절부족, 도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여부 • 가족체계요인 : 가족의 강점, 수입, 상호작용 유형, 안정성, 경계, 구조와 조직의 정도,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존재여부, 가족 내 아동의 수와 공간 • 환경적요인 : 주거, 양육에 대한 이웃의 지원 여부, 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도 •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 및 원인파악				
척도 사용	• 아동학대위험사정척도의 활용 : 아동학대사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여 객관적인 사례판정을 돕는 척도로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 보호요인으로 구분됨. 척도사용 후 조치사항과 개입방향을 계획함.				

	· 사회망사정책도 : 공식적·비공식적 지지자원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양과 질적인 사정을 가능하게 함. (생태도 및 사회자원연계망지도)
IV. 방임아동의 격리	고려 사항 · 아동의 신체적 건강에 입하는 상해의 심각성 및 위험의 응급성 정도 · 아동연령과 장애 ·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 · 아동학대력 · 아동양육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의 동기 및 능력 ·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성인의 활용여부 · 지지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활용여부
	원가정 복귀 계획 · 부모에게 아동을 언제 돌려보낼 것인지 명확한 일정계획 · 아동의 복귀를 위해 달성해야 할 성취목표 · 아동의 복귀와 성취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모, 일시보호시설 담당자, 상담원이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V. 아동방임에 대한 서비스	통합적 서비스 · 방임정도가 심한 가정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개별상담, 행동수정요법, 개별·집단 부모교육, 가족치료 등 다양한 방법의 개입과 함께 구체적이고 지지가 될 만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연결시켜주어야 함. · 아동복지기관, 법률기관, 학교, 병원,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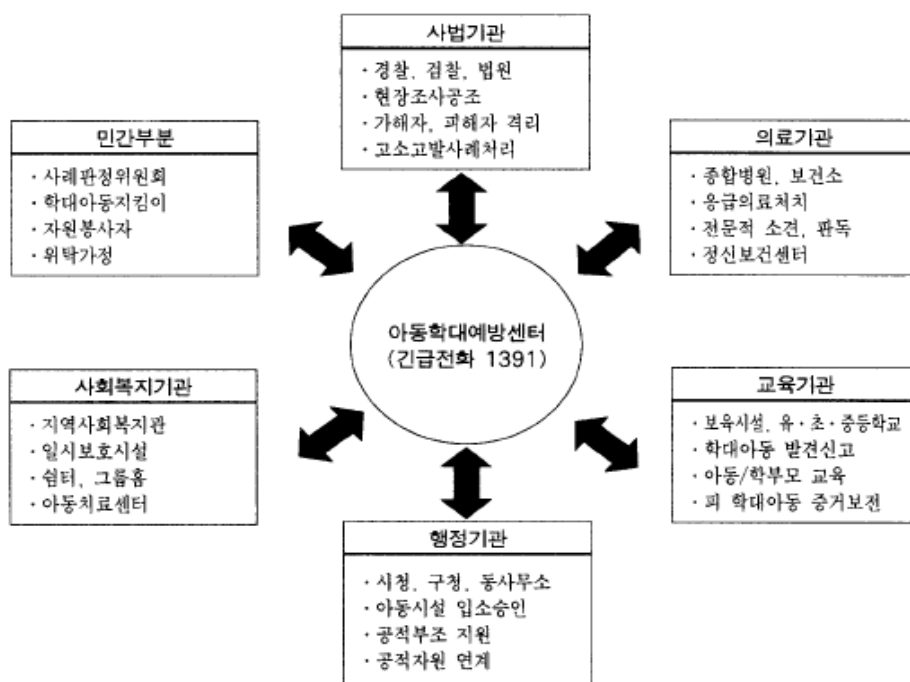
		을 만들고 내부적인 프로토콜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족 중심 서비스	· 방임된 아동의 주양육자에게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서비스제공이 보다 성공적임.
	가족 보존 서비스	· 가족전반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둠. · 구체적이고 지지적이며 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함. · 6개월 이내로 단기간 개입함. · 잘 훈련된 지지적인 상담원들을 활용함.
	집단적 접근	· 집중적인, 문제 중심 사례개입 및 상담기법 · 행동적 접근/ 사회기술훈련 · 비공식적 지지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 협력자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
	치료	·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치료적 아동보호 · 취학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법적 개입	· 방임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가족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개입이 필요함.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방임가족과 대면하는 것은 아동의 양육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방임가족에게 적절한 아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음.

출처 : 아동방임 개입 매뉴얼 (200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3) 관련기관과의 연계

아동보호서비스체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조사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을 위해 보호네트워크의 긴밀한 연계는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중요한 행위자와 협력관계는 <그림 V- 2>에서와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V-2>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네트워크



출처 : 정윤수(200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

첫째, 사법기관(경찰, 검찰)과의 연계로서 경찰은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의 현장 동행과 함께 위험한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현장조사, 응급처치에 대한 조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학대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과의 연계로서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치료자이고 또한 가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소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적 행위자이므로 이들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피해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다.

셋째, 교육기관의 연계로서 교육기관의 종사자들은 아동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학부모와의 면담이나 교육의 기회가 많고 학비나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하여 가정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행정기관과의 연계로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행정기관간의 협조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사례접수, 현장조사,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로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발견, 보호, 치료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많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일시보호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룹홈과 쉼터에 입소시키고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들과 협조한다.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연계하는 센터는 아동의 관찰 및 사후관리, 치료프로그램지원, 어린이집 이용, 결연, 재가서비스 제공 등 여러 측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학대보호 및 예방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기는 하나 연계수준은 낮은 편이며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방임의 보편적 확대를 결과할 수 있으므로 사회전반의 이해와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나가

야 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가로막는 관련 법규정과 제도에 대한 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2. 개선방안

1) 아동방임 개념의 확대

“아동방임이 방임되고 있다”는 논의의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적 합의마저 미흡한 상태에 대한 지적을 함의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아동방임은 학대의 유형으로 인식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편상 불가피하게 아동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필요이상의 과보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요 외국사례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동보호에 대한 몇몇 국가들의 개입과 제도적 기준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보면 한국사회의 아동들은 거의 대부분 방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미국과 영국 등의 아동방임 발생율이 높다는 점은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의 정립이 이루어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우리사회와의 차별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아동권의 확보를 위해 아동방임에 대한 우리사회의 기준과 인식은 보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아동방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선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4항에 의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며, 이 경우 방임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에서는 방임을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의규정으로부터 보호자는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의 경우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기관이 최근 발간한 「아동방임 개입 매뉴

열」에서는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표 V-2>와 같다.

<표 V -2> 아동방임 매뉴얼에서의 방임구분

방임의 유형	물리적 방임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3)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4) 아동의 보호를 거부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부탁하지 않은 채 가정에서 아동을 무기한적으로 내쫓음. -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동의 보호를 거부함. - 외견상으로만 아동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아동을 계속해서 옮김.
	교육적 방임
	1) 양육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 의무취학연령인 아동을 학교에 등록시키지 않음. - 장기적인 무단결석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입하지 않음. - 비합법적인 이유(예, 일하기 위해, 형제를 돌보기 위해 등)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있도록 함. 2)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3)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권고된 치료적 교육서비스를 거부함. - 특수교육 또는 학습장애로 진단받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합당한 이유 없이 방치함.
	의료적 방임
	1)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신생아에게 의료적으로 지시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보호 거부 : 신체적 상해, 질병, 진료조건, 장애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권고에 따르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음. - 의료보호 지연 : 전문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심각한 건강문제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의료보호를 하지 않음. 2)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3) 태아기 약물노출 - 태아기에 약물과 알코올을 노출시키는 것
	기타
	1)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킨 뒤 보호자가 사라진 경우 2) 아동의 출생 후 호적에 올리지 않는 것

위와 같은 방임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러한 유형의 방임을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파악하며 동시에 적절한 판단을 통해 개입을 하는 데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위에서 정의된 방임은 비교적 심각한 유형의 방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약한 수준의 방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아동방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 및 교육적 효과가 다소 낮을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서적 방임과 인지적 방임이 간과되고 있는 대표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방임의 개념을 넓게 정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효과성에 있어서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현재도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개념적 범위만 확대하여 정의했을 경우 방임으로 사정된 다양한 수준의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임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과 국가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방임은 보다 확대된 개념적 지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다.

미국아동복지협회가 구분한 14가지 유형의 방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동방임의 정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방임을 “양육자(보호자)가 아동의 기본적 발달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Straus(1995)의 아동방임 개념을 사용, 방임유형을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지도/감독 방임, 인지적 방임, 가정환경방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물리적 방임이 12.2%, 인지적 방임이 58.9%, 정서적 방임이 44.1%, 지도감독방임이 30%, 가정환경방임이 12.9%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방임유형은 인지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 그리고 지도감독방임이었는데 이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적 행동이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호작용 등의 분야에서 보다 많은 방임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료적 방임을 구분하고, 정서심리적 방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인지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간

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도감독방임으로 분류되었는데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나 위험노출이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더불어 가정환경방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음주상황에 노출되는 것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살펴보았는데 가정환경뿐만 아니라 시설에서도 적용가능한 방임 유형을 정의하고 더불어 안전과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다.

따라서 현재의 아동방임에 대한 유형의 범주를 보다 확대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아동방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아동방임의 개념적 유형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의료적 방임, 안전보호적 방임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V-3>와 같다.

<표 V-3> 방임개념 및 유형

방임의 유형	물리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아동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1) 아동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음식 제공 2) 계절 및 기온에 따라 적절한 옷차림을 제공하지 않음 3)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방치
	교육적 방임 : 아동의 인지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놀아주기, 책 읽어주기, 숙제 도와주기 등을 포함하는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
	1)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2) 숙제/준비물 등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등 부적절한 교육환경 3)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제공하지 않음
	정서적 방임 :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애정표현, 심리적지지, 대화 등을 소홀히 하는 것
	1) 대화 부족 2) 애정 표현 및 정서적지지 부족
	의료적 방임 :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
	1) 아동 위생을 확인하지 않음 2) 의료적 치료 및 의무(예:정기검진, 예방접종 등) 불이행
	안전보호적 방임 :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 아동의 일상생활 파악, 아동안전 확인 등을 소홀히 하는 것
	1) 혼자 집에 방치 2)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부족 3) 위험한 환경(음주, 폭력 등)에 노출

2) 아동복지법의 개정

(1) 방임에 대한 구체적 정의 규정

앞서 지적한 것처럼 아동복지법 제2조4항은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규정에는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방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방임에 대한 정의 규정을 통해 방임이 명백한 아동 학대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지적한 법률적 실효성과 관련하여 방임의 상황과 정도에 따른 단계적 정의 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방임에 대한 국가 개입 및 서비스제공이라는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적 확대를 정의하되, 이를 생계형 방임과 심각한 방임으로 나누어 이에 대한 국가개입과 사법적 개입을 구분하는 것이다. 적극적이고 심각한 방임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부재로 인해 아동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권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어지는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종교적 이유로 의료적 처치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방임에는 사법적 개입을 통한 아동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시를 통해 친권을 통한 아동 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다 광범위한 방임의 정의를 통해서도 방임 특징별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2)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제 치료 및 교육 의무 조항

아동복지법과 관련하여 현행 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 처벌등을 담고 있으며, ‘방임’도 학대의 한 유형임을 언급하고(제2조의4), 금지행위(제29조의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로는 아동학대 뿐 아니라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발방지 등과 관련된 대책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와 더불어 가족기능의 약화가 나타나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는 매우 시급히 요청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 중 방임의 경우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는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방임의 경우 심각하고 치명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범죄적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방임에 있어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방임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초동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학대신고 4,633건 중 재학대 발생율이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대행위자에 보다 적극적인 치료나 상담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윤수(2003)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알콜 및 약물 남용과 신체 및 정신장애가 1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알콜리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는 아동이 가정에 복귀했을 때 재발을 막는데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모를 포함한 학대 행위자는 상담이나 치료에 매우 비협조적이며 이는 심각한 방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혹은 교육 등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격리나 위탁가정 보호 등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매우 임시적인 방법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상담, 교육에 대한 명령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임의 경우 방임의 수준과 유형별로 치료, 상담, 교육 명령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조항에 교육적 방임에 대한 금지 포함

아동복지법 제29조는 금지행위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제40조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2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모두 11개 행위로 이 가운데 방임은 4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표 V-4> 아동복지법에서의 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금지행위)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출처: 아동복지법 제29조

적극적이고 심각한 방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임의 유형 중 교육적 방임을 포함하여 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의무교육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처벌규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다. 최근 대안학교 등 국가가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에 보내는 사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징역형보다는 과태료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적 방임과 관련하여 현행 교육관련 법에서 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기관에 대한 교육은 별도의 규정으로 심사와 평가를 통한 인정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아동복지법에서의 금지행위에 교육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은 아동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규정은 특히 장애아동의 교육권 확보와 그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4) 친권개입 기준과 범위 및 절차규정

아동방임을 예방·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적절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아동복지법, 가족관련법 등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관련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찬진(2004)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데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제와 제반 운영체계가 매우 분절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법원과 아동보호서비스의 유기적 연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현장 개입 및 조사와 피학대아동 보호시의 제도적 미비점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친권과 국가의 아동보호의무간의 갈등, 피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방향 등에 대해 좀 더 책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민법 등의 조항을 살펴보면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심각한 아동학대나 방임의 경우에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친권만을 주장할 경우 효과적인 아동보호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보호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다.

현행 법 제도는 아동보호조치와 친권상실 또는 제한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즉 3일 이상 아동의 격리보호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0조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친권상실 청구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청구하게 되어 있다. 보호조치는 행정절차에 의해 이루지는 반면 친권박탈은 사법처분에 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이원화로 인해 가정위탁의 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동의 격리 보호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호균(2006)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신고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격리가 필요하여도 부모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친권개입에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정수(2006)의 경우도 법원의 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사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다음<표 V-5>와 같은 조치를 언급했다.

<표 V-5> 친권개입에 대한 개선방안

친권개입에 대한 개선방안(오정수, 2006)
1. 아동복지법을 개정, 친권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과정과 아동보호조치, 가해부모에 대한 조치 등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이 주도적으로 아동보호명령 등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법원 시스템이 전문화되어야 하고, 법원 시스템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통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친권상실 청구권, 담당자의 조사권, 경찰출동요청권 등 법률적 권한이 규정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3.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에 관한 아동 본인은 물론 부모 및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4. 친권개입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부모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5. 아동을 부모와 격리 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문위탁가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6. 아동을 부모와 격리후 보호·치료·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7. 친권제한이 가능한 학대의 범위와 수준 등 사례판정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8. 법원·경찰서·학교·동사무소 등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위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아동의 강제 격리 후 가해부모가 아동을 마음대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한 벌금, 구속, 명령 등 법률적 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친권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거나 더불어 현 사법시스템 상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 이명숙 변호사는 “아동의 친권이나 양육환경변화 등과 관련된 결정은 법원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한 뒤, 가정위탁, 친권행사 제한이나 상실 등을 결정하는 기간이 30일 이내로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정위탁의 기간제한이 있어야 하고, 가정위탁기간이 종료된 뒤 원가정복귀나 영구입양, 시설보호 등으로의 조

치도 판사가 하도록 하고, 가정위탁 기간동안 부모와의 면접교섭권문제나 양육비 지급문제, 아동의 치료 및 상담 문제, 부모의 치료 및 상담문제, 친권양육권의 소재 및 책임, 친권상실을 할 경우 후견인 지정과 아동의 가정위탁이나 그룹홈 등으로의 조치가 동시에 결정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권개입의 문제는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 하에 설정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족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개입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만, 현행 제도가 친권과 양육권을 중심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개입을 못하고 있는 제한은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법절차를 통해 아동보호와 친권과의 충돌이 조정될 수 있는 법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강화방안 마련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외국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는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없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교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최근 법개정을 통해 학대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의심아동'까지 신고의무대상을 확대했다. 방임의 경우 조기 발견을 통해 심각한 방임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을 막기 위한 각종 포지티브한 인센티브를 개발, 시행함으로써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증가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아동보호체계의 개선

(1) 사전적 예방 차원

가. 아동방임에 대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기능 강화 : 희망스타트사업 확대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과 달리 방임의 경우 절대적으로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이는 방임이 빈곤에 기인한 생계형 방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이럴 경우 사법적 접근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을 통해 해당 가족과 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방임이 빈곤과 특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빈곤아동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아동방임에 대한 주요 정책적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빈곤 아동의 복지, 건강, 교육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희망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07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희망스타트지원센터 16개소를 설치하여 빈곤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보건소, 방문보건팀, 민간사회복지사 등 공공과 민간이 연계하여 합동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욕구를 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임을 예방하고 정도가 약한 아동방임에 개입하는 효과는 지닐 것으로 보인다.

희망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 등과 유사한 형태로 빈곤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해 아동과 가구 단위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함으로써 빈곤아동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며, 아동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체계의 도입을 시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은 프

로그로 아동서비스에서의 국가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 향후 해당 프로그램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내실화

정부의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역아동센터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도 아동복지법을 개정,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5년말 현재 약 1,709개소가 있으며 2006년 현재 개소당 월 2,000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에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의 빈민지역운동에 뿌리를 두고 시작되었던 공부방들이 발전된 것으로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국고지원이 시작되어 현재는 정부지원에 따라 시설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미지원상태에서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07년에 운영비 지원을 약 1,800여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의 방임을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기능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V-6>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목적	주요기능	프로그램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내 보호개념의 실현	●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의 예방	● 보호프로그램: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보호, 생활지도, 위생지도, 급식제공 등
교육적 기능수행	● 아동의 학습능력제고, 학교부적응 해소, 일상생활지도,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 복지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등
정서적 지원	●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 및 다양한 문화경험의 장을 제공	● 문화프로그램: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등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발굴 및 지원강화, 지역사회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 지역자원연계프로그램: 지역내 인적, 물적 자원 연계프로그램 등

출처: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14호,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은 약 100만정도 일 것으로 추정하는 자료들이 있으며, 보사연의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은 2002년에 2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강명순, 2006). 부스러기사랑나눔회는 빈곤해체 가정의 학대 및 방임에 대한 2004년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경미한 정도 이상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이 37.9%였고, 조금이라도 방임 상태에 놓인 아동은 6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경우 학대보다는 방임에 더 많이 노

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조사자료들에 따르면 부모의 빈곤이 아동방임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약 43,000여명이라고 보았을 때에는 전체 빈곤아동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숫자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기능의 양적, 질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형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희망스타트 프로그램과 연계함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방임을 예방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할 수 있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에게서도 방임에 대한 인식이 방치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센터당 최소 25명 이상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서 생활복지사 1인당 담당 아동수가 과다한 상태이며 또한 이용아동이 연령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역부족이기도 하다. 특히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프로그램 수준 등은 지역아동센터의 양적인 확충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내에서 방임아동을 보호하고 지역내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질적 기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체계 등의 구축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방임은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개입이 필요하며 더불어 연령별로 다르게 사정되어 연령에 따른 차등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영아나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종일제 형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나 학교를 다니는 아동 특히 1-3학년의 저학년 아동의 경우 방과후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열쇠아동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포함하여 방과

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및 방과후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는 여성가족부의 방과후보육을 통해 저학년 아동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와 같이 부처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수 있으나 각기 제한된 자원과 그로인한 사각지대의 발생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문성 미흡 등이 지적되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과 일원화된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처별 조정을 통한 일원화 작업이 입법활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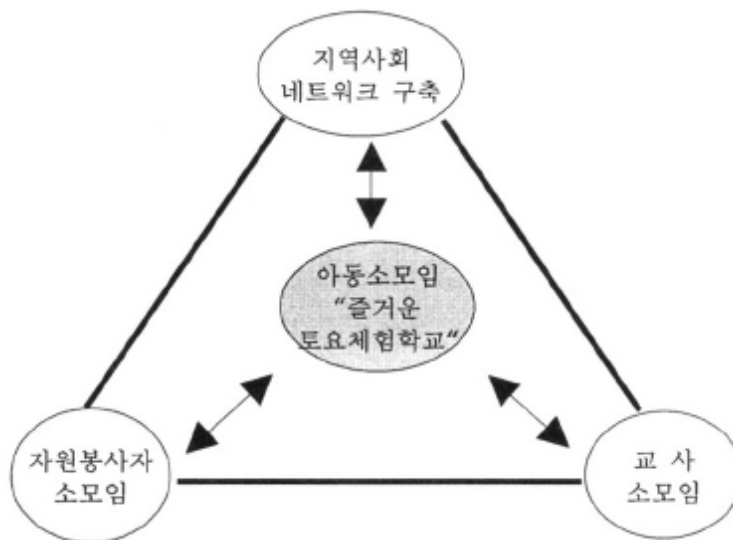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의 책임은 가족, 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히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조직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에 대한 지원은 주요한 사업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등 복지의 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이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의 복지계획에 지역사회조직이 참여하고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아동지원의 주요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연계활동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묶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방임을 해결하는 적극적 옹호자—중재자-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구로건강복지센터의 아동지원사업(곽은

정, 200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에 대해 지역주민과 보건의료인이 연대하여 아동건강검진, 정신건강지원사업, 빈곤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이다.

또한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한 방임아동 예방 및 보호프로그램의 사례로 ‘즐거운 토요일체험학교’도 있는데 이는 아동소모임조직, 자원봉사자조직, 교사소모임조직의 참여를 통해 아동방임을 보호하는 체계이다. <그림 V-3 참조>

<그림 V-3> ‘즐거운 토요일체험학교’의 운영체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교사나 자원봉사 조직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주민교사를 양성하고 교육,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 아동방임을 지역사회의 문제로 이슈함으로써 지역조직을 통한 아동방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아동복지가 최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가정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지적되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야간과 휴일에 발생

하는 방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 및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국가의 정책적, 제도적 틀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 가족중심의 사례관리체계의 강화

아동복지의 1차적인 초점은 아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 가족의 아동부양능력과 환경이 조성될 때 아동은 가족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방임의 문제도 가족환경과 부모의 문제와 분리되어 접근될 수 없다. 만약 분리되어 지역사회기관에서 방과후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만이 제공된다면 낮시간의 아동방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과 아동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 행동문제 등에 대해 아동중심의 프로그램적인 접근은 현장에서 많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 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의 경우,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는 가족상담과 부모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정과 아동의 사정과 사정에 따른 개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프로그램제공을 통한 서비스에서 한발 나아가 위기가족이나 위험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사후개입적 차원

가. 방임된 아동의 일시보호체계의 구축:위탁가정, 그룹홈의 보호체계

일단 방임아동으로 신고되어 가정내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시보호의 형태로 운영되는 거점센터의 그룹홈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면서 아동의 원가족복귀여부와 시점을 결정해 나간다. 그러나 소규모센터의 경우에는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점센터의 그룹홈으로 아동을 분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지역의 일시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로 분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 방임아동의 집단적응 문제나 시설에서의 전문보호인력의 부족은 보호의 또 다른 적응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방임아동의 가정분리가 결정된 이후 가정복귀 이전까지 아동을 일시보호할 위탁가정과 그룹홈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친가정복귀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부모나 아동의 준비나 치료과정 동안 보호할 일시보호체계의 안정적 구축이 필수적이다.

나.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룹홈과의 협조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방임아동의 가정분리 결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보호의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방임아동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위탁가정을 선정, 보호하는 과정에서 협조체계가 연동되어야 하고 이후 부모교육이나 아동적응에 관한 모니터링도 가정위탁지원센터 혹은 그룹홈과 협조하에 진행함으로써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의 대응체계 마련

현재 지역별로 거점센터에 설치된 아동보호치료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방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접근성이나 규모면에서 미흡하다. 아동의 경우 가정에 가까운 곳에서 통근하면서 상담 및 치료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분리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지속하면서 치료받도록 하며 이를 위해 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인력을 보강하거나 지역사회 아동전문상담센터를 지원,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4) 기타

(1) 한부모·조손가구 등 가족지원정책 강화

현 아동보호체계에서 심각한 혹은 적극적 방임의 경우는 위기가정의 아동에게서 보다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빈곤 및 가정해체에 기인한 각종 유형의 방임은 영양실조 및 성장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며 사회적 위축과 우울, 분노를 수반하기도 한다. 가족구조와 가족빈곤이 아동의 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부모와 생활하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임의 위험에 처해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지속적인 빈곤이 아동방임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봉주 외, 2006). 한부모가구의 아동이나 조손가정 혹은 폭력가족의 아동 등에게서 발견되는 이러한 방임은 아동복지 서비스를 비롯, 위기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과 지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방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한부모가구나 조손가구 등에서의 아동방임 발생이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로부터 가족복지정책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부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안)을 통해 각종 정책 및 서비스가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등에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정기적인 아동방임 실태조사 실시 및 방임판정기준 마련

본 연구는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검토하고 우리사회에서 방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실태가 신고접수에 의존하여 발생율을 추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임의 문제 역시 전국적 조사를 통한 방임발생율을 추정하기에는 시간적, 재

정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이 일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방임 유형별로는 심각하고 적극적인 방임보다는 정서적, 인지적, 혹은 안전보호 관련된 방임이 매우 높은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혹은 신체적 방임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방임의 경우도 12.2%나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 이와같은 방임실태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족, 관련시설,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학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실태파악을 통해 이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과 아동권 증진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학대의 판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 별도의 방임 판정기준을 개발하여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적 기능 및 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아동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아동들은 학교의 교사들이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아동권리나 아동방임에 대해 인식수준이 높지 않았다. 방임에 대한 인식수준이나 방임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에 대한 태도,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 등이 아동관련 종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일 때 아동학대 및 방임을 적극적으로 발견되기 어려울 것이며 예방 또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 아동을 돌보는 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은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식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보수교육에서 반드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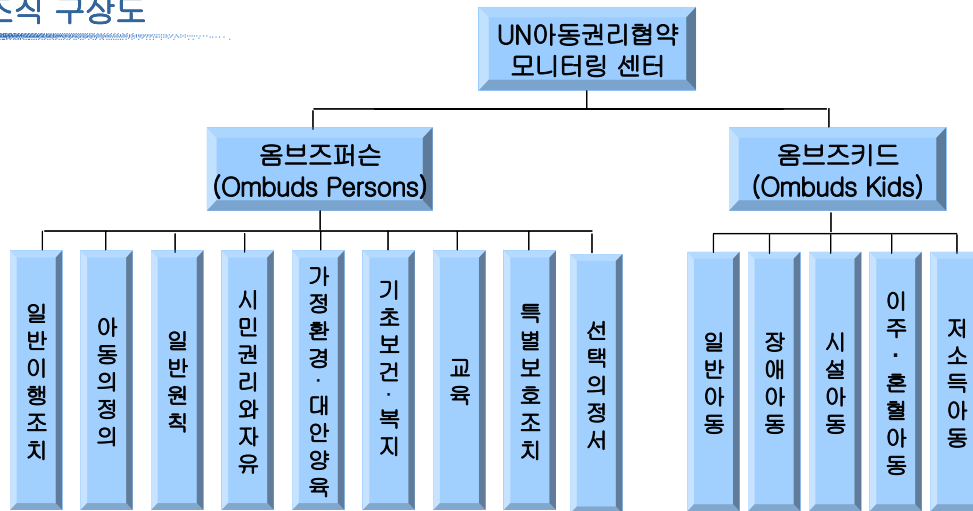
(4) 아동인권담당관 설치 및 권리 담당을 위한 기구 활성화

우리나라는 1991년에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1994년과 1999년에 아동 인권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한 바 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아동권리 증진 이행사항을 담은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를 심사하여 권고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차보고서에서 아동정책의 조정 및 모니터링 활동이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하고 협약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독립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둘 것을 권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및 관계부처 의견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아동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사항을 점검할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설치했는데 이 기구는 옴부즈퍼슨과 옴부즈키드를 위촉하여 아동권리분야의 모니터링, 홍보, 권리침해사례 조사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아동커미셔너(commissioner)나 아동옴부즈맨의 도입을 통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1981년에, 독일은 1987년에, 일본은 2001년에 설치하는 등 약 60여개 국가가 아동권리기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로 하여금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고 있으나 조직의 규모나 권한 등에 있어서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동의 인권과 차별금지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과 권한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며, 아동인권침해 및 차별시정과 구제, 권리 모니터링과 정책 권고 등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동인권담당관 등의 설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

조직 구상도



기능 및 역할

옴브즈퍼슨(OmbudsPersons)

- 아동권리침해 감시 및 조사? 구제 등 아동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를 의미
- UN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 및 선택의정서의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옴브즈퍼슨」 위촉? 운영 및 아동의 참여에 의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수행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안
- UN 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별 정보 및 사건의 수집, 아동관련 사건의 관찰, 생활시설 등 특정 장소의 방문 및 면담 등

옴브즈키드(Ombudskids)

-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아동의 입장에서 제안

구성

옴브즈퍼슨(OmbudsPersons)

- 9개 분야(UN 아동권리협약 8개 클러스터 + 선택의정서)별로 평균 2명의 전문가 위촉
- 교육계, 아동관련 전문가, 판사, 검경청, 정신과 전문의 등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동권리에 관심이 높은 전문가

옴브즈키드(Ombudskids)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관계자'의 추천과 보호자의 추천에 근거하여 선출
- 12~17세 아동으로 구성(10명)하며, 아동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아동(2), 시설아동(2), 이주·흔혈아동(2), 일반아동(2), 저소득아동(2) 등 구성비율을 조정
-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아동의 모니터링 참여 유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UN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사업연구계획서".

VI. 결론

아동학대의 가장 빈번한 유형은 방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동방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규정마저 미미한 상태이며 동시에 방임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역시 심각한 고위험군의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유형들 가운데 ‘방임’에 주목하여 빈곤아동에게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별 특성을 밝히고 아동방임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개입방식과 국내외 법, 제도,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아동권의 확보를 위해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안과 더불어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적 이슈를 둘러싼 정의 및 사정에 대한 기존논의들과 외국의 주요제도 및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방임에 대한 다차원방임행동척도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24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아동 그리고 부모에 대해 실시하였고, 면접조사는 지역아동센터 및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교사, 아동, 그리고 보호자에 대해 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보호체계 및 서비스 전달의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연구자, 정부관계자, 시설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유형별 아동방임의 실태는 물리적 방임이 12.2%, 인지적 방임이 58.9%, 정서적 방임이 44.1%, 지도감독방임이 30.0%, 가정환

경방임이 12.9%로 나타났으며, 총 433명의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연구대상 아동의 경제수준은 보통가정이 23.1%, 저소득가정이 48.7%, 기초생활수급권 가정이 24%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방임과 관련된 요인으로 첫째, 성별 및 가족관계에 따른 아동방임 차이에서 한부모 가정의 남아가 아동방임위험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에 따른 아동방임의 차이에서는 저소득가정이 보통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보다 더 아동방임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방임 예측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가족변인(연령, 성별, 형제수, 가족관계, 경제수준)과 학교환경변인(학년, 학교적응수준, 학교생활만족도, 교사관계, 학업성적, 센터 이용시간)을 독립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아동이 아동방임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호자, 교사, 아동에 대한 심층면접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보호자의 경우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방임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공부방에 대한 재원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동방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 그러나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공동책임에 대한 강한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저녁시간동안 아동들이 집안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간보호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사교육을 대치하는 학습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경우, 아동방임의 개념을 단순방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방임 예방대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지역사회 아동방임 관련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부족하며 일관성 없는 국가행정과 불합리성으로 센터의 운영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아동방임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와 아동방임 가정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아동방임 관련 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의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아동방임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도 필요하고

아동방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아동관련 기관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는 아동정책 시행과 부모교육 및 교사 보수교육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아동방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을 위한 야간보호시설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며 아동방임 예방을 위해 부모상담이나 가정개입을 통해 부모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아동방임 예방주체는 일차적으로 보호자이지만 지역사회와 국가의 공동책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경우, 대부분 저녁은 굶거나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에서 해결하고 있었으며 학교준비물 등은 스스로 챙기고, 보호자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아주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하고 안전사고에 혼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방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섯 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아동방임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준수와 아동권 확보를 위한 방임개념을 정의하고 아동방임에 대한 유형의 범주를 확대, 세분화하며 물리적, 교육적, 정서적, 의료적, 보호책임적 방임으로 구분하여 확대 정의한다.

둘째, 관련법을 개정한다. 즉 방임을 포함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정의규정에 포함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치료 및 교육조항을 신설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조항에 교육적 방임에 대한 금지를 포함한다. 또한 격리필요시 친권개입의 기준, 범위, 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는 사전적 예방차원과 사후개입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전적 예방차원으로는 빈곤아동 보호체계를 재정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평가체계 구축 및 내실화를 기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일원화한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방임의 문제를 가족, 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분담하도록 하며, 각 기관들은 위기가족이나 위험가족에 대한 가족중심의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사후개입적 차원으로는 위탁가정, 그룹홈의 보호체계를 통해 방임아동의 일시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그룹홈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임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아동방임을 예방하고, 정기적인 아동방임 실태조사 및 방임 판정기준 마련을 통해 실태파악에 근거한 방임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적 효과와 신고의무 강화를 위해 아동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활성화를 제안했다.

참 고 문 헌

- 강경자:박현숙(2003). 아동학대와 학대에 따른 아동의 역량지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논문집, 42(1), p.14-33.
- 강민성(2003).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연구-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명순(2006). 지역아동센터 비전과 발전방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자료
- 강순옥(2003). 아동학대의 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강창구(2003). 아동학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1992). 아동학대 개념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곽덕영, 양승희(1999). 아동학대와 방임:실태, 법적 근거 및 대책방안. 경원전문대 논문집
- 곽은정(2003).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2005). 아동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방안.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희(2004). 아동학대의 발달적 영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고찰 :2001년. 2002년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중심으로. 신흥대학 논문집, 27, p.245-270.
- 김교정:김용준(2004).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 아동학대예방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6(1), p.155-182.
- 김순애(2000). 방임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효과연구: 시설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2006). 아동방임사례평가. 빈곤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 굿네이버사업연구집

- 김영미(2003).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특성 및 가정환경과 아동방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0). 아동방임에 대한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관악구 어린이집 어머니를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모(2003). 한국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1. 아동권리연구, 7(3), p.475-502.
- 김혜영, 장화정(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6(2) p.269-286.
- 고미영(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복지학, 56, p.71-102.
- 남진열(2005). 아동학대문제의 최근 실태와 해결과제. 사회개발연구, 20, p.113-135.
- 류혜정(2003). 유아방임의 실태와 교사의 인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덕준(200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2003).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고찰한 현행 아동학대서비스에 대한 검토.1. 아동권리연구, 7(3), p.503-526.
- 박미경(2005). 아동방임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주(2005).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경,서문희,서영숙,진미경,노성향,강주의(2005).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영주(2004). 아동학대인식에 기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희 · 신혜섭(2001).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방임 개입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146-177
- 박태수(200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학생생활연구, 25,

p.1-26.

배중우(2000). 의료방임의 현황. 아동권리연구, 4(1), 27-38.

배화옥(2004).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8(4), p. 611-628.

보건복지부(2002). 아동학대예방업무매뉴얼. 서울: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4). 선진국의 아동보호체계.

변재관(2002). 200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양로,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신선희(2004).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방임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동현(2001). 아동방임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 아동권리연구, 4(1), 7-26.

안동현 :강지윤(2003). 아동 학대 및 방임. 신경정신의학, 42(1), p.14-33.

양영임 · 우남희(2005).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외국의 아동정책 연구. 아동 권리연구, 9(4), 661-690.

오정수(2006). 피학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친권제한. 아동성학대와 대응방 안으로서의 법체계와 전문기관의 역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오정수,이혜원,정익중(2005). 선진복지국가 아동정책 비교와 21세기 한국아 동정책의 발전방안.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복지학회

이국성(2003). 아동복지법의 법률적 검토: 아동학대에 대한규정을 중심으로. 인천법 제6, p.199-211.

이봉주(2006). 아동방임의 쟁점과 대책. 빈곤아동보호와 아동학대예방. 굿 네이비스 사업연구집

이봉주 · 김세원(2005). 아동학대와 방임의 상관구조 요인: 빈곤과의 상관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9(3), 347-373.

이봉주의(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이재연:윤선화(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탐색. 아동권리연구, 8(2), p.235-250.

- 이재연: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p.63-78.
- 이정희(2000). 방임·유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방안 모색. 아동권리연구, 4(1). 39-61.
- 이찬진(2004). 한국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 이호균(2006). 아동보호정책방안. 아동백서, 중장기 아동정책 및 국가행동 계획연구 공청회자료집.
- 이호균(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 이호균·이봉주(2004). 한국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 기획포럼 한국의 아동보호 회고와 전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임경아(2003).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종린(2004).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영기(2003).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 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오승환(2003). 빈곤지역 거주 아동의 학대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아동권리연구, 7(3). p.451-473.
- 윤선화(2006). 아동방임실태와 권리보호방안. 아동소외의 현장: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2006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아동권리학회
- 장희승(2002).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미국,일본,대만과의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화정(2005).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4).
- 정윤수(2003).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
- 전선영(2004). 가정 내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 연구논문집, 31, p.577-591.

- 전영실(2003). 가족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 被害者學研究, 11(2), p.53-77.
-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천세영 · 남미정(2000). 한국에서의 교육적 방임에 관한 소고. 아동권리연구, 4(1). 63-78.
- 최운택(2003). 아동학대에 관한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하은경(2003).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인영(2000).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방안 모색-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동광, 한국복지재단, 5-51.
- 홍덕표(2003).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홍전희(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성(2001).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영희(2004).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아동방임.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1993). 아동학대의 실태 및 대책.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25.
- Coope, C. M. & Theobald, S.(2006). Children at risk of neglect: Challenges faced by child protection practitioners in Guatemala City. *Child Abuse & Neglect*, 30(5), 523-536.
- DfES(2006). Statistics of Education: Referrals, Assessments and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Child Protection Registers: Year Ending 31 March 2005.
- Depanfilis, D. & Dubowitz, H.(2005). [Family Connections: A Program for Preventing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10(2). 108-123.
- Doe, S. S. (2000). Cultural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 violence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3/4), 231-236.
- Douman, D., Margolin, G., & John, R. S. (199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ggression across three generations.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157-175.
- Dong, M., Anda, R. F., Dube, S. R., Giles, W. H., & Felitti, V. J. (2003). The relationship of exposure to childhood sexual abuse to other forms of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7, 625-639.
- Dong, M., Anda, R. T., Felitti, V. J.,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J., Loo, C. M., & Giles, W. H. (2001). The interrelatedness of multiple forms of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8, 771-784.
- Dube, S. R., Anda, R. F., Felitti, V. J., Croft, J. B., Edwards, V. J., & Giles, W. H. (2001). Growing up with parental alcohol abuse: Exposure to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 Neglect*, 25, 1627-1640.
- Dube, S. R., Felitti, V. J., Dong, M., Champman, D. F., Giles, W. H., & Anda, R. F. (2003).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and the risk of illicit drug use: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Pediatrics*, 110, 564-572.
-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T., Felitti, V. J., & Anda, R. F. (2004).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retrospective report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mong adult HMO members attending a primary care clinic. *Child Abuse & Neglect*, 28, 729-737.
- Dubowitz, H., Newton, R. R., Litrownik, A. J., Lewis, T., Briggs, E. C., Thompson, R., English, D., Lee, Li-ching & Feerick, M. M. (2005). Examination of a Conceptual Model of Child Neglect. *Child*

- Maltreatment, 10(2), 173-189.
- Dubowitz, H., Pitts, S. C., & Black, M. M.(2004). Measurement of Three Major Subtypes of Child *Neglect*. *Child Maltreatment*, 9(4), 344-356.
- Dubowitz, H., Pitts, S.C., Litrownik, A. J., Cox, C. E., Runyan, D. & Black, M. M.(2005).Defining child neglect based on child protective services data. *Child Abuse & Neglect*, 29(5), 493-511.
- Edwards, A., Shipman, K. & Brown, A.(2005). The Socialization of Emotional Understanding: A Comparison of Neglectful and Nonneglectful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ild Maltreatment*, 10(3), 293-304.
- English, D. J., Thompson, R., Graham, J. C. & Briggs, E. C.(2005). *Toward a Definition of Neglect* in Young Children. *Child Maltreatment*, 10(2), 190-206.
- Graham-Bermann, S. A., & Hughes, H. M. (1998).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on children: The intersection of research, theory, and clinical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buse*, 1(2), 1-21.
- Harrington, D., Zuravin, S., Depanfilis, D., Ting, L. & Dubowitz, H. (2002). The *Neglect*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in a Low-income Sample. *Child Maltreatment*, 7(4), 359-368.
- Hildyard, K. L. & Wolfe, D. A.(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6-7), 679-695.
- Hong, I. J. (1993). *Male batterers: An ecosystemic analysis of conjugal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Hong, J. S.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mong Korean adults*.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 Jones, L. M., Finkelhor, D. & [Halter, S.](#)(2006). Child Maltreatment Trends in the 1990s: Why Does *Neglect* Differ From Sexual and Physical Abuse?. *Child Maltreatment*, 11(2), 107-120.
- Irwin, H. J. (1999). Violent and nonviolent revictimization of women abuse in childhoo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10), 1095-1110.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Kantor, G. K., Holt, M. K., Mebert, C. J.,; Straus, M. A., Drach, K. M., Ricci, L. R., Macallum, C. A., & [Brown, W.](#)(2004).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ultidimensional Neglectful Behavior Scale-Child Report](#). *Child Maltreatment*, 9(4), 409-428.
- Knutson, J. F., Degarmo, D., Koepl, G. & [Reid, J. B.](#)(2005). Care *Neglect*, Supervisory *Neglect*, and Harsh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ggress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hild Maltreatment*, 10(2). 92-107.
- Lounds, J. J., Borkowski, J. G. & [Whitman, T. L.](#)(2004).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other-Child *Neglect* Scale. *Child Maltreatment*, 9(4), 371-381.
- MacMillan, H. L., Fleming, J. E., Streiner, D. L., Lin, E., Boyle, M. H., Jamieson, E., Duku, E. K., Walsh, C. A., & Wong, M. Y. (2001). Child sexual abuse and lifetime psychopathology in a community sampl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 1878-1883.
- Messman, T. L., & Long, P. J. (1996). Child sexual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revictimization in adult women: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397-420.
- Merrill, L. L., Thomsen, C. J., Gold, S. R., & Milner, J. S. (2001).

- Childhood abuse and premilitary sexual assault in male Navy recrui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252-261.
- Park, M. S. (2001). "The factors of child physical abuse in Korean immigrant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25(7), 945-958.
- Romito, P., Crisma, M., Saurel-Cubizolles, M. (2003). Adult outcomes in women who experienced parental violence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 Neglect*. 27, 1127-1144.
- Sappington, A. A., Pharr, R., Tunstall, A., & Rickert, E. (1997). Relationships among child abuse, date abuse, and psychological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3, 1-11.
- Scher, Forde, McQuaid, & Stein(2004), Prevalence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childhood maltreatment in an adult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8, p. 167-180.
- Shin, H. (1995). *Violence and intimacy: Risk markers and predictors of wife abuse among Korean immigra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lack, K. S., Holl, J. L, Altenbernd, L., Mcdaniel, M., & Stevens, A. B.(2003). Improving the Measurement of Child *Neglect* for Survey Research: Issues and Recommendations. *Child Maltreatment*, 8(2), 98-111.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 283-316.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 249-270.
- Thakkar, R., Gutierrez, P., Kuczen, C., & McCanne, T. (2000). History of physical and/or sexual abuse and current suicidality in college women. *Child Abuse & Neglect*, 24, 1345-1354.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2005). *Child Maltreatment 2004*.
- Wark, M. J., Kruczek, T. & Boley, A(2003). Emotional neglect and family structure: impact on student functioning. *Child Abuse & Neglect*, 27(9), 1033-1043.
- Whitfield, C. L., Anda, R. F., Dube, S., & Felitti, V. J. (2003). Violent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dults: Assessment in a Large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166-185.
- Wyatt, G. E., Axelrod, J., Chin, D., Vargas Carmona, J., & BurnsLoeb, T. (2000). Examining patterns of vulnerability to domestic violence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6, 495-514.

<부 록>

<부록1> 설문대상 지역아동센터

센터명	주소	아동수	저학년	고학년
파랑새나눔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	9	17
서진지역아동센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0	3	7
새롬지역아동센터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15	4	11
좋은나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0	3	7
성내지역아동센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5	11	14
시습공부방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3	7	16
신광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27	22	5
안산광림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30	19	11
모현반석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23	8	15
늘푸른교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2	16	16
새하늘공부방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	15	5	10
삼산해오름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7	4	13
국사소로 지역아동센터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18	6	12
낮은울타리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27	11	16
청양공부방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35	18	17
발산지역아동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45	25	20
중부지역아동센터	전라북도 김제시 신평동	30	20	10
임동공부방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3	3	10
신전지역아동센터	전라남도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36	24	12
예따라기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33	20	13
환여동 지역아동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동	25	15	10
우리들 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1	4	7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동부동	30	20	10
내외지역아동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30	16	14
합 계		556	277	279

<부록2> 설문지

설문지 번호			

이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양육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사업의 하나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각 문항에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본 연구와 조사에만 활용될 것이며,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법에 의해 보호될 것입니다.

본조사와 관련되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8월

연구책임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이숙진 02-3156-1156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주 054-770-2184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V표 또는 밑줄 안에 직접 답하여 주십시오.

1.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학년을 적어주세요. _____학년

3.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4. 함께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는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 이상

5.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 ② 한부모(어머니 또는 아버지)

③ 조부모(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④ 형제 (형 또는 누나 또는 동생)

⑤ 친척 (삼촌 또는 이모 또는 고모 등)

⑥ 기타 _____

※ 다음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등 가족 또는 친척)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일치하는 칸에 V표 해주세요.

1. 여러분과 같이 있는 시간에 어른들의 반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슬퍼할 때 기분이 좋아지도록 나를 위로해 주었다.					
2	나에게 “사랑한다/예쁘다/착하다/잘한다/말잘듣는다”고 말해 주었다.					
3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 주었다.					
4	나의 행동을 칭찬해 주었다. (예: 일찍 일어났을 때, 방 정리를 했을 때 등)					
5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 였다.					
6	내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누었다.					
7	나의 여가활동(예: 운동, 게임 등)이나 취미(예: 종이접기, 그림그리기 등)에 관 심을 보여 주었다.					

2. 여러분이 어른과 떨어져 있을 때 어른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밖에 있을 때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2	방과 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					
3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밖에서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4	안전한 장소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장소 (예: 주차장, 처음 가는 장소 등)에 나를 남겨 두었다					
5	집을 비웠을 때 나를 돌볼 사람이 있는지 확인 하였다.					
6	나를 집에 혼자 남겨 두었다.					

3.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 그림을 집에 걸어놓았다.					
2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다.					
3	내가 학교에서 만든 작품 또는 과제물(예: 그림, 만들기 작품)을 집에 걸어 놓았다.					
4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관심을 가졌다.					
5	아침에 학교에 갔는지 확인 하였다.					
6	내가 집 밖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7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나쁜 행동을 하는지 안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8	내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4. 여러분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일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2	내가 좋아하는 장소(예: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었다.					
4	나와 함께 책을 읽었다.					
5	학교 숙제를 도와주었다.					
6	내가 어떤 문제(예: 숙제 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할 때,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7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했을 때, 바빠서 대답해 주지 못하였다.					
8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설명해 주었다.					

5. 어른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어른들이 밖에 나가야 할 상황에서, 집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2	가족 중 누군가(예: 형, 누나, 동생, 삼촌 등) 나를 때리거나 다치게 하려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말리거나 보호해 주었다.					
3	나는 집에서 어른들이 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싸우는 장면 을 보았다.					
4	술에 너무 취해서 나를 보살피지 못했다.					
5	내가 맥주나 다른 술을 마시는 것을 그냥 두었다.					

6.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음식에 대한 어른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집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2	날씨가 추웠을 때 우리 집은 충분히 따뜻하였다.					
3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나 이불 등이 있었다.					
4	나는 집에서 충분한 음식이나 간식을 먹을 수 있었다.					
5	야채, 과일과 우유 등 골고루 음식을 먹도록 이야기 하였다.					
6	캔디, 과자, 음료수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두었다.					
7	내가 좋아하는 음식(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8	나는 집에서 어른들이 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며 싸우는 <u>소리</u> 를 들었다.					

7. 여러분의 청결과 건강상태에 관한 어른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지 확인 하였다.					
2	매일 양치질을 했는지 확인하였다.					
3	내가 따뜻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였다.					
4	내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에 함께 갔었다.					
5	신체검사나 예방접종을 위해 나를 의사에게 데리고 갔었다.					
6	검진(예: 충치)을 위해 나를 치과에 데리고 갔었다.					

※ 다음 문항은 학교생활과 친구와 관련되어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잘 읽고 일치하는 칸에 V표 해주세요.

8. 여러분의 학교생활과 수업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2	나는 학교 가기가 싫다.					
3	나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4	나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지나간다.					
5	나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집중한다.					
6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필요한 준비물을 반드시 준비해간다.					
7	나는 학교 숙제를 반드시 해 간다.					
8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 모르게 학원숙제나 소설책 읽기 등 수업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수업시간에 졸거나 잔 적이 있다.					

9. 여러분의 학교선생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학교선생님(들)은 나를 차별 대우한다.					
2	나는 우리 학교선생님(들)을 존경한다.					
3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4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10. 여러분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번호	문항	있다	없다
1	나의 기분을 이해해주는 친구		
2	나에게 조언을 주는 친구		
3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있어 주는 친구		
4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친구		
5	내가 하는 행동을 좋아해주는 친구		
6	내가 실수할 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7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친구		
8	가스나 분드, 환각제 등을 경험해본 친구		
9	남의 물건을 훔쳐본 친구		
10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폭행해 본 친구		
11	학교를 무단결석해본 친구		
12	학교를 중퇴한 친구		
13	가출해본 적이 있는 친구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혹시 빠진 응답이 있는지 살펴주세요, ♣

☞ 다음 장부터는 선생님이 대답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설문지를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 다음은 아동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1.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아이는 ()

1-1. 형제 자매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편이다.

1-2.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편이다.

1-3. 부모와의 관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편이다.

1-4. 혼자서 놀거나 공부하는 정도가

① 나쁜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좋은편이다.

2. 아동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아주 못함 ② 보통 이하 ③ 보통 ④ 보통 이상

3. 현재 아동이 학교에서 특수 학급에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아동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보통 ② 저소득 가정 ③ 기초생활 수급권 가정

④ 기타 : _____

5.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루 _____ 시간

6.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

7. 아동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적응합니까?

- ① 아주 못함 ② 보통 이하 ③ 보통 ④ 보통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빠진 응답이 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3> 심층면접 조사지

파일명:_____

면접자	2006년 월 일	기록자			
면접일시	2006년 월 일	면접소요시간	분		
면접시작	시 분	면접종료	시 분		
면접장소			면접태도		
클라이언트 특성					
이름		성별	남 / 여	연령	세
아 동					
가족형태			주양육자		
형제수			센터기간		
양 육 자					
결혼형태			자녀수		
최종학력			직업		
경제수준					
교 사					
직위			담당역할		
근무년수	년 개월				

기타:_____

■교사

* 아동방임

- ① 아동방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은?
 - 아동방임에 대한 범위는?
 - 센터 및 지역사회 아동방임 실태 및 현황은?
- ② 정부 및 지역사회 아동방임 예방 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③ 방임아동을 위한 국가정책 중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④ 아동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방임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 중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비스 기관

- ① 방임된 아동들을 발견 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사회 복지관과 어떻게 연계활동을 하십니까?(현재 없지만 혹시 앞으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연계하실 것입니까?)
- ② 아동방임 예방을 위해 다른 서비스 기관과 연계된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③ 방임된 아동을 위해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 어느 정도/얼마나 연결/연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예: 방임아동 리스트 공유, 지원 프로그램 정보 교환 등)
- ④ 다른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활동의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사회

- ① 센터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방임된 아동을 위한 예방 또는 서비스 대책은 무엇입니까?
- ② 빈곤아동이나 방임아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③ 방임아동을 위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 ④ 아동방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⑤ 아동방임 예방의 주체는 국가-지역사회-보호자 중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

* 일상생활

- 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 주세요(기상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 까지-매끼 식사는 다 챙겨서 먹는지, 누가 챙겨주는지, 밥을 집에서 먹을 수 없는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먹는지(지역아동센터? 식당? 혼자? 등등 자세히 질문, 준비물 등을 보호자가 챙겨주는지, 옷이나 머리 용돈 등)
- ② 하루 일과 중에서 어른들(성인 보호자-부모, 조부모, 이모/고모/삼촌 등)이 없는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 ③ 하루 일과 중 혼자 또는 형/동생 등 아이들만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 어떤 느낌이 드나요?(예: 무섭다. 심심하다. 등)
- ④ 하루 종일 혼자 또는 형/동생 등 아이들만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날이 있다면(예: 노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무엇을 하면서 지내나요?
- ⑤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과 하루에 얼마나 이야기를 하나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 ⑥ 집에서 어른들과 가장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아동안전

- ① 하루 일과 중 어른들이 없을 때 혹은 어른들이 집에 하루 종일 없는 날 다치거나 다칠 뻔한 경우가 있습니까?
- ② 어른들이 없을 때 사고가 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 ③ 어른들이 없는 시간에 다치거나 다칠 뻔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 ④ 학교나 학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오갈 때 느낌은 어떠합니까? 혹시 저녁이나 늦은 시간에 집에 혼자 다니는 경우 어떤 느낌이 듭니까?
- ⑤ 하교길이나 집에 들어갈 때 돈이나 물건 등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아동의 욕구

- ① 함께 살고 있는 어른에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고 싶은 것/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 ②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③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④ 우리 집에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서비스

- ①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② 학교나 센터에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 ③ 앞으로 센터에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④ 센터에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⑤ 센터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른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없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보호자

* 아동방임

- ① 아동방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아동방임에 대한 개념은?
 - 아동방임에 대한 범위는?
 - 센터 및 지역사회 아동방임 실태 및 현황은?
- ② 정부 및 지역사회 아동방임 예방 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③ 방임아동을 위한 국가정책 중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④ 아동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방임아동을 위한 국가 지원 중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⑤ 아동방임 예방의 주체는 국가-지역사회-보호자 중 어디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양육

- ①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 ② 아이의 하루 일과를 알고 있습니까?
- ③ 보호자가 집에 없는 시간동안 아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 ④ 노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⑤ 저녁시간까지 직장에 있어야 하는 경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⑥ 저녁시간이나 집에 없는 시간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⑦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외부 환경에서 아동을 최대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개인적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지역사회 서비스**

- ① 지역아동센터등 방과 후 아동지도를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② 현재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
그램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③ 혼자 또는 아이들만 있는 경우 종종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의 서비스 주체는 어디여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